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61-01

<http://rri.ekr.or.kr>

효율적 농어촌마을 경관관리 지원체계와 적용기법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Support Method
for Rural Village Landscape Management

2009. 12.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연구보고서를 "효율적 농어촌마을 경관관리 지원체계와 적용기법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미 영

이 석 주

김 강 섭

윤 상 헌

전 택 기

공동 연구기관 : 공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 성 균

연 구 원 : 김 광 남

김 찬 수

권 용 칠

이 형 순

요 약 문

1. 연구과제명 : 효율적 농어촌마을 경관관리 지원체계와 적용기법 연구

2. 연구기간 : 2009. 4. ~ 2009. 12.

3.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경관보전직불제를 중심으로 농촌의 경관관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어촌마을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연구내용과 방법

4.1 연구내용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된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삼은 최초의 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의 경관보전직불제가 단순히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본연의 목적 달성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어촌마을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및 관련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영국, 일본 등의 농촌경관 보전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관보전직불제가 향후 농촌마을 경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농촌 경관형성 효과나 농촌 지역사회 기여도 등과 같은 사업성과 및 실태를 검토한다.

둘째,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금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을 놓고 여러가지 쟁점들이 대두되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작목 적용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작목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작목에 대한 지원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경관작물 생산비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농촌경관의 특성상 주민이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그 자체가 지속적 경관관리 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마을 중심의 장기적 발전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관보전직불 제도 관련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경관 및 경관보전직불제의 실태 및 성과분석

- 농어촌 경관의 일반현황
- 경관보전직불제의 일반현황
- 주민단위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 공무원 인터뷰를 통한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경관작물 생산비 분석 및 해외의 사례분석

- 주요 경관작물 생산비 분석
- 해외 농촌경관 관련 정책 및 지원방법
- 해외 사례 시사점

■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어촌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 개선사항 및 시사점
- 제도 운용 방안

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에 의한 설문조사와 현장조

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사전에 작목별 중요도 및 지역별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결정하였고, 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 면적과 작물에 비례하여 다단계 비례층화추출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작목별로 도별 재배면적과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전국 자료의 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별로 표본을 배정하였고, 조사작목 재배면적에 비례한 확률비례추출에 의거하여 조사 시군을 선정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 시군에서는 단순임의추출에 따라 조사지역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의 41개 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 지역 선정

시도	단지 수	농가 수	재배면적(m ²)	조사대상
대구	1	45	160,000	-
대전	4	51	349,844	-
울산	3	44	255,202	-
경기	5	155	289,606	-
강원	9	81	900,427	1
충북	11	155	558,480	-
충남	15	290	1,414,389	2
전북	110	1,776	20,519,403	14
전남	156	3,039	25,210,523	16
경북	34	447	2,852,408	3
경남	62	845	3,524,719	5
제주	1	213	1,374,500	-
합계	411	7,141	5,740,9501	41

41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모두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업 참여 농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지구별로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추진위원장 등 지구별 1~2명을 대상¹⁾으로 주민 및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5부의

1) 6개 지구에 대한 2차례의 예비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연령대가 고령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사업 참여여부를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업(녹비조정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 등)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2009년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도 22개 시군에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결과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41개이다.

또한, 2009년 경관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6개도 21개 시군의 경관보전직불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 유효 표본은 33²⁾개로 조사 표본은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비 조사는 6개도 41개 지역의 52농가에 대해, 마을조사는 24개 지역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사례지역과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의 특성: 지역별 종합

구분	주민(%)	공무원(%)	생산비조사	마을조사
전남	20(48.78)	13(38.24)	16(39.0%)	14(58.3%)
경남	4(9.76)	4(11.76)	5(12.2%)	3(12.5%)
강원	1(2.44)	2(5.88)	1(2.4%)	3(12.5%)
경북	6(14.63)	6(17.65)	3(7.3%)	2(8.3%)
전북	8(19.51)	6(17.65)	14(34.1%)	2(8.3%)
충남	2(4.88)	3(8.82)	2(4.9%)	-
계	41(100.0)	33(100.0)	41(100.0%)	24(100.0%)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일부 조사표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전문가 회의 및 2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사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은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과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역 파급효과,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사항,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은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역 파급효과, 추진사항, 만족도 및 기타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의견 등 개방형 질문

2)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의 경우는 인사이동 등을 통해 업무를 담당하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경관보전직불제 담당 공무원의 유효 표본은 33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위주로 구성하였다.

마을조사표는 마을개요, 사업운영현황, 사업성과, 애로 및 건의, AgriX, 마을경관협약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고, 생산비조사표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단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개요, 조수입, 생산비 등에 관한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5. 연구결과

5.1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의 개선사항

1)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검토

농촌경관직불제는 농업경관(경작지경관, 농업생산시설경관), 자연경관(자연도입경관, 자연생태경관), 생활경관(건축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및 농어촌경관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작물대체 경관작물에 대해서 소득보전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관작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청보리를 비롯한 밀, 호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초화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관작물의 범위와 분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농촌경관증진을 위한 활동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검토

2009년부터는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해 ha당 30만원씩 지급되는데 현지 확인결과 이 비용지급의 대상이 되는 활동과 사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해석이 분분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마을경관보전활동비의 대상 활동 및 사용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3) 경관작물의 재분류와 지원금 형평성 유지

경관보전직불제는 WTO농업협정상 허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경관보전을 실현해야 하므로 경관작물로서의 사료작물의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수경관 작물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단가의 차등화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분류방식인 동계, 하계의 구분보다는 꽃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다른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작물을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단가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있다.

4)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이 예산배정과 사업시행지침 하달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시도, 시군, 읍면 공무원들이 지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상이하여 지역별로 적용기준 등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새로운 경관작물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공무원이나 참여농가가 작물재배 및 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매년 경관작물 재배 신청 전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난해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침해설 및 신규 경관작물 재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식정보의 습득과 정보교류를 통해 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거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정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

우리나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감액기준으로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감액, 생육 및 개화불량 면적이 30%를 초과할 경우 10%감액, 필지규모가 0.5ha 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10%감액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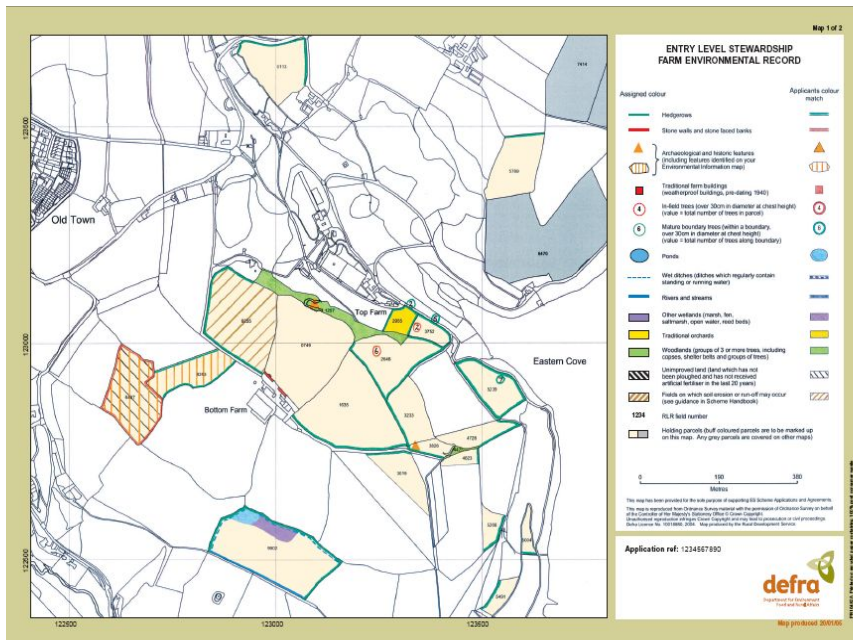
그러나 현지 실사 결과 필지별 배수로 문제는 농업기술상의 문제로 별도 감액 규정 없이도 전체 경관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토지 상황에 적합하게 농가가 설치할 것이고 굳이 필지별 배수로는 필요 없는 경우는

토지상 규모에 맞추어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맡겨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정, 부당수급의 경우 2 ~ 5년간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상호 서명 으로 협약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6) 농촌경관 자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계한 사업지구 선정

경관사업 대상지구 선정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관법 시행령(2008)에서와 비슷하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항목으로 1)자연적 여건, 2)인문·사회적 여건, 3)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지구 필지도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국의 ELS신청서처럼 대상 토지에 대한 경관요소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도면에 표시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LS 신청서의 농장환경기록 도면

7) 경관법·경관조례 등을 통한 협치(Governance)형 농촌경관보전 추진

경관보전직불제는 일본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농촌경관보전과 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협치형, 상향식 농촌경관보전활동 정립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본의 '경관·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처럼 마을경관조사, 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주민조직 참여, 지역NGO 등과 연계한 농촌경관보전활동 추진 등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촌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참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8)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강화를 위해, 영국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은 3년 동안 지속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지원마감 시기는 동계의 경우는 8월 31일에 하계의 경우는 1월 31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모니터링 및 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영국의 ES에서 사업 신청서에 대상지 경관상세도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처럼, 해당 지구의 경관보전활동 계획을 다양한 색과 코드화를 통해 신청대상지 주변의 지적도에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5.2. 연구결과의 적용방안

1) 단가 적용 방안-4개의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참여농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의 생산비 조사결과의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지급단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1안 :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보전 지원 단가(생산비 기준)

- 개념 : WTO규정에 부합되는 경관작물재배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단가
- 산출기준 : 추가적 비용은 자가노동 기회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생산비개념으로 접근하여 산출, 생산비는 수확, 포장, 운반, 판매비용 등을 제외한 주산물 비 판매시의 생산비로 산출(농지임차료는 생산비에서 제외)
- 지급단가: 경관작물 유형1 ⇒ 170만원/ha, 경관작물 유형2 ⇒ 100만원/ha

나. 2안 :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지원 단가(경영비 기준)

- 개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중 마을경관보전활동비용에서 마을 주민의 직접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기준하여 자가 노력비를 제외한 경영비 개념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
- 산출기준 : 경관작물별 생산비 중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경영비를 보전, 농지임차료는 제외
- 지급단가 : 경관작물 유형1 ⇒ 150만원/ha, 경관작물 유형2 ⇒ 95만원/ha

다. 3안 : 농지임차료를 포함한 지원 단가

- 개념 : 대부분의 경관작물재배 농가는 자기 소유농지를 이용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재재농가 소유농지의 기회비용도 보전하여 주는 개념으로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준 : 생산비에 농지임차료를 포함하여 산정
- 지급단가 : 경관작물 유형1 ⇒ 250만원/ha, 경관작물 유형2 ⇒ 200만원/ha

라. 4안 : 소득 발생작물에 대한 지원 단가

- 개념 : 현행 경관작물 중에는 농가판매 작물과 비판매작물이 혼재되어 재배되고 있으므로 소득을 기준하여 판매에 의한 소득 발생 작물과 비판매에 의한 비소득작물로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준 : (경영비+자가노력비) - 소득= 지원단가
- 대상 소득 작물 : 청보리, 유채, 메밀, 밀, 보리, 호밀
- 지급단가 : 소득작물 ⇒ 80만원/ha
- * (180,401원+43,059원)- 144,020원= 79,440원/10a,

2) 정책상 적용방안

이 연구에서 수행한 농가, 담당공무원 인터뷰 및 마을 조사, 경관작물 생산비 조사 및 국외 사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농촌경관직불제에 발전적으로 적용키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 지침상의 적용방안

구분	지침서 내용	평가실태	발전방안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목적은 경관작물재배와 마을 경관보전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농가가 농촌경관을 위한 목적보다는 소득증대 및 사료작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을 “농촌경관의 정비와 증진, 자연자원 보호,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이해와 접근성 증진, 홍수관리”로 전환. - 위와 같이 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가 단순히 작물재배가 아닌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있음을 인식. - WTO규범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정.
개념 및 지원 조건	경관보전직불제 개념 및 지원조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적용, 또한 마을경관활동에 대한 개념의 다양한 적용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관보전직불제 개념 및 지원 조건에 관한 다양한 해석 존재 - 인사이드 등으로 인한 업무과약 미흡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침 미흡 <p>예1) 경관보전직불제 개념 인지가 미흡 예2) 지역별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지원 혼란 예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한 해석 다양. 예4) 집단화의 조건을 개인별 0.5ha 이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여 적용함. 예5) 일부 지구에서는 꽃길 조성, 종자 및 묘목구입 또는 마을활동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 시기: 매년 동계경관작물 재배 신청전 · 대상: 시도, 시군담당자 · 방법: 집합교육 · 교육내용: 사업시행지침 해설, 신규 경관작물 소개, 의견수렴 · 교육효과 : 개념 및 지원조건의 명확화 , 통일된 사업시행 가능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핸드북 및 메뉴얼 보급

지급 단가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30만 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단가의 형평성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작물(청보리, 연등)과 비소득작물(자운영, 코스모스)의 형평성 · 주산물 판매농가와 주산물 비판매농가의 형평성 · 마을면적 단위의 경관보전활동비 지급의 형평성 문제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농업협상 환경계획에 따른 Green Box에 해당 되도록) 사료작물 제외 고려 - 경관효과에 따른 작물별 차등 지급 - 3년마다 보조금 지원금액 평가 및 재조정
사업 신청서 작성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확인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많은 서류 예)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마다 신청자들과 추진위원장의 도장 날인. 1인인당 서명이 3회 중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의 간소화 - 간소화를 위한 서식 제시.
대상 지역 (마을) 선정 요건	시장·군수는 대상마을의 선정의 객관성·공정성·도농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추진하게 되어 있음. 평가항목은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 계획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평가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선정시 평가기준 미확보 - 지자체별 농촌경관계획 수립 및 평가항목에 대한 미확보로 가이드라인 제시 미흡. 예1) 대상지 선정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지구)이 아닌 사람위주로 되어 있어 경관작물 식재가 산재되어 경관효과가 미흡하며, 마을주민의 참여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선정요건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자체별 전문가에서 지자체 경관 담당자로 변경.
마을 경관 보전 추진 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 경관보전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5명 이내 -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대상 마을주민 3명 이내 -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 전문가 2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 구성의 어려움 및 활동미비 예1) 대부분 지구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신청대상자로만 구성되어 있음. 예2) 농촌에 농어촌경관 또는 도농교류 전문가를 찾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 구성 · 전문가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p>대상 농지의 적격 여부 및 신청 자격 확인</p>	<p>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사업신청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 및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p>	<p>-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미흡 - AgriX상의 자료입력 미흡. 예1) 대상농지의 집단화 조건이 일부 부적격 예2) 협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의 서류가 일부 미확보 예3) 대상농지가 사람위주로 선정되어 한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곳에 산재</p>	<p>- 무작위 샘플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부적격 대상지의 시도, 시군단위에 페널티 부여 예)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면적 축소.</p>
<p>마을 경관 보전 협약 체결</p>	<p>시장·군수는 사업대상 확정결과를 읍면장, 추진위원장, 농지소유자에게 일괄통보.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은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다만,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우수한 경우, 협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되,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시군 전체 시행면적으로 1/3을 초과할 수 없음.</p>	<p>- 협약체결 공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 1년의 단기 협약기간에 불만 제기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절차 일부 미흡 - 시장·군수의 협약체결 미흡 및 형식적 예1) 매년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로 인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예2) 추진위원장 및 농지소유자가 사업대상지 확정결과를 모름. 예3) 협약서의 시장·군수의 사인이 없거나, 표준형 샘플에 날짜 입력 및 서명만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p>	<p>-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기간 · 1년단위 → 3년 단위 · 단, 모니터링 평가에 의해 기간 조정 - 협약 체결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항목 설정.</p>
<p>보조금 지급 요건</p>	<p>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p>	<p>- 천재지변 등의 보조금 지급요건 불명확 예)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배관리가 불성실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선거기간중에는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p>	<p>- 천재지변 등의 보조금 지급요건 마련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 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로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재배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p>
<p>지자체 지원 및 이중 지원</p>	<p>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의 경우 중복지원 금지, 그러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p>	<p>- 지자체 지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예1) 어느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지원을 하는가 하면, 어느 지자체는 추가 지원하는 것이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으로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p>	<p>-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 작물 위주에서 마을 경관관리 활동으로 경관보전직불제의 방향전환.</p>

		예2) 일부 지자체는 WTO 농업협정에 위배로 봄.	
이행 여부 점검	<p>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책임 하에 실시.</p> <p>점검시기: 마을별 2회(과중, 개화,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황과악)</p> <p>점검방법: 협약내용에 따라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p>	<p>- 이행여부 점검 미흡 및 과악의 어려움.</p> <p>예1) 지적도상의 위치 파악이 어려움.</p> <p>예2) 일부 지자체는 재배 현황 전수조사가 미흡.</p> <p>- AgriX상에 입력내용 부재.</p>	<p>- 모니터링 실시 및 성과측정 강화</p> <p>· 대상: 전년도 시행지역 (10%로 무작위 샘플조사)</p>
성과 측정	<p>평가지표: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p>	<p>- 사업성과 측정 미흡</p> <p>예)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이 사업지침서상의 평가지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있음.</p>	<p>- 사업성과 평가지표 개발</p> <p>· 평가지표: 경관보전직불제 목적달성도 평가를 위한 지표</p> <p>· 개발시기: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이전</p> <p>· 개발방법: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의의	5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농촌경관의 개념 및 구성요소	7
제2절 농촌경관의 가치 및 중요성	24
제3절 농촌경관 보전 관련 동향	29
제4절 경관보전직불제의 개요 및 추진현황	34
1. 개요	34
2. 추진현황	38
제3장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성과 및 실태분석	43
제1절 조사개요	43
제2절 성과 및 실태분석	50
1. 주민 설문조사 결과	50
2. 시군(읍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60
3. 마을단위 조사 결과	66
4. 생산비 조사결과	68
제4장 국외 사례	78
제1절 접근방법 및 국외 정책의 개관	78
제2절 영국의 농촌경관정책	79
1. 동향과 개관	79
2. 영국의 현행 경관관련 정책체계와 주요 정책	86

제3절 일본의 농촌경관 보전 정책	103
1.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	103
2.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	115
3.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 중 농촌경관 자연환경보전재생 pilot사업	116
5장 결론	119
1절 연구결과 요약	119
1. 농촌경관직불제 실태 조사 결과	119
2. 외국사례조사 결과	120
제2절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개선사항	122
1.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검토	122
2. 농촌경관 증진을 위한 활동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검토	122
3. 경관작물의 재분류와 지원금 형평성 유지	125
4.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125
5.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정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126
6. 농촌경관 자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계한 사업지구 선정	127
7. 경관법·경관조례 등을 통한 협치(Governance)형 농촌경관보전 추진	127
8.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128
제3절 연구결과의 적용방안	129
1. 단가 적용 방안-4개의 시나리오	129
2. 정책상 적용방안	130
제4절 연구의 한계	135

< 표 차 례 >

(표 2-1) 경관유형별 특성 비교	9
(표 2-2) 농촌경관의 구성요소	10
(표 2-3) 농촌공간별 경관요소	11
(표 2-4) 경관형성 요소의 분류	12
(표 2-5) 농촌경관 요소의 구분 및 특성	14
(표 2-6) 경관자원 유형 분류	15
(표 2-7) 농업생산 공간의 경관구성 요소	17
(표 2-8) 농촌경관의 특성	18
(표 2-9) 경관자원의 요소	21
(표 2-10) 농촌경관 선호도 및 중요도가 높은 경관요소	22
(표 2-11) 7개 사례지역의 방문객 설문조사	23
(표 2-12) 보전 가치가 높은 농촌 경관자원 평가(전문가 조사 결과)	24
(표 2-13) 농촌경관자원의 특징	25
(표 2-14)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	27
(표 2-15) 농촌경관의 가치	28
(표 2-16) 국내 경관보전 관련 동향 개요	30
(표 2-17)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37
(표 2-18) 연도별 추진현황	40
(표 2-19) 경관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40
(표 2-20) 시도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참여현황	41
(표 2-21) 작물별 재배현황	42
(표 3-1) 표본 지역 선정	43
(표 3-2) 표본의 특성: 지역별 종합	44
(표 3-3) 주민설문 조사내용	46
(표 3-4) 담당 공무원 조사내용	47
(표 3-5) 생산비 조사내용	48
(표 3-6) 마을 조사 내용	49

(표 3-7) 주민 응답자 특성	51
(표 3-8) 동계/하계 기간 중 경관보전직불제 참여횟수	52
(표 3-9) 2008년도에 재배한 경관작물	52
(표 3-10) 2008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기간	53
(표 3-11)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이전 작물형태(다중응답)	53
(표 3-12)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여부	54
(표 3-13)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방식	54
(표 3-14)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마을공동 활동 참여여부	55
(표 3-15)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마을공동활동 참여 부분(다중응답)	55
(표 3-16) 마을경관보전협약서 존재 인지도	56
(표 3-17) 마을경관보전협약서 내용 인지도	56
(표 3-18) 경관보전직불제 참여하면서 느끼는 업무부담 정도	56
(표 3-19) 재배된 경관작물의 활용방안(다중응답)	57
(표 3-20)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시·군 지원여부	57
(표 3-21)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 만족여부	58
(표 3-22)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 부족 이유(다중응답)	58
(표 3-23) 향후 경관마을보전활동비 활용 구상	59
(표 3-24)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의향 여부	59
(표 3-25) 경관직불제 사업의 효과	59
(표 3-26) 경관직불제 사업의 효과	61
(표 3-27)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계획대비 추진여부	62
(표 3-28) 경관보전직불제관련 지자체의 지원여부	62
(표 3-29) 경관보전직불제관련 지자체 주민교육 실시여부	62
(표 3-30)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지자체 주민교육 실시횟수	63
(표 3-31)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금액 만족도	63
(표 3-32)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 불만족이유	63
(표 3-33)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지자체 지원필요여부	64
(표 3-34) 경관작물 재배 현황 비교	66
(표 3-3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사업(다중응답)	67

(표 3-36)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사업(복수응답)	68
(표 3-37) 조사지역 선정 기준	69
(표 3-38) 생산비 조사 내용	70
(표 3-39) 용어의 정의	71
(표 3-40) 생산비 산출 기준	72
(표 3-41) 경관작물 유형1 생산비	73
(표 3-42) 경관작물 2 생산비	74
(표 4-1) ESA의 목표와 성과지표(West Penwith ESA)	83
(표 4-2) 전원보전사업(CSS; Country side Stewardship) 지원 기준	85
(표 4-3) ELS/OELS 관리대상 및 세부항목	93
(표 4-4) ELS의 관리지침_생울타리	94
(표 4-5) ELS의 관리지침_돌담	95
(표 4-6) ELS의 관리지침_완충연못	96
(표 4-7) ELS의 관리지침_수로관리(Ditch management)	97
(표 4-8) ELS의 관리지침_생울타리와 수로 관리	97
(표 4-9) ELS의 관리지침_프리미엄 생울타리 관리 (울타리 양쪽)	98
(표 4-10) ELS의 관리지침_돌담 보호와 유지관리	99
(표 4-11) HLS 관리대상 및 세부항목	100
(표 4-12) HLS 협약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기관	101
(표 4-13) 기초단가가 교부되는 조치: 필수요건(모든 협정에서 필수)	107
(표 4-14) 체제정비단가가 교부되는 조치 :선택요건(체제정비단가요건)	108
(표 4-15) 가산조치와 관련된 조치 : 선택요건(가산조치)	109
(표 4-16) 교부단가1 (10a당)	110
(표 4-17) 교부단가2 (10a당)	111
(표 4-18) 실시 행정구역마을수	113
(표 5-1) 경관보전활동 유형별 범위(예시)	124
(표 5-2) 사업시행 지침상의 적용방안	131

< 그림 차례 >

<그림 4-1> 영국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81
<그림 4-2> 영국의 농촌경관 관련 정책체계	86
<그림 4-3> 기초수준관리시책(ELS) 신청 및 협약절차	90
<그림 4-4> ELS 신청에 따른 농장환경기록 도면 예시	91
<그림 4-5> LCA의 경관특성구역도 예시(Dacorum Borough)	102
<그림 4-6> 중산간직불제 대상농용지 기준도	106

< 부 록 >

<부록 1>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 조사	140
<부록 2> 주민 설문조사	144
<부록 3> 사업 지구(마을) 현황조사	150
<부록 4> 경관작물 소득조사	154
<부록 5>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2009)	161
<부록 6> 영국의 ES 신청서 및 협약서 실제 사본	181
<부록 7> 일본 중산간직불제 실제 협약 사례	1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여파로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 등이 파괴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경관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농촌은 비농업적 개발수요의 증가로 농촌다움(Rurality), 농촌 어메니티(Amenity), 주변 환경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관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작포기, 방치 및 유희화 되는 농경지, 공가 및 폐가 건축물 등의 증가로 농촌경관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 2005; 박동규 등, 2004; 안동만, 2005).

우리나라 경관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대상이 주로 대규모 개발계획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만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경관과 같은 소규모의 특정경관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권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향후 논농사 감소로 인하여 농지의 도시용 토지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 토지가 도시용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도로확장이나 신설, 대단위 주거단지 건설 등 난개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을 포함해 국민 다수가 녹지, 자연경관 등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이 개발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 2005).

농촌경관은 인공적 요소와 함께 자연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며 불가역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훼손된 이후에는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훼손이후의 문제점이나 후손이 사용하는 데 대한 피해의 가능성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농촌경관의 훼손을 예방할 만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 2005; 홍찬선, 2004).

이에 따라 농촌 경관훼손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식량생산 공간이라는 농촌의 전통적 가치 외에 전통문

화 및 생태계 보전, 정서함양 등과 같은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권오상 & 윤태연, 2004;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 2005; 송미령 & 박경철, 2005; 안동만, 2005; 윤진옥 등, 2005; 임형백 & 이성우, 2004; 홍찬선, 2004; 농림수산식품부, 2005).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농촌이 제공하는 경관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 관심과 의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³⁾에 농산어촌 경관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2005년도에는 농촌경관 유지와 농경지 보존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⁴⁾ 사업이 도입되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준비기, 도입기, 시범 사업기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농환경계획과 일본의 중산간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농촌경관 관련 제도에 대한 소개와 국내 적용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연구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성주인, 2005; 성주인 & 박주영, 2007; 송미령 & 박경철, 2005; 정철모, 2005; 홍찬선 등, 2005). 특히 엄대호 등(2004)은 경관보전직불제 정책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지급대상, 지급수준, 시행방법 등을 연구 검토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채혜성 등(2006)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장효선, 김윤순 & 엄대호(2007)는 2006년도에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한 3개 마을사례를 통해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관보전직불제 시범 사업기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는 여러 편 있으나 2008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된 이후의 문제점 파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충분

3)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에서는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에 관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는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과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전국단위로 사업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작물위주의 경관개념에서 농촌마을 경관영역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현안 검토를 통해 문제점 및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경관보전을 위한 마을 주민의 경관개선 활동을 유도하는 지원체계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실시되었던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대상작물 범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 단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현재 경관보전직불제의 단가산정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하계 지원단가액 재조정예 대한 주민의 요구와 함께 경관작목별 지원 단가에 관한 경관관리 지원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용 증가로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한 사료작물의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2008년 5월 ‘제2녹색혁명’ 추진에 따른 청보리 등의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보조금 지급 확대로, 경관보전직불제가 특정 품목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WTO 농업협정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료작물 및 식량작물을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기존 경관작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2녹색혁명 추진(‘08.5.6)에 따른 청보리 등의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경관보전직불제도를 지급 확대하는 것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촌의 경관관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어촌마을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농촌 경관관리 측면에서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성과 및 실태 분석
- 경관작물 생산비 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
-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어촌마을 경관관리 지원체계 마련

2. 연구의 내용

첫째,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농촌 경관형성 효과나 농촌 지역사회 기여도 등과 같은 사업성과 및 실태를 검토한다.

둘째,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금 규모와 지원 조건 등을 놓고 여러가지 쟁점들이 대두되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작목 적용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작목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작목에 대한 지원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경관작물 생산비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농촌경관의 특성상 주민이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그 자체가 지속적 경관관리 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마을 중심의 장기적 발전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관보전직불 제도 관련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경관 및 경관보전직불제의 실태 및 성과분석

- 농어촌 경관의 일반현황
- 경관보전직불제의 일반현황
- 주민단위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 공무원 인터뷰를 통한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경관작물 생산비 분석 및 해외의 사례분석

- 주요 경관작물 생산비 분석
- 해외 농촌경관 관련 정책 및 지원방법
- 해외 사례 시사점

■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어촌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 개선사항 및 시사점
- 제도 운용 방안

제3절 연구의 의의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연구로는 경관보전직불제 정책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지급대상, 지급수준, 시행방법 등을 연구 검토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제시한 엄대호·심완보, 윤진욱, 이충선, 홍찬선, & 유상오(2004)의 연구가 있고,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채혜성 등(2006)의 연구가 있다. 또한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전통담과 전통지붕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조금 제도시행에 대한 주민의식을 파악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전통담과 전통지붕 확대적용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한 채혜성, 민소영, 류선정, & 안동만(2008)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한 3개 마을사례를 통하여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 장효선, 김은순, & 엄대호(2007)의 연구가 있다.

위의 연구 외에도 농림부 주관하에 2005년에 ‘농촌경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농촌경관 관리실태와 정책방안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2007년도에 농림수산물부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해 보급한 유채, 메밀, 자운영의 경관작물 재배관리 매뉴얼이 있다.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위한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의 순회교육을 통한 경관보전직불제 홍보 및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요령적용 및 농어촌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운용방안, 농어촌경관맵 작성매뉴얼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가지고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추진방안 세미나’ 및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등의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농촌경관의 중요성 및 가치를 통한 농촌경관 관리의 필요성을 연구하였고, 농촌경관의 환경과피 실태와 심각성을 알렸으며, 향후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도입방안이나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이후 몇몇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였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단편적인 경관보전직불제의 문제점만을 지적할 뿐 농촌경관 관리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

한 농촌경관 관련 연구가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연결되지 않아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제도로서의 경관보전직불제의 개선 및 보완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른 경관보전직불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만, 일부 사례를 통한 것으로 전체적인 경관보전직불제의 문제점 및 선진모델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 지역이나 조직이 아닌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담당공무원, 마을 현장조사, 경관작물 생산비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성과 및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농촌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로서의 경관보전직불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농촌경관의 개념 및 구성요소

경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경관을 단순히 시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시각적인 측면 외의 심적 사상까지를 포함하여 경관을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다.

시각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경관의 개념을 정의한 홍찬선(2004)은 경관을 ‘일정 지역 고유의 외관이며, 숲, 가옥, 농지, 도로, 하천, 수로 등 개개의 요소별로그 아니고 이것들이 결합되어 일체성이 있는 외관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주신하 & 임승빈(2008)은 경관의 개념을 일차적으로는 보여 지는 풍경을 의미하고, 이차적으로는 보여 지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한편, 시각적인 측면 외의 심적 사상까지를 포함하여 경관을 정의하고 있는 학자로는 경관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일정 장소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으로서, 보이는 대상 자체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문화와 시간성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며, 관찰자로부터 좋게 혹은 나쁘게 지각되는 대상’이라고 정의한 윤진옥 외7(2005)이 있다. 이 외에도 경관을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대상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인간의 심적 사상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보이는 모습 자체가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 판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2005)이 있다. 경관이란 ‘시각적으로 포착되는 일정 공간에서의 형태, 색채, 질감, 분위기 등의 사상을 종합적·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선호 및 가치가 표출되는 집합체’라고 정의한 송미령 & 박경철(2005)이 있고, 경관을 꽃향기, 폭포소리 등과 같이 인체의 오감을 통하여 ‘지각되는 풍경’이라고 정의한 김주석 등(2007)도 있다.

위와 같이 경관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듯이, 농촌경관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농촌경관의 정의를 홍찬선(2004)은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정공간의 풍경’이라고 정의하고, 넓은 의미로는 ‘눈에 보이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경치뿐만 아니라 그 풍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자연생태계의 작용,

분위기, 인간의 생산 및 활동과 관련된 역사·문화적 의미, 심리적 환경 등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주신하 & 임승빈(2008)는 농촌경관을 '농산어촌지역에 펼쳐지는 3차원적 경치이며, 인공적 경관과 자연적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라고 하고, 김주석 등(2007)은 농촌주민의 가치관, 사회제도, 역사와 관습, 농업기술 등의 문화적 요소가 자연과 오랜 세월을 두고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며, 촌락의 입지 및 형태, 건축재료, 농지의 형태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김상범(2005) 또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농업활동의 구체적 모습이 구현되어 있는 경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묶여져 있는 경관을 농촌경관이라 정의한다.

이상과 같이 경관 및 농촌경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경관(landscape)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1)산이나 들, 강, 바다 등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뜻하며, 2)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관의 개념을 '농촌지역의 자연적 요소와 함께 인간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농촌지역의 풍경'이라고 정의한다.

농촌경관에 대한 합당한 결과물은 무엇이고, 실제 이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갈 것인가는 쉽지가 않다. 또한 그 대상물이 무엇이나를 개념 정의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농촌경관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촌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농촌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에 관한 몇몇 연구가 있다.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농촌경관은 경관유형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농촌경관을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등과 같이 형태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와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의 특성(농업, 전통, 공동체 등)을 통하여 농촌경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나타나고, 다음과 같이 경관 유형별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김종철, 2007).

(표 2-1) 경관유형별 특성 비교

구분	농촌경관	도시경관	자연경관
자연·인공적 요소비중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가 조화	인공적 요소가 대부분	자연적 요소가 대부분
경관유형	농업, 생활, 자연경관 등으로 구분가능	생활경관이 대부분	자연경관이 대부분
경관구성요소	농지, 주택, 하천, 산림, 문화재시설 등 다양	건축물 중심으로 구성	산림, 하천 중심으로 구성
형성시기	농경문화(정착생활)의 시작과 함께 형성	1950년 이후 조성(도시와, 산업화 이후)	태고로부터 형성
주요정책 수단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업, 생활, 자연경관 분야에 재정투입 -자연경관은 산림형성, 관리차원에서 투입	도시계획으로 통제 -개발가능 용도구역 설정 및 개발방식 결정 -신도시개발 등을 통한 도시경관 형성	각종 환경규제로 통제 -자연경관심의제 등
존재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 여부	긍정적 가치부여 가능 -농촌경관가치에 대한 관련 연구 다수	긍정적 가치부여가 어려움	긍정적 가치부여 가능 -자연경관가치에 대한 관련연구 다수
유사개념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촌어메니티 등	마천루, 스카이라인 등	자연환경 등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없음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 규정
농촌도시, 자연에 대한 법적 정의	농업·농촌기본법, 삶의질 향상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농촌정의 규정	없음 도시계획정의 (국토계획법)	없음 자연환경정의 (자연환경보전법)

출처 : 김종철, 2007

이 중, 농촌경관의 구성요소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최현상(1998)에 따르면, 농촌경관의 구성요소는 지각형태에 따라 아래의 (표2-2)에서와 같이 택지주변 및 역사적 공간 등의 소경관과 하천, 도로변 등의 중경관, 구릉, 산림 등의 마을전체를 인식하는 대경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시 자연환경 공간, 농업생산 공간, 마을주거지 등으로 구분되며, 자연환경공간은 토지이용에 의한 경관영역으로 마을이나 경작지 지역을 제외한 마을 배후의 구릉 또는 산림지역을 가리킨다. 농업생산 공간은 경작지 지역 및 각종 생산시설에 관련된 지역이고, 마을 주거지는 택지내, 택지주변, 공공시설, 생활환경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기반시설공간, 문화여가경관, 공공시설경관, 생산·유통시설경관 등이 있다.

(표 2-2) 농촌경관의 구성요소

경관유형	지각형태	경관영역	지각대상
대경관	영역	자연환경공간	구릉, 산림
		농업생산공간	논, 밭, 과수원 등의 경작지
		주거지	주택군, 공공시설군, 생활환경시설군
중경관	선	기반시설공간	하천, 수로, 도로, 하안
소경관	요소	문화역사경관	문화재, 정자목 등 역사적 요소
		공공시설경관	마을회관, 공원, 교육시설, 행정시설
		생산,유통시설경관	공장, 창고

출처: 최현상, 1998

김상범(2004, 2005)에 따르면, 농촌 공간별 경관요소는 (표2-3)과 같이 농업생산 공간, 농업생활 공간, 자연환경 공간으로 구분되며, 농업생산공간에는 농지와 농업시설, 농촌생활공간에는 생활시설과 문화역사, 자연환경공간에는 자연요소를 포함한다.

(표 2-3) 농촌공간별 경관요소

구분		구성요소	비고
농업생산공간	농지	논, 밭, 목초지, 과수원, 마을숲, 수목 등	농업생산공간의 경관은 계절과 농작물의 성장에 따라 변화함.
	농업시설	농업시설 및 설비(축사, 정미소, 비닐하우스 등),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저수지 등	
농촌생활공간	생활시설	농가(주택, 창고, 담장 등), 도농교류시설(농촌체험시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상점, 공장, 도로, 안내시설 등	
	문화역사	사적, 유적, 관광시설, 마을행사 및 시설(동제, 축제, 사당, 당산목 등) 등	
자연환경공간	자연요소	산, 하천, 호수, 바다, 생태계(비오톱) 등	

출처: 김상범, 2005.

또한 김주석 등(2007)은 생활공간과 생산공간 그리고 자연공간의 세 가지 공간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이 농촌경관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표 2-4) 경관형성 요소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 공간	주택시설	출입구, 주택, 담장, 부속사, 정원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주차장공동쉼터(농촌공원), 쓰레기수거장, 옥외광고물, 운동장 및 운동시설(농구장, 축구장, 헬스장, 에어로빅 등), 노인정, 오폐수처리시설
	도로·가로시설	간선도로, 마을진입로, 마을내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자전거 도로, 각종 가로시설물(사인시설, 안내판, 버스정류장, 스트리트 퍼니처 등), 옹벽·법면, 생태이동통로
	역사문화시설	역사유적지, 당산목, 보호수
생산 공간	농지	논, 밭, 초지, 논두렁, 밭두렁, 농로
	수리시설	저수지, 제방, 용배수로, 조류서식지
	생산시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비닐하우스, 축사, 원예시설, 관계시설
	상·공시설	상가, 공업시설(농수산물가공 공장 등)
자연 녹지	하천	(소)하천, 호소, 습지, 각종 친수시설(어도, 연구시설, 자연탐방로, 전망데크, 낚시터 등)
	산림	산지, 구릉지, 산책로

출처: 김주석 외 8, 2007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2005)은 농촌경관의 구성요소를 자연·생태적 요소, 인공적 요소, 문화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자연생태적 요소에는 농지, 밭, 초지, 논두렁, 밭두렁과 같은 농지경관, 수로, 소하천, 저수지와 같은 하천경관, 산림, 구릉지, 들판과 같은 산림녹지경관을 포함하고, 인공적 요소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원예시설, 수리시설과 같은 생산시설, 도로, 농로, 교량과 같은 교통시설경관, 주택, 학교, 공장과 같은 취락경관, 스카이라인, 높이, 색채, 형태, 용적률과 같은 건축물 경관을 포함한다. 문화적 요소로는 주민 삶의 모습이 이미지화되어 나타난 것과 민간신앙 및 풍수 등 사상적 요소 등을 포함한다. 주신하 & 임승빈(2008)는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농촌경관의 배경이 되는 산림, 하천 등과 같은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생태적 요소에는 산림, 하천, 저수지 등을 포함시켰고, 인공적 요소에는 취락지 경관과 경작지 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윤진욱 등(2005)은 농촌경관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별 경관을 아래의 표와 같이 마을 외곽부와 취락외·내부 공간, 기타 시설물로 구분하여 농촌경관의 요소를 정의하였다. 마을 외곽부에서 마을내 취락중심지를 향해 조망되는 원경 요소들로는 스카이라인, 경작지, 도로의 선형, 주택 및 시설물이 포함되고, 취락 외부공간의 경관요소로는 도로, 입구 표지판 등이, 취락내부 공간의 경관요소는 마을안길, 주택, 마을회관 등이, 그리고 기타 시설물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농업시설과 하천,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이 포함된다.

(표 2-5) 농촌경관 요소의 구분 및 특성

구분		개념 및 특성	
원경	스카이 라인	주로 산의 능선을 따라 형성되며 도시에 비해 훼손이 덜하나 농촌입지에 따라 고층아파트, 대형광고물 송전탑, 전신주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경작지	농촌경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생산공간으로서 작물에 따라 경관이 달라짐	
	도로	자연적 요소가 강한 농촌경관에서 두드러지는 인공적 요소이며 특히 직선형의 도로는 농촌공간을 분절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함	
	주택 및 시설물	전통적인 주택 및 건축물은 안정적이고 정서적 역할을 하나 이질적 건축물은 주변경관을 오히려 해치게 됨	
취락 외부 공간	진입로	마을로 진입하는 진입공간을 포함하는 도로로서 마을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됨	
	경작로	주로 농작업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본격적인 포장 등이 되지 않아 전형적인 농촌의 들길 이미지로 작용함	
	갈래길	주로 마을 외부에서 각 마을로 갈라지는 길로서 오픈스페이스로 이용되기도 함	
	표지판	마을의 진입을 알리는 안내 역할	
취락 내부 공간	마을 안길	여유공지	여유공지는 건축물 등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의 빈터를 말하며 마을 내부공간 유지의 완충요소 역할을 함
		담장	마을내부의 주택들로 이어지는 담장은 개별주택의 영역성을 나타내며 노후된 담장이 많아 정비사업의 대상임
		포장	마을안길의 도로포장은 시공상의 이유로 콘크리트 포장이 대부분임
	주택	기존주택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 재료, 색채를 보임
		신규주택	신축주택의 경우 주변과의 조화가 필요하나 이질적인 경우가 많음
마을회관	일반형태, 제안		
기타 시설물	농업 시설	비닐 하우스	농업이 필수시설이면서 농촌경관 저해요소로 지적됨
		축사	시각적, 후각적 불량요소,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쉬움
	수리 시설	하천	생태적 중요요소이면서 정서적 농촌경관 형성의 대상임
		용수로	경작지로의 농업용수를 공급, 인공적 처리 지양 요구됨

출처: 윤진옥 외7, 2005 재구성

이동근, 옥주희, 홍찬선, 윤소원, 박창석, & 유현석(2005)은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유형을 (표 2-5)와 같이 분류한다.

(표 2-6) 경관자원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물적 인공 요소	산업공간 (일하는 공간)	농업생산시설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 차양막, 농공단지	
		축사시설	양계장, 양돈장, 양우장	
		농경지	논, 밭, 과수원, 특용작물, 토종 꿀농장, 묘목장 등	
		저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장, 농산물가공시설, 집하장, 지하저장고, 특산물판매장, 출하시설, 곡물제조창고,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	
	생활공간 (주거를 위한 공간)	주택 시설	단층 주택	전통가옥, 양옥, 조립식 주택, 폐가
			복층 주택	전통가옥, 양옥, 조립식 주택, 아파트
			담장	생울타리, 돌담, 토담, 벽돌담, 시멘트 벽돌담, 철재 휨스담, 슬레이트 담, 나무펜스
			지붕	스라브눈썹지붕, 박공지붕, 모입지붕, 초가지붕, 기와지붕
			벽체	벽돌, 황토벽체, 석판벽, 자연석재마감
			정원	정원
	생활공간 (주거를 위한 공간)	교류시설 (휴식공간)	마을회관, 마을공원, 마을마당, 레크레이션 시설, 노인정	
		행정·교육· 금융·의료기관	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학교, 각급 행정기관, 우체국, 산림조합출장소, 축협출장소, 농협지·출장소, 농조출장소	
		편의시설	잡화점, 슈퍼마켓, 잡화점, 식당, 양조장, 주유소, 복덕방, 목욕탕, 정류소, 비디오가게, 사료취급점, 농약상, 학원, 당구장, 탁구장, 목공소, 철물점, 차수리업소, 농기계수리소, 닭집, 문방구, 오락실, 방앗간, 정육점, 주점, 교회, 미용실, 이발소, 다방, PC방, 철물점, 가스취급점	
		협오시설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위생 매립장	
		기반시설	농수로, 용수로, 배수로, 농로	
		역사 문화시설 (전통공간)	고택, 사당, 전통구조물, 장승, 비석, 정자, 사찰, 향교, 솟대, 장자목, 물레방아, 사신당, 성황당, 서원, 암자터, 기념공원, 고인돌, 석탑	
		자연경관 공간 (자연 공간)	천연자연요소	국(도,군)립공원, 휴양림, 마을숲, 바위, 목초지, 산림, 하천, 저수지, 초지, 연못, 방풍림, 산책로, 습지, 묵논, 약수터, 새벽안개, 계곡, 호수, 지역특징경관, 별, 달, 해, 맑은물, 맑은 공기, 반딧불이 공간
서식공간 (소생활권)	천연기념물, 집단서식지, 생태습지, 생태하천, 생태공원, 생태연못, 철새도래지, 보호수, 야생화 군락지			
계절·시간요소	설경, 가을눈, 익은감, 단풍, 특정 화목류의 개화기, 고추 말리는 경관			
비물적 자연· 인공 요소	프로그램	관혼상제, 축제, 설화, 사물놀이, 전래동화, 전통놀이 공간		
	인간행태	인구구성비, 지도자, 휴먼네트워크, 커뮤니티, 친절도		

출처 : 이동근 외5, 2005 재구성

한편 채혜성 & 김혜민(2005)은 전체적인 농촌경관의 구성요소 보다는 농업생산 공간의 경관 구성요소를 구분하였고, (표 2-6)과 같이 농업생산 공간의 구성요소를 패치, 가장자리와 경계, 통로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조망거리에 따른 분석을 통해 근경의 경관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경관생태적 관점에서 농업생산 공간에 나타나는 경관구성요소를 공간적 관계와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표 2-7)과 같이 경관특성을 경계부, 주변부, 경작지, 수변부, 접근체계로 5가지의 분류유형을 도출하고 추가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역사유적과 시각적 혐오요소를 추가하여 총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7) 농업생산 공간의 경관구성 요소

경관구조	특성	경관구성요소	
패치(patch)	큰패치	경작지	시설재배
		경작지	노지재배
		경작지	경관작물
		경작지	논
		경작지	밭
		경작지	과수원/농원
	주변환경	주변환경	주변산림
		주변환경	openspace
		주변환경	자연초지
	작은패치	경작지	경지내 수목군
			경지내 독립수
		주변환경	완충녹지
			정원
		보호수	보호수, 정자목(노거수)
휴게공간		휴게공간	취락시설(소단위 주택지)
	휴게공간	모정, 원두막	
가장자리와 경계 (boundary & edge)	경계부	경계부	울타리망
		경계부	가로수
		경계부	돌담
		경계부	생울타리
		경계부	목재 fence
통로 (corridor)	접근로	접근로	오솔길(산책, 교육탐방)
		접근로	도로(포장/비포장)
		접근로	논두렁
		접근로	밭고랑
	하천	하천	수로
		하천	수문(콘크리트/철재/목재)또는 관수정
		하천	하천(도랑, 개울)
		하천	제방(둑)
		하천	다리
그 외 ⁵⁾		농장출입문, 싸인판 및 전신주, 폐건조물 및 폐자재	

5) 경관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표 2-8) 농촌경관의 특성

경관특성	경관구성요소	추가요소	
경계부	두렁		
	제방		
	도로 비탈면		
	가로수		
	울타리	목재	
		생울타리	
	울타리망	흰색 그물망 검은색 직물망	
	돌담/조적경계		
주변부	자연초지	자생초지	
		다년생초지	
		야생식물 혼합지	
	주변 산림	자연 임야	
	조경지	마을숲	
		조경지	
		정원(취락시설) 체험장)	
	취락시설	주택	단층 건물, 2층 건물
		정원	
		울타리	
경작지	재배형태	노지 재배	
		시설 재배	
		하우스 재배	
	경지 내 수목	단본	
		교목수림	
	경지 내 건조물	원두막, 모정	전통양식, 개량식
		저장고	
관수정			
	오리축사		
수변부	하천	자연형 하천	
		직강 하천	
	수로	자연형 수로(도랑)	
		콘크리트 수로	
		지하 수로	
	수문	목재 수문	
		콘크리트 수문	
		철재 수문	
		관수정	
		스프링쿨러	
		제방	
	습지/늪		
	연못		

	통행을 위한 구조물	문	
		계단	
		다리	
		싸인판	
	통행로	농작업로	두렁(논, 밭)
		산책로	접근차로
		교육·탐방로	
		장애인을 위한 길	
	포장	포장로	
		비포장로	
역사유적	고건조물	고가옥	
		정자	
		사당	
	고분		
	비석		
	보호수/노거수		
시각적 혐오요소	폐자재 적치		
	폐건조물 방치		
	전신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농촌경관을 크게 자연생태적 경관, 인공적 경관, 문화적 경관의 결합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경관의 구성요소를 자연환경 공간, 농업생산 공간, 주거지, 기반시설 공간, 문화역사 경관, 공공시설 경관, 생산·유통시설 경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자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일단의 대상군이 형성되는 종합성과 연속성의 맥락에서 경관자원의 가치가 표출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대상 농촌경관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경관자원 구성요소의 해체 내지는 단순화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마다의 농촌경관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된 농촌경관의 구성요소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검토하여 농촌경관 자원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기 보다는 농촌경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경관 구성요소를 찾아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의 마을활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보다 시급한 농촌경관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동규 등(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경관의 전형적인 범주는 산(畵), 마을, 농경지, 하천 등으로 이를 구성하는 자원은 대체로 자연, 농업, 인공적 경관요소 등 이다. 또한 농촌경관의 골격을 형성하는 결정적 자원영역으로 마을(37%), 농경지(37%), 산(19%), 숲(7%)으로 농경지와 마을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2005)의 농촌경관의 심미적 가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0%이상이 농촌경관이 훼손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부적절한 토지이용을 선택했으며, 세부원인으로는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관련제도의 부재와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촌경관의 문제 시설물로 ①부적절한 토지이용(53%), ②미정비 취락(14%), ③훼손된 자연(14%), ④미시적 경관 방해(13%), ⑤생산시설 경관(3%), ⑥기타(3%)로 들고 있다. 또한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2005)은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주요소로 ①건축물(56%), ②송전탑(18%), ③도로(18%), ④하천(9%)을 지적하고 있다. 즉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2005)은 농촌경관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및 송전탑, 대형도로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동규 등(2004)의 연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농촌경관이 마을(41.6%), 농경지(26%)순으로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동만(2005)은 이러한 우리 농촌경관의 문제점을 첫째, 농촌다운 경관을 배려하지 않는 개발, 둘째, 농촌경관의 전체적 조화를 저해하는 시설물의 색채 및 디자인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농촌다운 경관을 배려하지 않는 개발로 첫째로 농촌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같이 농촌 고유공간을 해치는 개발, 스카이라인을 해치는 능선위의 주택입지, 대규모 인공포장,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입지를 들었고, 둘째로 경관조망을 가로막는 대형 건조물과 시멘트 블록 담장, 인공적이고 도시적인 하천정비, 농촌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 건물, 버려진 폐가를 들었으며, 셋째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마을 정비 때문에 마을의 역사·문화 경관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까지 독특한 특성을 잃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촌에 어울리지 않는 색채, 농촌도로변 대형간판, 과도한 상업용 간판 및 안내판, 전신주와 전선도 농촌경관에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농촌경관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박동규 등(2004)의 연구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촌경관 구성요소를 선행연구 및 외국 정책사례 등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고 논의되는 농촌 경관자원 요소를 추출하였고, 다음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 경관자원 요소를 아래의 (표 2-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9) 경관자원의 요소

유형	유형별 자원의 종류	
형태별 분류	점적 자원	역사적 건축물, 나무 한 그루 등
	선적 자원	도로, 가로수, 농로, 수로 등
	면적 자원	취락, 농지, 숲, 하천 등
부분별 분류	전통역사적 자원	우물, 서낭당, 전통 건축물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 당산나무, 마을숲, 마을하천 등
	생활문화적 자원	돌담, 생울타리, 특색있는 농촌주택, 농수로 등
기능 공간별 분류	자연공간적 자원	여울·연못·소하천·계곡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수(水)경관, 산림·구릉지·들판과 같은 산림녹지 경관 등 → 일정 연장의 생태 네트워크 연결, 향토 수종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 등으로 구체화
	생활공간적 자원	(전통)주택·담장·공동시설·마을숲(대지림, 차폐림, 완충림 등)의 취락경관, 도로·교량과 같은 교통시설 경관 등 → 저층·저밀도, 건축물 층고·형태·색채·재료의 통일성, 자연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등으로 구체화
	생산공간적 자원	논·밭·논두렁·밭두렁 등과 같은 농지 자체가 형성하는 경관, 저수지·농수로·비닐 하우스·원두막 등과 같은 생산시설 경관 등 → 농지와 경사면·하천부지 등 여유공간과의 조화, 투수성 자연토양상태의 농로, 야생 동식물 비오톱 및 생태통로 확보 가능한 농수로 정비, 인공시설 도입시 규모·형태·색채·재료 선택 등으로 구체화

또한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요소를 농촌진흥청 (2008)에서는 경관유형에 따라 다음(표 2-9)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10) 농촌경관 선호도 및 중요도가 높은 경관요소

경관유형		경관요소
농촌자연경관	농촌자연	자연하천, 산림, 마을숲, 야생조류
농업생산경관	농경지	정돈된 경작지, 특색있는 경작지(다락논, 녹차밭, 보리밭, 추수시기 논), 경작지 내 수목
	농업시설	소를 이용한 전통농업, 모내기 작업, 원두막
농촌생활경관	생활시설	우물, 농가, 마을상질물, 장독대, 고풍스런 마을, 정돈된 마을
	역사문화	노거수, 전통한옥, 전통농기구

채혜성 등(2006)의 연구에서는 방문객이 가장 관심이 있는 농촌경관으로는 주변 자연경관(45.5%), 지역특색경관(28.6%), 역사문화경관(13.2%), 농촌마을경관(7.3%), 농업생산경관(4.1%)순으로 들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에 긍정적(61.8%)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통가옥이나 다리(17.9%)와 자연형 하천, 개울(18.5%), 마을숲(12%), 마을진입꽃길(12%), 돌담 및 산울타리(10.8%)이 지원대상으로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4.0%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표 2-11) 7개 사례지역의 방문객 설문조사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관심있는 농촌경관	농업생산경관	9(4.1)	확대 시행시 지원대상	돌담, 산울타리	71(10.8)
	농촌마을경관	16(7.3)		자연하천, 개울	122(18.5)
	주변자연경관	100(45.5)		전통농법	51(7.7)
	역사문화경관	29(13.2)		마을숲	79(12.0)
	지역특색경관	63(28.6)		마을진입꽃길	79(12.0)
	기타	2(0.9)		마을내수로	32(4.8)
	계	220(100)		전통가옥, 다리	118(17.9)
농촌 방문시 주요활동	꽃밭감상, 촬영	74(33.6)		농지구변 초지	25(3.8)
	농촌마을 탐방	9(4.1)		자연형 농수로	26(3.9)
	농업활동 체험	1(0.5)		기타	8(1.2)
	자연, 농촌풍경감상	87(39.5)	결측	49(7.5)	
	농촌주민과 대화	4(1.8)	계	660(100)	
	농촌생활, 전통체험	20(9.1)	경관보전 직불제 필요	매우 필요치않다	5(2.3)
	자연학습, 체험	19(8.6)		필요하지 않다	6(2.7)
기타	6(2.7)	보통		50(22.7)	
계	220(100)	필요하다		119(54.0)	
지원대상 확대의견	매우 좋지 않다	1(0.5)		매우 필요하다	36(16.4)
	좋지 않다	3(1.4)		결측	4(1.8)
	보통	31(14.1)		계	220(100)
	좋다	136(61.8)			
	매우 좋다	49(22.3)			
	계	220(100)			

출처: 체혜성 외7, 2006

끝으로 김광임 외4(2005)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결과를 통해 보전 가치가 높은 농촌 경관자원 평가결과를 다음(표 2-1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12) 보전 가치가 높은 농촌 경관자원 평가(전문가 조사 결과)

구분	경관자원	중요도 점수 (5점 척도)
녹지 자연자원	지형의 선·굴곡 등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산	4.30
	향토 수종, 희귀 식물 등이 자생하고 있는 산	4.07
	생물종다양성이 높은 산	3.96
	전통 식물, 희귀 식물이 군락을 이룬 숲	4.37
	차폐, 완충, 휴양 등 특정기능을 담당하는 숲	4.15
농업생산 관련자원	농지·농지, 농지·도로 사이 경계수, 경계석	3.81
	전통적 특성이 남아있는 농경지	4.0
	독특한 지형을 나타내는 농경지	4.37
	전통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3.89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3.89
	독특한 농로, 수로	3.96
생활환경 관련자원	전통 주택이 집단화된 마을	4.70
	생울타리, 돌담 등이 집단화된 마을	4.44
	전통적 마을쉼터, 우물터, 정자목	4.48
	독특한 마을길	4.37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4.41
수(水) 자연자원	하천 및 하천변의 자연형 식생대	4.26
	연못·저수지 및 주변의 자연형 식생대	4.07

이상에서 농촌경관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및 농촌경관의 문제점, 그리고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전가치가 높은 농촌 경관자원을 살펴보았다. 향후 이러한 학자들이 제시한 농촌경관의 문제점 및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촌 경관자원을 토대로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2절 농촌경관의 가치 및 중요성

농촌경관은 농촌경관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배제불가능성’과 불특정 다수가 농촌경관 편익을 누리며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는 재화이다. 따라서 시장에만 맡겨두었을 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에 의한 보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업생산을 함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비시장재인 좋은 농촌경관도 함께 생산되는 결합성(jointness)을 지닌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지와 산림·하천·마을 등이 조화되는 풍경이 어느 한 단일 구성요소만의 연속적 경관보다 다채롭고 가치 있는 농촌경관을 제공한다. 농촌경관은 그것이 잘 유지·보관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에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박동규 등, 2004).

이러한 농촌경관자원의 특징이자 가치를 홍찬선(2004)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외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임승차성’과 훼손된 농촌경관의 회복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인한 ‘비가역성’을 들었다.

(표 2-13) 농촌경관자원의 특징

구분		세부내용
공공재적 특성	비경합성	불특정 다수가 농촌경관 편익을 누리며,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비배제성	농촌경관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감
	무임승차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누릴 수 있음
지역 고유성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농촌경관은 그 고유성을 지니면 다른 지역에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비 가역성	훼손된 농촌경관의 회복 자체가 불가능함	

농촌의 기능은 자연환경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사회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적 기능으로는 수자원 함양, 아름다운 경관제공, 환경 정화, 생태계, 생 및, 전자원 보존, 토양유실 및,홍수방지가 있고, 사회문화적 기능으로는 전통문화 보존, 국민정서의 순화, 환경교육의 장이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기능으로는 식량공급, 일자리 창출, 국토의 균형발전이 있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는 농촌 기능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농촌경관 가치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로는 어메니티 창조를 위한 농촌경관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한 안동만(2005)의 연구가 있고, 김광임 외4(2005)가 농촌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통해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농촌경제연구원(2004)의 연구가 있고, 한경수 등(2006)은 농업·농촌의 기능과 가치를 재정립하여 중등학교 교과 내용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찬선(2004)은 농촌마을종합계획의 수립시 보존하거나 개선할 자원을 파악하여 마을계획수립에 반영하고, 농촌경관가치 및 특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경관가치 평가기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CVM을 이용하여 논이 지닌 공익기능 및 농촌사회 경관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직접지불금액을 제시하였다.

농업과학기술원(2002)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일부로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농촌지원정책의 타당성과 정책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가상가치법에 의한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평가에 있어서 농촌의 정서함양기능, 전통문화보전기능, 지역사회유지기능, 녹지공간 제공기능 등 네 가지 세부 기능을 “농촌의 공익적 기능”으로 통합 평가하였다. 그 연구결과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이라는 복합재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은 로그-로짓 모형을 사용할 경우 한 가구당 월평균 46,843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 가구 수로 환산한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총 가치는 연간 8조 3,386억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와 같은 농촌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촌거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년 보전해 주는 가칭 농촌거주직불제의 금액을 산출하였고, 농촌거주직불제 금액은 연간 약257만원이다.

안윤수 등(2002)도 농촌이 지니는 공익적 기능으로 정서함양기능, 전통문화보전기능, 지역사회유지기능 및 녹지공간 제공기능을 들었고, 가치추정 결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연간 가구당 56만2,116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 가구수를 감안하면, 연간 8조 3,386억원에 이른다.

권오상 & 윤태연(2004)은 가상순위결정법을 활용해 논을 경작중인 논, 휴경상태이긴 하나 여전히 논으로 유지되는 논지, 그리고 쌀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완전 전용된 논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용도별로 논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휴경지의 경우 713억원, 전용지의 경우 876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농촌경제연구원(2004)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을 연간 일자리 창출의 농촌활력 제고로 6,165억원, 지역균형발전에 16,676억원, 환경 및 생태계보전에 128,892억원, 농촌 어메니티 보전에 90,141억원, 식량안보에 17,084억원으로 총 283,772억원을 제시하였다.

(표 2-14)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

(단위: 억원/년)

구분		평가액
농촌활력 제고(일자리 창출)		8,165
지역균형 발전		16,676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지하수 함양	41,572
	수질정화	21,910
	대기정화	55,890
	토양 유실 경감	9,520
	야생동물 보호	-
농촌 어메니티 보전	농촌경관	40,316
	정서함양	21,514
	전통문화	16,093
	휴양 및 여가	12,218
재해 경감	홍수 예방	22,814
	산사태 예방	-
식량안보		17,084

출처: 농촌경제연구원, 2004.

또한 김광임 외4(2005)의 연구에서는 농촌경관의 가치를 평균값 기준으로 8,412원/월/가구이며, 이를 연간 지불의사로 환산하면 평균값 기준 100,944원/년/가구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가구당 연간 이용가치를 전국 가구수로 합산하면 농촌경관 보전의 가치는 1,452,725백만원/년으로 추정된다.

(표 2-15) 농촌경관의 가치

출처	평가대상	연구방법	추정액
윤여창 (1996)	농업의 기능	대체비용법 CVM	토사유실방지 기능: 1조 9,047억원 수자원함양 기능: 1조 73억원 대기정화 기능: 3,076억원 상징적 가치: 5조 1,358억원
이광석 (1996)	농촌방문	TCM	연평균 최대: 2,377,011원 연평균 평균최소: 849,087원 1회 평균최대: 358,524원 1회 평균최소: 128,066원
오세익 (2001)	쌀농사의 다원적 기능	CVM 투표모형	약 4조 3,358억원/년 식량자급률을 제고: 37,853원/월/가구 --> 약 6조 5,038억원/년 국내 농업보호를 WTO 무역협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낮출 경우: 12,618원/월/가구 --> 2조 1,680억원/년
안현수 외 (2002)	농촌의 공익적 기능	CVM, 이중양분선택형	562,116원/년/가구 8조 3,386억원/년/전국 농촌거주자불제: 257만원
농업과학기술원 (2002)	농촌의 공익적 기능	CVM	46,843원/월/가구 8조 3,386억원/년
권오상·윤태연 (2004)	논 농업의 경관적 가치평가	가상순위결정모형	휴경지: 416원/가구/월--> 713억원/년 전용지: 510원/가구/월--> 876억원/년
김광임 외 (2005)	농촌경관의 가치 ⁶⁾	CVM 이중양분선택형	8,412원/월/가구 100,944원/년/가구 가구당 연간 이용가치를 전국 가구수로 합산하면, 1,452,725백만원/년

출처 : 김광임 외4, 2005 재구성

6) 김광임 등(2005)은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200명의 표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농촌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농촌경관의 가치는 평균값 기준 8,412원/월/가구이며,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면 11,637원/월/가구이다. 이를 연간 지불의사로 환산하면 평균값 기준 100,944원/년/가구~최대값 기준 139,644원/년/가구이다. 가구당 연간 이용가치를 전국 가구수로 합산하면 농촌경관보전의 가치는 1,452,725백만원/년이다. 제시금액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면 농촌경관 보전의 가치는 2,009,673백만원/년이 된다. 세미로그형 함수를 이용하여 농촌경관보전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면 최소 7,349원/월/가구~최대 10,657원/가구이다. 이를 연간 이용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88,188원/년/가구~최대127,884원/년/가구이다. 전국 가구수를 곱하여 전국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평균 1,269,149백만원/년~최대 1,840,430백만원/년이 된다.

이상영 김영, & 김은자(2003)는 CVM을 이용하여 남해 가천마을의 계단식 논이 지닌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한 후에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직접 지불금액을 제시하였다. 경관보전기능의 한계지불의사액은 경관보전기능이 1% 증가하는데 약 522원/월/가구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모의실험 결과 경관보전기능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의 90% 신뢰구간은 약 167원/월/가구~981원/월/가구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계단식 논의 유지관리에 대한 세대당 지불의사액은 연간 21,423원이며, 전체 순편익은 연간 약 2.2억원으로 계측되었다. 이 금액은 가천마을의 계단식 논이 10a당 약 648천원의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듯 오늘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경관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산정방법에 따라 금액이 유동적인 것이 문제이다.

제3절 농촌경관 보전 관련 동향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관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협의 대상이 주로 대규모 개발계획사업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만을 중심으로 하며 농촌경관과 같이 소규모의 특정경관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권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관보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은 지구지정을 통해 그 안에서 허용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그 허용행위의 대부분은 건축행위, 토지이용규제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농촌경관은 도시경관과는 달리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지에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주민과의 관련성이 높은 탓에 기존의 관련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정책들이 농촌경관의 고유한 특성과 현실에 기초하여 경관자원을 보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건축행위와 같은 인공적 환경에 대한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관의 경우, 인공적 환경이외에도 농지가 만들어내는 농업경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농업생산 활동의 의의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그 활동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16) 국내 경관보전 관련 동향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분. -자연환경보전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 ○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도록 행위제한, 면적 확보 의무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등 조치 ○ 건교부장관이 준농림지역 경관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을 지정·고시 ○ 조례 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유도 ○ 환경부장관이 자연경관 보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 철새도래지 주변지역 주민의 철새보호 활동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철새먹이 제공을 위한 농작물 미수확 존치, 쉽터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주남저수지, 금강호, 고천암호, 영암호, 천수만 등 7개 지역 - 겨울철 보리·밀재배(2,679천원/ha), 벼 미수확 존치(10,473천원/ha)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 - 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설치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과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제정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에 대해 경비 일부 지원 ○ 경관형성편람, 경관주택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각종 개발 및 건축시 활용 ※평창군:경관작물 식재 직불제 및 희귀약용작물 보존 직불제 ※삼척시:경관작물 식재 직불제 ※경관주택 건축 보조금 지급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간보전지역에 경관보전지구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강력한 행위제한
민간환경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가치가 높은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등의 활동추진

출처 : 박동규 외6, 2004

박동규 등(2004)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 외에 직접지불제 방식으로 경작을 유도하고 있다.

① 삼척시

- 3개 지구(맹방지구 4.3ha, 황영조공원주변 0.6ha, 환선굴 5.9ha)
- 개인 소유지 1년간 임차
- 봄: 유채, 여름: 메밀 식재
- 농경지 소유자에게 농지임차료 4,738원, 경작비용 3,262원 지급
- 10일간 32,000명(1일 최대 7,000명) 방문객
- 부녀회 등에서 13,000천원의 농외소득 창출

② 평창군

- 무이지(이효석 생가주변), 피닉스 파크 등 27.6ha
- 농지소유자 40농가 대상으로, 평당 1,500원 보상금 지급
- 감자 식재시 조수익을 평당 4,000원으로 보고, 메밀의 평당 생산량 및 농협수매가를 따져 그 차액에 해당하는 평당 1,500원을 설정. 따라서 ha당 455원 지원.

③ 평창군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접지불제

- 면적감소 or 멸종 약용 10종목
- 17ha
- 대상농가: 전년도 재배농가 우선, 재배시 유리한 농가, 영농교육이수 농가 기준
- 농가별 0.1ha이상~0.5ha 이하(지급액 300천원~1,500천원)
- 평당 1,000원 설정(약초류 평균생산비 3,000~5,000원 중 생산비의 20~30%로 산출)

④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휴경농지에 해바라기, 메밀 등 작물 식재.
- 시·군비+도비로 50%, 50% 자부담.
- 해바라기 : 5백만원/ha
- 메밀 : 3백만원/ha

- 단가산정은 평균노임, 종자대를 기준으로 함
- 2006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2007년 신청 안함. 도에서 추진하는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에 참여하여 해바라기를 식재
- 2010년까지 계속할 예정임

⑤ 경남도

- 농림부 직불금 170만원+80만원 추가
- 250만원/ha 보조금 지급

⑥ 상주시 이안면

- 경관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 3농가 2.5ha에 대해 자체적(시비)을 들여 ha당 170만원을 지원.
- 제반시설 (단지조성, 가공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환경정비 등) 지원.

⑦ 하동군 북천면

- 메밀, 코스모스 재배
- 450만원/ha
- 직불금+경남도 추가 지원금+하동군 지원금
- 유채는 250/ha
- 부대시설 지원(1억 2천 3백만원)

⑧ 봉화군

- 메밀 체험시설단지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하고자 함.
- 직불금 대상지역외의 곳에 ha당 170만원을 들여 지원.
- 군비 80%, 자부담 20% 투입(150,000천원)
- 주변 산책로, 물레방아 및 연못, 쉼터 조성에 군비 5천만원 투자

그리고 농촌경관 중요성에 따른 농촌경관 실태와 보전, 관리를 위해 채혜성 & 안동만(2008)이 영국의 환경관리제를 중심으로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연구하였고, 윤진옥 등(2005)이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의 보전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경관의 현황을 토대로 경관자원을 유형화하고 목록화 함으로써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이동근

등(2005)이 하였고, 경관을 고려한 농촌계획 수립방향을 위한 경관가치의 평가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 홍찬선 등(2005)의 연구가 있다. 채혜성 & 김혜민(2005)은 농촌경관의 보전과 관리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농촌경관 중 농업생산 공간을 대상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에 적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제시하였고, 엄대호 등(2007)은 농촌경관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는 농촌경관지표의 적절성 검토를 통해 농촌경관지표와 연계할 수 있는 농촌경관맵의 작성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였다. 김상범(2005)은 농촌경관의 조사방법과 농촌의 농촌경관 구성요소를 분석하였고, 김종철(2007)은 농촌경관의 현황과약을 위한 기준수립, 경관형성 및 보전을 위한 계획과정의 정립과 지속적으로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경관관리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경관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로 송미령 & 박경철(2005)이 우리나라 농촌경관의 관리와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촌경관 보전정책의 제도화에 유념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주신하(2008)가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향후 농촌경관 계획 및 관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농촌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그 외에도 김주석 등(2007)이 농촌경관의 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고, 성주인(2005)이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법제도, 조례, 경관시책 및 사업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농촌경관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였다.

제4절 경관보전직불제의 개요 및 추진현황

1. 개요

농림사업지침서(2009)에 따르면,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협약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참여 농가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상 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고 이를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WTO농업협정(부속서 2-12)상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인 허용보조(Green Box)⁷⁾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불금액은 정부의 계획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읍·면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2호)로서 도농교류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농촌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한다.

경관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로서 목본류는 제외시키고 있다. 직불금은 재배 작물의 계절 구분에 따라 동계작물은 100만원/ha, 하계작물은 170만원/ha을 지급한다.

2009년부터는 마을주민의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로 ha당 30만원을 지급하되 마을경관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접

7) 허용보조(Green Box)는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지역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예산배부와 지침시달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확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시달 함으로써 확정된다.

경관직불제 협약체결은 시장·군수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간에 체결하며 협약체결 결과는 10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 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하여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평가는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 환경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경관직불제 협약 및 재배관리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인 애그릭스(Agrix)를 통하여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조건은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관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로 목본류는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자체 보조를 포함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마을주민의 마을경관보전활동비(30만원/ha)가 지급된다. 단, 마을경관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접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지급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며, 재배 작물에 따라 동계작물은 100만원/ha, 하계작물은 170만원/ha으로 지급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관직불제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지침 시달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지침시달 및 시도별 예산배정(농식품부)
↓		
경관직불제 대상마을신청	(2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대상마을신청(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	(3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마을 선정 통지(시·도→시·군) 대상마을 선정 보고(시·도→농식품부) 대상마을 확정 통지(시·군→읍·면, 추진위)
↓		
협약 체결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점검	(과종~수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여부 점검(시·군)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지급(시·군)

* 추진체계도에 따라 지자체별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농림사업지침서, 2009

대상지역 선정절차에서 농림부 장관이 경관보전직불제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하면,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촌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시행을 알리고,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되어 있다. 홍보방법은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앰프 방송, 마을게시판,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이 있다.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은 다음 표와 같고, 특히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은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생육 및 개화가 되지 않은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 할 경우,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를 감액

처리하게 된다. 또한 경관보전활동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증감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17)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과중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관리부실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마을경관 보전활동	협약내용 이행여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행정사항으로,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농가→추진위원장(경유)→읍·면장→시장·군수 검토 및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자의 신청 자격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된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한다.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고, 평가지표는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한다. 평가일정은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평가원칙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성과 극대화에 노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을 평가내용으로 한다.

평가에 대한 환류원칙으로는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연도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하고,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과중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한다.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는 각 시행년도 6월말, 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는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농림사업지침서(2005, 2006, 2007, 2008, 2009)에 의하면 경관보전직불제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도에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대상작물, 지급방법 및 금액, 지원기준, 추진체계, 마을경관보전활동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대상작물의 경우, 2005~2006년에는 소득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6종이 경관작물로 인정되었고 2007년에는 연, 자운영을 추가하여 8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7년 시범사업까지는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였고 이 외의 경관작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본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경관작물을 초화류⁸⁾로 확대하였고 해당 품목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시범사업기(2005~2007년)에는 보리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겉보리에 대한 소득손실 차원에서 지급액을 170만원/ha으로 결정하였고 본사업기에는 동계작물의 유채 생산비를 기준으로 동계의 지급단가를 100만원/ha으로 감액시켰다. 즉, 동절기 유희농지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보리를 기준으로 과거의 소득손실액 개념에서 생산비 보전개념으로 전환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사업대상지역의 요건으로 시범사업기에는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⁹⁾되고 마을단위로는 3ha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본사업기에는 집단화 식대면적인 최소 0.5ha이상이고 마을단위는 2ha로 규모가 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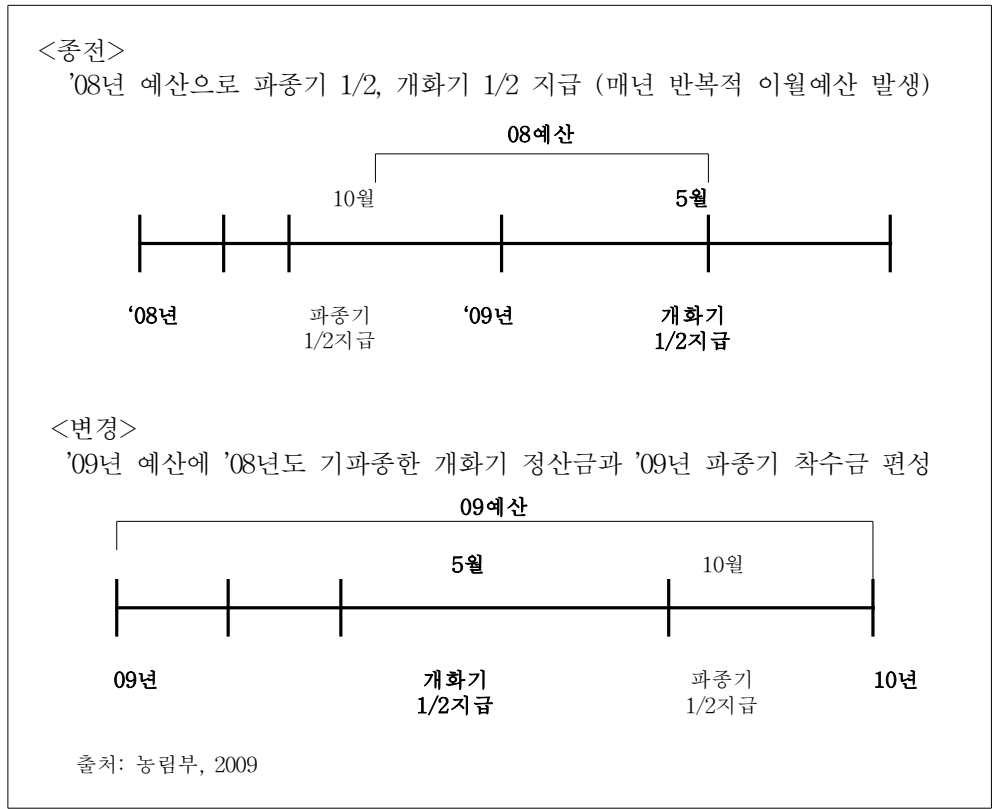
본 사업기에는 농경지내 탐방로 설치 및 주변 환경 관리가 의무화 되었고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기준에 따라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10%를 감액하게 하고 있다.

8) 2008년 사업지침서에는 초화류를 꽃이 피는 초본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계경관작물은 작물별 적정 과중시기를 기준으로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11~2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로 규정하고, 하계작물은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로 정의한다.

9) 집단화는 필지끼리 연결되어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 하천, 수로, 임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시범 사업기에는 대상지역 선정 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였으나, 본 사업기에는 시·도로 주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시·도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동계작물부터는 반복적 이월되는 예산집행방식을 개선 및 동계작물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였다. 동계작물 파종(10~11월)과 개화시기(익년 4~5월)에 맞추어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집행(개화기 지급분은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 50%)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2005년에 시범사업 470ha를 시작으로, 2008년도 5,814ha, 2009년도 16,171ha(동계 15,571, 하계 600) 등 지금까지 모두 23,725ha(14,486백만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표 2-18)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05	'06	'07	'08	'09(계획)
○ 시행면적(ha)	470	470	800	5,814	16,171
- 동계작물(ha)	구분 없음(시범사업)			5,312	15,571
- 하계작물(ha)				502	600
○ 예산(백만원)	600	600	1,000	2,646	9,640

출처: 농림부, 2009

그리고 2009년도부터 마을단위 경관계획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를 농가 단위 경관작물 위주에서 작물 재배를 포함하는 마을경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업참여 마을은 마을경관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농촌관광 연계 등 지역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경관보전직불금 외에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을 30만원/ha지원 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이행, 마을안 경관작물 재배, 마을축제 소요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추진위원 2/3 인감이 공동날인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계좌에 지급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2008년까지는 경관작물 재배중심 프로그램으로 농지에 한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개선으로 2009년도부터는 마을 단위 경관보전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2-19) 경관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내 용	'08년	'09년
○ 프로그램 성격	재배중심 프로그램	지역(마을)단위 프로그램
○ 마을협약 영역	농지에 한정	마을단위
○ 협약주체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경관계획 내용	작물재배계획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
○ 협약단위	참여농가단위 협약	마을주민참여 협약
○ 경관보전활동	-	마을주민 전체

출처 : 농림부, 2009.

전국적으로 확대된 2008~2009년도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0) 시도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참여현황

(단위: ha)

구분(년)	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계	08	5,311	-	-	-	16	35	26	16	21	46	102	1,952	2,410	290	260	137
	09	15,571	3	-	320	-	106	45	42	103	63	585	4,108	8,079	933	1,078	106
하계	08	501	-	-	-	-	-	-	13	69	10	39	105	88	85	92	-
	09	600	3	38	-	-	3	-	3	56	30	26	90	67	191	90	3
계	08	5,813	-	-	-	16	35	26	29	90	56	141	2,058	2,498	375	352	137
	09	16,171	6	38	320	-	109	45	45	159	93	611	4,198	8,146	1,124	1,168	109
비율 (%)	08	100.0	-	-	-	0.28	0.60	0.45	0.50	1.55	0.96	2.43	35.40	42.97	6.45	6.06	2.36
	09	100.0	0.04	0.23	1.98	-	0.67	0.28	0.28	0.98	0.58	3.78	25.96	50.37	6.95	7.22	0.67

2008년도에는 전체 412개 마을에서 총 5,814ha 신청하였으며, 마을당 평균 13.95ha 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도에는 전체 808개 마을에서 총 16,287ha 신청하였고, 마을당 평균 18.77ha로,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신청 면적은 약 2.8배 증가하였고, 마을당 평균 면적 또한 0.7배 증가하였다.

2008년, 2009년 두 해 모두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한 마을 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는 면적 수는 지자체 별로 전남(50.37%)→전북(25.96%)→경남(7.22%)→경북(6.95%)→충남(3.78%)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면적은 2008년 기준 시에는 농가당 평균 0.9ha(6,725농가)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0.1ha증가하여 농가당 평균 1.0ha (16,287농가)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2008년도에 경관작물로 유채를 가장 많이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경관작물을 재배한 것은 유채(30.9%)→청보리(25.6%)→자운영(24.2%)→밀(14.9%)→기타(2.4%)→보리(0.6%)순이며, 2009년도에는 청보리가 전체면적의 34.1%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경관작물을

재배한 것은 청보리(34.1%)→유채(16.6%)→자운영(15.0%)→기타(14.7%)→밀(10.7%)→보리(6.2%)→호밀(3.4%)순으로 나타난다.

(표 2-21) 작물별 재배현황

(단위: ha)

구 분		계	밀	유채	청보리	자운영	호밀	보리	기타
면 적	2008년	5,231.9	781.8	1,615.4	1,338.7	1,264.3	75.2	31.7	124.7
	2009년	15,165.5	1,619.5	2,522.4	5,171.7	2,269.8	509.5	934.6	2,138
비율 (%)	2008년	100.0	14.9	30.9	25.6	24.2	1.4	0.6	2.4
	2009년	100.0	10.7	16.6	34.1	15.0	3.4	6.2	14.1

주) 기타 작물은 헤어리베치, 라이그라스 등이 있다.

제3장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성과 및 실태분석

제1절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에 의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사전에 작목별 중요도 및 지역별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결정하였고, 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 면적과 작물에 비례하여 다단계 비례층화추출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작목별로 도별 재배면적과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전국 자료의 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별로 표본을 배정하였고, 조사작목 재배면적에 비례한 확률비례추출에 의거하여 조사 시군을 선정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 시군에서는 단순임의추출에 따라 조사지역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의 41개 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 3-1) 표본 지역 선정

시도	단지 수	농가 수	재배면적(m ²)	조사대상
대구	1	45	160,000	-
대전	4	51	349,844	-
울산	3	44	255,202	-
경기	5	155	289,606	-
강원	9	81	900,427	1
충북	11	155	558,480	-
충남	15	290	1,414,389	2
전북	110	1,776	20,519,403	14
전남	156	3,039	25,210,523	16
경북	34	447	2,852,408	3
경남	62	845	3,524,719	5
제주	1	213	1,374,500	-
합계	411	7,141	5,740,9501	41

41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모두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업 참여 농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지구별로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추진위원장 등 지구별 1~2명을 대상¹⁰⁾으로 주민 및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5부의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2009년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도 22개 시군에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결과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41개이다.

또한, 2009년 경관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6개도 21개 시군의 경관보전직불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 유효 표본은 33¹¹⁾개로 조사 표본은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비 조사는 6개도 41개 지역의 52농가에 대해, 마을조사는 24개 지역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사례지역과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3-2) 표본의 특성: 지역별 종합

구분	주민(%)	공무원(%)	생산비조사	마을조사
전남	20(48.78)	12(36.36)	16(39.0%)	14(58.3%)
경남	4(9.76)	4(12.12)	5(12.2%)	3(12.5%)
강원	1(2.44)	2(6.06)	1(2.4%)	3(12.5%)
경북	6(14.63)	6(18.18)	3(7.3%)	2(8.3%)
전북	8(19.51)	6(18.18)	14(34.1%)	2(8.3%)
충남	2(4.88)	3(9.09)	2(4.9%)	-
계	41(100.0)	33(100.0)	41(100.0%)	24(100.0%)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일부 조사표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10) 6개 지구에 대한 2차례의 예비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연령대가 고령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사업 참여여부를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업(녹비조성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 등)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1)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의 경우는 인사이드 등을 통해 업무를 담당하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의 설문을 제외하여 경관보전직불제 담당 공무원의 유효 표본은 33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전문가 회의 및 2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사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은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과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역 파급효과,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사항,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은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역 파급효과, 추진사항, 만족도 및 기타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의견 등 개방형 질문 위주로 구성하였다.

마을조사표는 마을개요, 사업운영현황, 사업성과, 애로 및 건의, AgriX, 마을경관협약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고, 생산비조사표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단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개요, 조수입, 생산비 등에 관한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3-3) 주민설문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일반현황	참여기간(년부터)
	08년까지 참여 횟수
	08년 재배 작물명
	참여기간(동, 하계)
	최근 경관작물 재배면적 및 지원받은 금액
	참여 이전에 심던 작물
	계속 참여여부 및 이유
운영현황	재배 관리 방식
	참여 부분
	마을공동활동 참여 경험
	참여한 활동
	마을경관보전협약서 인지여부
	마을경관보전협약서 내용 파악 여부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로 인한 업무부담
	경관작물 활용방법
	판매 방식
	시군의 지원 여부, 지원내용
만족도	직불금 지원 기준 금액,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
	마을보전활동비 지급단가 적정성
	경관보전활동비 사용 구상
	향후 참여의사
파급효과	마을경관개선
	주민화합
	방문객 증가
	소득증대, 순증가 소득액(음식판매, 농특산물판매, 숙박)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소득, 농사경력, 경작지소유여부, 경작지운영형태, 거주지, 경작지
의견	지급단가, 사업대상지 선정, 경관식물 다양화, 마을경관 향상, 희망사항, 기타 사업 전반

(표 3-4) 담당 공무원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비고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역과급효과	지역소득증대 기여도, 이유	
	인구증가 기여도	
	방문객 유치 기여도	
	지역 이미지 향상 기여도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사항	계획 대비 추진성과	
	미진 또는 추진 안 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직불제 지원유무, 내용	
	주민교육 실시 여부, 횟수, 내용	
경관보전직불제 만족도	직불금 지원금액 만족도, 불만족 이유, 적정 예산규모	
	마을보전활동비 지원금액 및 내용 만족도, 불만족시 방안	
일반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성공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	
	경관보전활동비 사용 구상	
	향후 참여 의향, 아닐 경우 그 이유	
	협약체결 월	하계, 동계
의견	마을경관협약 이행상황 및 마을 활동비 집행현황	
	임차인의 보조금 지급절차 확인	
	대상면적 및 보조금 집행(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조사료생산기반사업과 경관직불제와의 연계문제	
	지원대상 작물(초화류) 범위에 대한 지자체 의견	
	칭보리 등 동계작물 지원단가에 대한 여론 및 의견(상향, 하향, 모름 등)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개선사항	
	기타 사업집행상 수행절차의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표 3-5) 생산비 조사내용

연번	조사내역	조사항목	비고
개요	일반현황	농가명, 전화, 주소, 주재배품종, 재배면적	
	재배방법	일반재배, 친환경재배 재배기간, 수확기간	
조수입	1.주산물	생산량(일반재배, 친환경재배),평가액	(생산량 ×농가수취가격)
	2.부산물	생산량, 평가액	
생산비	3.종자, 종묘	품명, 수량, 단가	종자(kg, ℓ), 종묘(주)
	4.무기질비료	종류, 품명, 수량, 단가	
	5.유기질비료	종류, 품명, 수량, 단가	
	6.영양제	종류, 품명, 수량, 단가	
	7.친환경제재	종류, 품명, 수량, 단가	
	8.농약비	종류, 품명, 수량, 단가	
	9.광열동력비	종류, 수량, 단가	
	10.수리(水利)비	단가	
	11.제재료비	종류, 수량, 단가	
	12.소농구비	수량, 단가	
	13.수선비	종류, 수량, 단가	
	14.임차료	종류, 수량, 단가	
	15.기타요금		
	16.작업별 농기계 이용률 및 사용료	종류, 이용회수, 참여인원, 1일 작업량, 농기계이용률, 사용료	
	17.작업단계별 투입노동력(시간)	작업단계, 총투입인력, 자가노력, 고용노력, 위탁	남, 여
	18.고용노임	현금지급액, 급식물평가액, 합계	남, 여, 시간당
	19.자가노임	현금지급액, 급식물평가액, 합계	남, 여, 시간당

(표 3-6) 마을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조사항목	비고
	마을명		
	담당자		
1. 마을개요	인구구성	가구, 인구, 전출, 전입, 15세미만, 65세 이상	08,09
	참여농가	참여호수, 면적	
	경관관련 시책	해당 시군의 경관사업 및 시책	
	마을 기타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처, 지원내용, 지원 금액	
	경관보전직불제 추진현황	사업명, 참여년도, 재배작물, 집행사업비(국비+지방비)	
2. 사업운영 현황	운영형태	개인, 사업 참가자만 공동운영, 개인+참가자	
	공동운영시 비용처리		
	마을경관보전활동 내역	활동내역, 공동활동여부, 구체적 내용, 금액	
3. 사업성과	방문객수 및 매출액	방문객, 소득액, 참여가구/전체가구	
	작물활용유무/내용	작물명, 소득작물활용여부, 판매방식 및 장소, 활용효과	
	타 마을 및 기타 사업연계 활용		
4. 애로/건의	제도적 문제점 및 건의사항	지급단가, 사업대상지선정, 경관작물다양화, 마을경관향상, 희망사항, 사업전반 행정처리	
5. AgriX		입력 유무, 입력 시기, 입력 내용, 입력하지 않은 이유	08,09
6. 마을 경관협약서			첨부

제2절 성과 및 실태분석

1.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은 지역별로는 전남이 20농가(48.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북 8(19.51%), 경북 6(14.63%), 경남 4(9.76%)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농가의 연령대는 40대 ~ 60대가 각각 34.1%, 34.1%, 31.7%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나이는 54세이고 평균 농사경력은 27년 정도이다. 연간 소득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가 53.6%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 농가의 90.2%가 경작지 소유자이며 운영형태는 자경(46.3%) 또는 자경+임차(43.9%) 형태를 가지고 있다. 거주지와 경작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63.4%, 불일치(리 단위 기준)하는 경우는 36.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책은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이장이나 반장, 추진위원장,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농가 등으로 본 조사의 목적인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운영 실태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주민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연령대	40대	14(34.1)
	50대	14(34.1)
	60세 이상	13(31.7)
소득수준	2,000만원미만	6(14.6)
	2,000 - 4,000만원	14(34.1)
	4,000 - 6,000만원	8(19.5)
	6,000 - 8,000만원	3(7.3)
	8,000 - 10,000만원	2(4.9)
	10,000만 원 이상	8(19.5)
농사경력	10년 미만	2(4.9)
	10 - 20년	7(17.1)
	20 - 30년	12(29.3)
	30 - 40년	9(22.0)
	40년 이상	11(26.8)
경작지소유여부	예	37(90.2)
	아니오	4(9.8)
경작지운영형태	자 경	19(46.3)
	자경 + 임차	18(43.9)
	임 차	4(9.8)
거주지와 경작지 일치여부	일 치	26(63.4)
	불일치	15(36.6)

‘귀하는 2008년까지 경관보전직불제에 동계/하계 기간 중 몇 회나 참여하셨습니다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값은 1.4회로서 응답자들의 75.6%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1-2회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동계/하계 기간 중 경관보전직불제 참여횟수

	빈도(명)	비율(%)
1-2회	31	(75.6)
3-4회	6	(14.6)
5-6회	3	(7.3)
7회 이상	1	(2.4)
계	41	(100.0)

‘귀하께서 2008년도에 재배하는 경관 작물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채가 11명(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운영, 청보리, 메밀, 호밀, 연 등의 순이었다. 또한, 재배하는 경관작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9) 2008년도에 재배한 경관작물

구분	빈도(명)	비율(%)
유채	11	(26.8)
자운영	5	(12.2)
청보리	4	(9.8)
메밀	3	(7.3)
코스모스	1	(2.4)
호밀	3	(7.3)
연	3	(7.3)
밀	2	(4.9)
보리	2	(4.9)
해바라기	0	(0.0)
라이그라스	1	(2.4)
유채, 코스모스	2	(4.9)
유채, 메밀	2	(4.9)
유채, 청보리	1	(2.4)
메밀, 보리, 해바라기	1	(2.4)
합계	41	(100.0)

2008년 동계/하계 기간 중 어느 기간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였는가의 질문에서는 절반이 넘는 29명(70.7%)이 동계기간에 경관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벼농사가 끝난 후인 동계기간에

휴경지로 두는 대신 유채와 같은 동계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10) 2008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동계	29	(70.7)
하계	7	(17.1)
동계+하계	5	(12.2)
합계	41	(100.0)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기 이전의 작물형태를 파악한 결과 휴경지로 있었던 경우가 전체의 2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리(21.6%), 벼(18.9%)로 나타났다. 기타 자운영, 청보리가 각각 5.4%였으며 옥수수, 연, 해바라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이전에는 경관작물보다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휴경지 상태였거나 보리와 벼 농사 위주로 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이전 작물형태(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휴경지	11	29.8
자운영	2	5.4
청보리	2	6.5
보리	8	21.6
콩	2	5.4
옥수수	1	2.7
메밀	2	3.2
벼	7	18.9
연	1	3.2
해바라기	1	3.2
합계	37	100.0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참여여부를 질문한 결과 절대 다수인 39명(95.1%)이 또 참여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고, 2명(4.9%)만이 비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참여 이유로는 관광객 유치로 인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료 조달로 인한 비료절감, 농촌마을 경관사업 효과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반해, 경관보전직불제의 비참여 이유로는 촉박한 일정으로 다음 모내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공동 활동의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3-12)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참여	39	(95.1)
비참여	2	(4.9)
합계	41	(100.0)

경관보전직불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어떤 방식으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이 직접 재배·관리’하는 형태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 참가자의 공동운영 방식’이 34.1%, ‘경관보전직불제 참가자 공동 운영방식’이 24.4%로 나타났다.

(표 3-13)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방식

구분	빈도(명)	비율(%)
개인이 직접	17	(41.5)
경관보전직불제 참가자 공동 운영	10	(24.4)
개인 + 참가자 공동운영	14	(34.1)
합계	41	(100.0)

다음으로,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마을공동 활동(회의, 축제, 공동재배 작업 등)에 참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인 85.4%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주민들이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마을공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3-14)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마을공동 활동 참여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참여	35	(85.4)
비참여	6	(14.6)
계	41	(100.0)

또한, ‘마을공동활동 내역 중 어떠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기에 열거한 마을 진입로·안길·공터 등 마을경관 가꾸기 활동 및 소품 구입, 수확·건조·포장 등의 활동, 작물 재배·시비·제초·방제작업 등의 관리, 배수로 관리 등의 재배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 사업, 경관작물 파종 및 식재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활동에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마을공동활동 참여 부분(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경관작물 파종 및 식재	16	(16.3)
작물재배, 시비, 제초, 방제작업 등의 관리	18	(18.4)
배수로관리등의 재배농지및주변경관개선작업	17	(17.3)
진입로 등 마을경관 가꾸기 및 소품구입	21	(21.4)
수확·건조·포장 등의 활동	19	(19.4)
기타(회의 등)	7	(7.1)
합계	98	(100.0)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33명(80.5%)의 주민들이 마을경관보전협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마을경관보전협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9명(70.7%)이 ‘예’라고 응답하였고, 12명(29.3%)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아직 마을경관보전협약서의 유무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의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위원회가 마을경관보전협약서와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3-16) 마을경관보전협약서 존재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3	(80.5)
아니오	8	(19.5)
합계	41	(100.0)

(표 3-17) 마을경관보전협약서 내용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9	(70.7)
아니오	12	(29.3)
합계	41	(100.0)

또한 경관보전직불제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업무부담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1.5%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가볍다’가 29.2%, ‘무겁다’가 29.3%로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관직불제 참여 형태에 따라 그리고 경관직불제 신청 등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원 정도에 따라 부담 정도를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8) 경관보전직불제 참여하면서 느끼는 업무부담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가볍다	가볍다	6	(14.6)	(29.2)
대체로 가벼운 편이다		6	(14.6)	
보통이다		17	(41.5)	
대체로 무거운 편이다	무겁다	10	(24.4)	(29.3)
매우 무겁다		2	(4.9)	
합계		41	(100.0)	

채배된 경관작물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료로 사용’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공제품 원료로 사용’이 22.0%, ‘기타’가 22.0%, ‘사료로 판매’가 14.0%, ‘종자 판매’가 8.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축산사료로 직접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둔다’, ‘종자 채취’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3-19) 재배된 경관작물의 활용방안(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사료로 판매	7	(14.0)
비료로 사용	17	(34.0)
종자 판매	4	(8.0)
가공제품 원료로 활용	11	(22.0)
기타	11	(22.0)
합계	50	(100.0)

‘귀하의 시·군에서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65.9%가 ‘없다’라고 응답해, 경관보전직불제가 대부분 중앙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지원 등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지원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0)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시·군 지원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없다	27	(65.9)
있다	14	(34.1)
합계	41	(100.0)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1ha당 동계 100만원/ 하계 17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5%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4.1%는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많다’고 생각하는 농가는 2.4%에 지나지 않았다.

(표 3-21)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 만족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적다	적다	9	(22.0)	(63.5)
대체로 적은 편이다		17	(41.5)	
적절하다		14	(34.1)	
대체로 많은 편이다		1	(2.4)	
합계		41	(100.0)	

이러한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금액이 작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각각 18명 (43.9%)이 '생산비(기계사용비)'와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와 노동비가 지원 금액으로는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3-22)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 부족 이유(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기계사용비 등)	18	(43.9)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18	(43.9)
다음 농사에 지장을 주어서(지력 약화 등)	1	(2.4)
기타	4	(9.8)
합계	41	(100.0)

향후 경관마을보전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가 61.5, '없다'가 38.5%로, 경관마을보전활동비에 대한 계획을 세운 주민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하나, 경관마을보전활동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의견도 40%대에 이르고 있어 향후 경관마을보전활동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적정한 용도로 경관마을보전활동비가 쓰이도록 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향후 경관마을보전활동비 활용 구상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24	(61.5)
없다	15	(38.5)
합계	39	(100.0)

또한, 향후에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 전원(100.0%)이 참여하겠다고 밝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참여농가의 절대적지지 속에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4)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의향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참여	41	(100.0)
비참여	0	(0.0)
합계	41	(100.0)

(표 3-25) 경관직불제 사업의 효과

구분	매우 기여(1)	대체로 기여(2)	1+2	보통	대체로 기여 못함(3)	전혀 기여 못함(4)	3+4	합계
마을경관개선	19(46.3)	20(48.8)	(95.1)	1(2.4)	0(0.0)	1(2.4)	(2.4)	41(100.0)
마을주민화합	16(39.0)	20(48.8)	(87.8)	3(7.3)	1(2.4)	1(2.4)	(4.8)	41(100.0)
방문객 증가	17(41.5)	12(29.3)	(70.7)	9(22.0)	2(4.9)	1(2.4)	(7.3)	41(100.0)
소득 증대	8(19.5)	19(46.3)	(65.8)	6(14.6)	4(9.8)	4(9.8)	(19.6)	41(100.0)

마지막으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마을경관 개선 기여여부와 마을주민 화합에 긍정적 평가여부, 마을방문객 증가 기여여부, 소득증대 기여여부 등 4개 측정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4개 항의 성과측정 질문 항목에 대한 응답 분석결과, 효과의 크기는 마을경관 개선효과(95.2%), 마을주민화합 효과(87.8%), 방문객 증가 효과(72.5%), 소득 증대효과(65.9%)로 나타나 농촌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농촌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4개 측정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항목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정책 효과의 순위는 경관개선>마을주민화합>방문객증가>소득증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경관보전직불제의 단기적 목적인 마을 경관 개선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궁극적 목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 밖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급 단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재배작물 종류에 따라 단가의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관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면적의 상한선을 풀어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마을경관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마을 진입로 경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기타 사업전반에 관해서 직불금이 부족한 바 경관보전사업에 필요한 유기질·규산질 비료의 지원 그리고 경관작물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시군(읍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인터뷰가 이루어진 경관보전직불제 담당 공무원은 지역별로 전남 12(36.36%), 전북6(18.18%), 경북6(18.18%), 경남4(12.12%), 충남3(9.09%), 강원2(6.06%)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시군(읍면)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역 파급효과를 ‘지역소득증대’, ‘인구 증가’, ‘방문객유치’, ‘지역이미지 향상’ 등 4개 항목의 질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78.8%, 다음으로 ‘방문객유치’가 60.7%, ‘지역소득증대’가 60.6%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마을 경관보전을 통한 농촌의 이미지 향상을 계기로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어 방문객증가와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증대 등 관련 파급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0%에 지나지 않아 아직 여기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군(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현재 지역이미지 향상>방문객유치>지역소득증대>인구 증가의 순서로 자리잡아가는 단계이면서 아직 지역소득 증대와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²⁾.

(표 3-26) 경관직불제 사업의 효과

구분	매우 기여(1)	기여(2)	1+2 (%)	보통	미흡(3)	매우 미흡(4)	3+4 (%)	합계
지역소득증대	3(9.1)	17(51.5)	(60.6)	10(30.3)	1(3.0)	2(6.1)	(9.1)	33(100.0)
인구 증가	0(0.0)	1(3.0)	(3.0)	14(42.4)	14(42.4)	4(12.1)	(54.5)	33(100.0)
방문객유치	5(15.2)	15(45.5)	(60.7)	10(30.3)	3(9.1)	0(0.0)	(9.1)	33(100.0)
이미지 향상	7(21.2)	19(57.6)	(78.8)	6(18.2)	1(3.0)	0(0.0)	(3.0)	33(100.0)

한편, 경관보전직불제가 지역소득 증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유에 대해서는 휴경지를 활용하여 이모작으로 인한 소득증대, 경관보전직불금 추가지원 등을 삼았으며, 공통적으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담당 공무원의 72.7%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계획에 따라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추진이 미흡 이유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고 시군 인력부족, 행정서류 등 절차 복잡 등을 들었다.

12) 실제로 ‘마을조사표’에 의한 가구 및 인구를 조사한 결과 17개 마을의 2009년도 가구는 2008년도보다 평균 1.0가구, 인구는 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계획대비 추진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아주 잘 추진	3	(9.1)
잘 추진	21	(63.6)
보통	9	(27.3)
합계	33	(100.0)

또한, 51.5%가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해당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앙의 지원 외에도 자체적으로 수확 및 포장작업 지원, 축제 지원, 재배장려금 지원, 쌀 소득수확량의 50%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경관보전직불제관련 지자체의 지원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없다	16	(48.5)
있다	17	(51.5)
합계	33	(100.0)

시군 담당 공무원의 69.7%가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내용 이해 및 홍보, 파종기기 및 관리사항과 같은 작물 재배방법이나 선진 사례의 강의 및 견학, 공청회 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시군 중 1년에 1회 정도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하여 년 1회~3회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9) 경관보전직불제관련 지자체 주민교육 실시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교육실시안함	10	(30.3)
교육 실시함	23	(69.7)
합계	33	(100.0)

(표 3-30)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지자체 주민교육 실시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1회	10	(43.5)
2회	7	(30.4)
3회	5	(21.7)
4회	1	(4.3)
합계	23	(100.0)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 21.2%로 ‘보통’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면 절반 정도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 비율이 48.5%로 참여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액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3-31)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금액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만족	7	(21.2)
보통	10	(30.3)
불만족	15	(45.5)
매우 불만족	1	(3.0)
합계	33	(100.0)

불만족 이유로는 작물별 지원 금액의 형평성문제가 50.0%, 기타의견 50%는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과 쉬운 작물의 차등지원 필요, 생산비가 많이 소요, 작물별 단가변동 등이 있었으며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원금(보조금)의 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32)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 불만족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작물별지원금액 형평성 문제	8	(44.4)
기 타	8	(55.6)
합계	16	(100.0)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87.9%는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3-33)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지자체 지원필요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지원 필요	29	(87.9)
지원 불필요	3	(9.1)
기타	1	(3.0)
합계	33	(100.0)

그 밖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파악한 결과, 먼저 마을 경관협약 이행상황 및 마을활동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행정업무절차에 있어 시행지침서가 미흡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정확한 기준의 지침서 작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토지 소재지별로 단지 구성 시 마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리 단위가 아닌 단지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상토지면적에 있어서 광역단위는 현실에 적합한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기타 마을활동비로 홍보비용이나 인건비, 축제와 관련된 전기세 보험료 등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마을활동비를 당해 연도에 전액지급, 정상적인 과종을 하였을 경우에만 마을활동비 전액지급 요망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대상면적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당해 연도에 잡힌 예산은 그 해에 해결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의견과 주민참여도와 기상조건, 과종 및 개화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비 보조금의 삭제 요망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사료생산기반사업과 경관직불제연계와 관련된 의견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사업과 경관직불제의 연계와 관련하여 이중 지원이라 생각되어 중복을 피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연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자금 사이트상에 확인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밖에

경관특구에 한해서 사료작물을 인정하고 상한면적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원대상 작물(초화류)에 대한 지자체 의견으로는 동계작물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초화류와 일반작물간의 소득격차가 있어 초화류 재배시 경관직불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밖에 자운영 등은 개화기간 및 개화 후에도 주민의 호응이 적어 지원 대상 작물에서 제외를 요하며 녹비작물의 경우 경관효과가 적거나 주 작물 파종시기 전에 갈아엎는 경우가 흔해 지원대상작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계작물 지원 단가에 대한 여론 및 의견으로는 각 지원 대상 작물 간 지원 단가를 조정하여 차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 경관보전 직불제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관련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으로는 개화기 이전인 4월 중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집행상 수행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게끔 수행 지침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도농교류전문가라는 용어를 완화시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유연성 부여, 사업집행 시 서류절차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홍보 및 사업설명회 필요성, 원소유주와 임대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 지급되는 지원금의 변동사항이 많다는 점과 경관직보전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의 우수지역 방문과 재배교육 등의 연수를 통해 업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유기질퇴비사업, 조사료생산기반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빠짐으로 인해 경관지구의 집단화에 문제가 생기며, 마을 내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금으로 면적의 5%이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의견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마을단위 조사 결과

경관보전직불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 검증을 통한 종합적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참여농가 및 담당 공무원 조사와 별도로 마을조사표에 의한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을 조사는 전남 14, 경남 3, 강원 3, 전북 2, 경북2 등 모두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현지 방문 실사로 진행되었다.

마을조사에서 나타난 작물재배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9년도 작물 재배는 2008년도 보다 메밀 재배가 늘어났고 해바라기, 박, 라이그라스 등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표 3-34) 경관작물 재배 현황 비교

구분	2008년도 작물		2009 작물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유채	3	17.6	1	5.0
자운영	4	23.5	2	10.0
청보리	6	35.3	4	20.0
메밀	4	23.5	8	40.0
기타	-	-	5	25.0
합계	17	100.0	20	100.0

AgriX 입력 실태를 파악한 결과, 9개 지역은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있었으나 08년 동계는 입력하지 않은 곳이 1개소, 08년 동계만 입력한 곳이 3개소에 이르고 있었다.

AgriX 입력 시기를 보면 주로 3월, 4월, 5월, 7월, 12월 등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griX 입력 내용도 신청내용 전체를 입력하는 곳은 2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신청인, 면적, 지번 등 일부 항목에 그치고 있었는데 인터뷰 결과 AgriX의 시스템이 미흡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의 활용능력에도 동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AgriX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농촌경관직불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을 파악한 결과, 24개 지역 중 3개 지역을 제외한 21개 지역에서

라는 계획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논농업직불제 25%, 친환경직불제 18.8%, 꽃길조성 14.6%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표 3-3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사업(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논농업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	12	(25.0)
친환경직불제	9	(18.8)
꽃길조성	7	(14.6)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	(8.3)
국토공원화사업	3	(6.3)
축제비용	2	(4.2)
농촌체험마을	2	(4.2)
종자	2	(4.2)
기타	7	(14.6)
합계	48	(100.0)

24개 지역 중 3개 지역은 협약서 존재가 미확인되었고 따라서 협약서 기간 증 날짜 표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2개 지역은 구체적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개소는 6월 20일로 되어 있었다. 또한 3개 지역은 2008년 동계작물의 협약기간이 08년 8월~09년7월로 되어 있고 09년 하계협약은 09년 8월로 되어 있는 등 협약서 작성 미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평균 협약면적은 24.01ha, 협약 참가자수는 평균 20.6명이다.

조사지역의 25개 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표준형을 상요하고 있었고 10개 협약서에 준수 서명이 빠진 곳이 있어 협약서 작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서의 특약사항은 지역별로 비교적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협약서의 경우 사업비 설계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청 및 심사, 평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신청서에서 마을경관자원현황 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6)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 사업(복수응답)

연번	특약사항
1	조사료로 관내 축산농가와 협약함.
2	생육상황 60%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토록 함
3	마을활동계획서 작성됨(원두막, 철재터널, 꽃밭조성, 농로양변 꽃길조성)
4	마을활동으로 주변 환경관리 인건비 및 비료 농약이 포함되어 있음
5	마을활동으로 축제행사장 기반조성, 마을축제를 위한 소품구입 및 재료비
6	마을활동으로 꽃길조성, 묘목구입, 농촌관광시설, 주변청소 등이 포함됨.
7	나주평야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58세대가 집단이주한 곳임. 작년엔 영양보리, 올해는 유연보리를 심음. 자주 침수되는 지역으로 내년에 m당 1만원 상당의 부직포(친환경)를 논두렁에 설치하여 생산비를 줄이려고 함
8	08년 활동계획서의 내용은 종자구입 및 비료구입으로 되어 있음. 09년활동계획서의 금액은 사업비(2천만원)가 부적정한 것으로 종자, 파종비, 비료구입비, 배수로정비, 장비임차료 등을 기입함.
9	축산농가로 구성되어 있음. 마을활동계획서의 내용은 종자구입 및 비료구입으로 되어 있음. 또한 비용은 500만원으로 부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음
10	꽃길조성, 묘목구입, 선진현장체험으로 작성되어 있음.
11	파종인건비, 라이그라스종자, 산수유 고목 숲관리
12	효석문화제 기간 농산물판매 및 먹거리장터 운영에 필요한 텐트, 현수막, 농산물포장박스, 부대비용 및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도로변 꽃가꾸기

4. 생산비 조사결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단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관작물 재배 주민을 대상으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2008년 경관작물재배단지 411개 단지중 지역별, 작물별 재배 면적을 고려하여 10%인 41개단지를 선정하고 각 단비별로 경관작물 재배 농가 중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표준화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현지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표 3-37) 조사지역 선정 기준

지역	단지	농가	재배면적 (m ²)	작물별 조사단지 수											
				유채	자운영	청보리	밀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보리	호밀	기타	계	
대구	1	45	160,000												0
대전	4	51	349,844												0
울산	3	44	255,202												0
경기	5	155	289,606												0
강원	9	81	900,427					1							1
충북	11	155	558,480												0
충남	15	290	1,414,389	1						1					2
전북	110	1,776	20,519,403	2	1	2	4	1	2		2				14
전남	156	3,039	25,210,523	6	4	5		1							16
경북	34	447	2,852,408					1	1				1		3
경남	62	845	3,524,719	2	1		1			1					5
제주	1	213	1,374,500												0
합계	411	7,141	57,409,501	11	6	7	5	4	3	2	2	1	0		41

조사내용으로는 조수입(당해년도 생산량, 부산물 생산량, 농가수취가격)과, 생산비(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광열동력비, 수리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수선비, 조성비, 임차료, 기타요금, 고용노력비, 자가노력비, 토지자본용역비와 대농기구 및 영농시설 소유현황)로 구성되었다.

(표 3-38) 생산비 조사 내용

연번	조사내역	조사항목	비고
개요	일반현황	농가명, 전화, 주소, 주재배품종, 재배면적	
	재배방법	일반재배, 친환경재배 재배기간, 수확기간	
조수 입	1.주산물	생산량(일반재배, 친환경재배),평가액	(생산량× 농가수취가격)
	2.부산물	생산량, 평가액	
생 산 비	3.종자, 종묘	품명, 수량, 단가	종자(kg, ℓ), 종묘(주)
	4.무기질비료	종류, 품명, 수량, 단가	
	5.유기질비료	종류, 품명, 수량, 단가	
	6.영양제	종류, 품명, 수량, 단가	
	7.친환경제재	종류, 품명, 수량, 단가	
	8.농약비	종류, 품명, 수량, 단가	
	9.광열동력비	종류, 수량, 단가	
	10.수리(水利)비	단가	
	11.제재료비	종류, 수량, 단가	
	12.소농구비	수량, 단가	
	13.수선비	종류, 수량, 단가	
	14.임차료	종류, 수량, 단가	
	15.기타요금		
	16.작업별 농기계 이용률 및 사용료	종류, 이용회수, 참여인원, 1일작업량, 농기계이용률, 사용료	
	17.작업단계별 투입노동력(시간)	작업단계, 총투입인력, 자가노력, 고용노력, 위탁	남, 여
	18.고용노임	현금지급액, 급식물평가액, 합계	남, 여, 시간당
	19.자가노임	현금지급액, 급식물평가액, 합계	남, 여, 시간당

경관작물 단가분석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조사의 통일성과 타당성을 기하였다.

(표 3-39) 용어의 정의

구분	용어의 정의
조수입	조사대상기간의 해당 작목경영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으로서 주산물 평가액(당해년도 생산량×당해년도 농가 평균수취가격 ¹³⁾)과 주산물생산에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 평가액을 합제한 총액
경영비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
소득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생산활동의 성과
종묘비	과중한 종자나 옮겨 심은 묘 등의 비용
비료비	투입된 무기질 비료 및 유기질 비료의 비용
농약비	병충해 예방 및 구제에 투입된 농업용 약제의 비용
광열동력비	기계동력재료, 가온재료, 광열재료, 전기료 등
수리비	수리구축물의 정상적인 수리·유지 및 감가상각비와 물을 사용하는데 든 농지 개량조합비
제재료비	투입된 종자, 비료, 농업용 약제 및 광열동력 등 각 비용으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모든 재료비
대농기구상각비	각종 농기구의 비용으로서 각 대농기구별 비용부담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
영농시설상각비	주택, 헛간, 창고 등의 비용으로 각 시설물별 비용부담율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산출
수리비	수리비는 대농기구 영농시설의 수리, 유지를 위하여 수리한 비용
임차료	대농기구, 영농시설, 토지 등을 임차하여 지불된 금액
위탁료	조사작물 생산과정 중 일부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의 비용
고용노동력비	조사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고용노동력의 용역비용

13) 농가수취가격은 농가판매가격에서 출하비용을 뺀 것이다.

지원단가 검증을 위한 생산비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원단가 검토는 WTO농업협정상에서 규정하는 경관보전 직불금의 규정에 따라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검토 하였다.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재배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자가노력비가 포함된 생산비 측면에서 검토하고 농지임차료는 대부분의 경관재배농가들이 자기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생산비 분석을 위한 투입물량과 단가는 조사농가 자료에 의하는데 지역적으로 가격의 편차가 크고 농가구입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비료, 농약비 및 노임은 전국평균 단가를 적용하였다.

경관작물 재배에 투입되는 물재비에 대하여 경관보전직불제외의 사업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산물은 경관작물재배이므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3-40) 생산비 산출 기준

비목 별		수 량	단 가	
경 영 비	중 간 제 비	종묘비 종자 종묘	농가 투입량	농가 구입가격
		무기질 비료비	"	전국평균 가격
		유기질 비료비	"	"
		농약비	"	"
		수리비(水理費)	농가 투입시간	"
		농기계사용료	농가 투입량	농가 지급금액
		제 재료비	"	농가 구입금액
	농지 임차료		자가 농지사용으로 제외	
	위탁영농비		농기계사용료에 포함	
	고용노력비	고용노동 투입시간	전국 평균 가격	
자가노력비	자가노동 투입시간	"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동계작물, 하계작물의 구분을 떠나 현지 실사 및 참여 농가와 담당 공무원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물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관작물의 분류는 경관작물 중 꽃을 중심으로 경관을 평가할 수 있는 작물을 유형1, 기타의 작물은 유형 2로 분류하여 생산비 조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관작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경관작물 유형1 : 메밀, 유채, 자운영, 해바라기, 코스모스
- 경관작물 유형2 : 청보리, 밀, 호밀, 보리

경관작물 유형1 생산비 산출결과 생산비는 평균 178,580원으로 산출되었다. 작물 중에서는 유채가 227,218원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경관작물 유형1 생산비

(단위: 원/10a)

구분	메밀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자운영	평균
생산비 계	177,318	227,218	164,628	163,412	160,332	178,580
- 종묘비	35,700	10,000	18,000	44,200	12,500	24,080
- 비료비	26,147	41,835	40,575	26,400	21,640	31,319
- 농약비	4,000	12,000	-	5,100	4,000	5,020
- 농기계사용료	75,000	100,500	45,000	52,800	85,650	71,790
- 고용 노력비	4,291	27,128	42,461	19,108	1,931	18,983
- 자가 노력비	32,180	35,755	18,592	15,804	34,611	27,388

경관작물 유형2 생산비 산출결과 평균 111,517원으로 산출되었다. 작물 중에서는 호밀이 16,022원으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경관작물 2 생산비

(단위: 원/10a)

구분	청보리	밀	보리	호밀	평균
생산비 계	102,219	113,374	114,454	116,022	111,517
- 종묘비	18,000	20,650	17,328	33,600	22,395
- 비료비	33,300	21,640	33,720	25,605	28,566
- 농약비	5,000	15,000	3,935	-	5,984
- 농기계 사용료	27,255	45,000	45,000	30,000	36,813
- 고용 노력비	5,649	-	6,605	7,509	4,941
- 자가 노력비	13,015	11,084	7,866	19,308	12,818

본 연구에서 참여농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과 생산비 조사결과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지급단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안 :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보전 지원 단가(생산비 기준)

- 전제 : WTO규정에 부합되는 경관작물재배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단가
- 산출기준:
 - * 추가적인 비용은 자가노동의 기회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생산비개념으로 접근하여 산출, 생산비는 수확, 포장, 운반, 판매비용등을 제외한 주산물 비 판매시의 생산비로 산출, 대부분의 경관작물 재배 농가는 자기 농지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임차료는 생산비에서 제외
 - * 조사농가의 9.7%가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중 50%는 벼농사를 위해 임차한 논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 50%만 경관작물의 집단화를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지임차 농가는 4.8%에 불과함.

(단위: 천원/ha)

구분	경관작물 1						경관작물 2				
	메밀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자운영	평균	청보리	밀	보리	호밀	평균
생산비	177	227	165	163	160	178	102	113	114	116	112
지급단가	170	170	170	170	170	170	100	100	100	100	100

- 지급단가: 경관작물 1 ⇒ 170만원/ha, 경관작물 2 ⇒ 100만원/ha

○ 2안 :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지원 단가(경영비 기준)

- 전제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중 마을경관보전활동비용에서 마을 주민의 직접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기준하여 자가 노력비를 제외한 경영비 개념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
- 산출기준 : 경관작물별 생산비 중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경영비를 보전, 농지임차료는 제외

(단위: 천원/ha)

구분	경관작물 1						경관작물 2				
	메밀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자운영	평균	청보리	밀	보리	호밀	평균
생산비	145	191	146	148	126	151	89	102	107	97	98
지급 단가	150	150	150	150	150	150	95	95	95	95	95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 ⇒ 150만원/ha, 경관작물 2 ⇒ 95만원/ha

○ 3안 : 농지임차료를 포함한 지원 단가

- 전제 : 대부분의 경관작물재배 농가는 자기 소유농지를 이용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재재농가 소유농지의 기회비용도 보전하여 주는 개념으로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준 : 생산비에 농지임차료를 포함하여 산정

(단위: 천원/ha)

구분	경관작물 1						경관작물 2				
	메밀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자운영	평균	청보리	밀	보리	호밀	평균
생산비	267	317	255	253	250	268	192	203	204	206	201
지급 단가	250	250	250	250	250	250	200	200	200	200	200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 ⇒ 250만원/ha, 경관작물 2 ⇒ 200만원/ha

○ 4안 :소득 발생작물 지원 단가

- 전제 : 현행 경관작물 중에는 농가판매 작물과 비판매작물이 혼재되어 재배되고 있으므로 소득을 기준하여 판매에 의한 소득 발생작물과 비판매에 의한 비소득작물로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준 : (경영비+자가노력비) - 소득= 지원단가

- 대상 소득 작물 : 청보리, 유채, 메밀, 밀, 보리, 호밀

- 지급단가 : 소득작물 ⇒ 80만원/ha

* (180,401원+43,059원)- 144,020원= 79,440원/10a

제4장 국외 사례

제1절 접근방법 및 국외 정책의 개관

제4장의 내용은 선진 외국의 마을 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촌경관보전 사업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국외 사례분석은 국내에 소개된 2차 자료를 기초로 외국 문헌과 정책사례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정책담당자 인터뷰와 자문을 통해 정리하였다.¹⁴⁾

선행연구의 결과 검토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농촌경관 보전활동에 대하여 계약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영국의 ES (Environmental Stewardship) 제도와 일본의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제도’, ‘경관자연환경보전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농촌경관 보전 활동, 「경관법」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관보전직불제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현재 EU의 농촌정책은 2000년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기초로 전 회원국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농촌개발을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¹⁵⁾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회원국 정부는 EU차원의 전략을 각 지역의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해야하며 EU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시책간에 일관성과 보완성을 유지해야 한다.

EU는 2007-2013년 기간 중에 농촌개발의 4가지 축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 경쟁력 향상, 전원공간 및 환경개선,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촌경제의 다원화 추진, 고용과 다원화를 위한 지역적 역량 배양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EU의 농촌개발 정책 중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의 농촌경관보전직불제와 비교 검토가 가능한 부분은 ‘전원공간 및 환경개선’ 관련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과 토지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농촌경관관리정책은 크게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경관법과

14) 영국사례는 ES 주관 기관인 Natural England의 Peter. Whitworth, 일본사례는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樋口 崇 담당자의 자료협조와 인터뷰 및 자문을 거쳐 정리하였다.

15) 농촌개발을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Community Strategic Guidelines for Rural Development)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산간지역직불제의 일부로 맺어지는 협정체결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21세기 신농정2006’에 따라 농촌경관 자연환경의 보전 형성 등을 위한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관련 사업을 통합해서 평성19(2007)년도부터 새롭게 ‘경관·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촌자연환경의 보전 재생,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농촌경관형성, 자연재생활동을 하는 조직에 대한 직접지원 등으로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이 주관하며, 민간단체 등이 사업주체로 정책보조와 사업내용에 따라 1/2 이내의 보조를 하고 있다.

제2절 영국의 농촌경관정책

1. 동향과 개관

가. 기존 농촌개발정책

영국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2000-2006)¹⁶⁾은 EU규정 1257/1999에 규정된 농촌개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토지기준 지원정책(Land-based Scheme)과 사업별 지원정책(Project-based Scheme)으로 구분하여 농촌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기업 및 농촌지역사회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10대 주요 정책¹⁷⁾을 추진해 왔었다.

‘토지기준 지원정책’은 일반적으로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추진 주체가 되어 농지의 소유 또는 경영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농민은 여러 가지 정책에 동시에 지원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정책 대상지역이 정해진 ‘구릉지

16) ERDP(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17) 영국의 10대 친환경적 농촌개발정책은 Land-based Scheme에 의한 ·ESA(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CSS(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OFS(Organic Farming Scheme) ·FWPS(Farm Woodland Premium Scheme) ·WGS(Woodland Grant Scheme) ·HFA(Hill Farm Allowance)와 Project-based Scheme에 의한 ·ECS(Energy Crops Scheme) ·PMG(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RES(Rural Enterprise Scheme) ·VTS(Vocational Training Scheme)이 있다.

농장 보조금 정책'과 '환경민감지역정책'을 제외하고는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별 지원정책'은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토지가 아니라 농민, 비농민 또는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각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체계로 개별적인 개발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는 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나. 영국 농촌개발정책의 전환

영국의 이러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2001년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큰 전환점¹⁸⁾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 Sensitive Areas : ESA)과 전원관리인정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 CSS)을 환경관리정책(Environmental Stewardship : ES)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정책전환과 제도 통합은 기존의 ESA나 CSS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한 환경관리 기준이 지역 농가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에 대한 개선과 함께 '더 완화된 기준을 보다 넓은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영국 전체 농촌의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영국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2000-2006)에 따라 2006년 12월 말로 계획된 모든 '사업별 지원정책'은 완료되었으며 '토지기준 지원시책'의 경우 개편 통합된 환경관리정책(ES)과 함께 현재까지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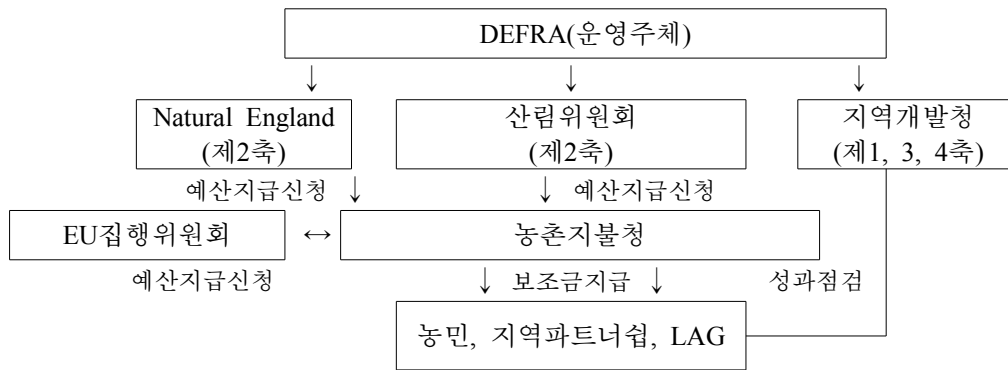
2007-2013년도 영국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 RDPE)은 소비자 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 및 식품 산업 육성, 전원지역에서 환경보전과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농업의 역할 수행, 농촌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지속성에 기여 등 세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영국의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은 EU의 농촌개발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18) 영국농업과 농촌정책의 향후 방향을 다룬 Curry Report에 의해 2005년 영국농촌개발정책은 전면적인 개편이 단행되었다.

19) 예를 들어 ESA와 CSS의 경우 10년 계약을 맺은 경우 2006년이 지났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농가의 희망과 신청에 따라 신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기존의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4개의 축²⁰⁾으로 구성된 실행전략 체계를 갖추어 추진되고 있는데 제1축과 제3축은 각 지역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 RDA)에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진행하며 제2축 정책은 영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추럴 잉글랜드(Natural England)²¹⁾와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담당하는 이원적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4-1> 영국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다. 기존 주요 정책의 검토

새로운 통합정책인 ES를 검토하기에 앞서 기존 정책 중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현재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토지기준 지원시책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정책인 환경민감지역정책(ESA)과 그 외 지역에 대해 1991년 시행된 전원관리인정책(CSS)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 Sensitive Areas : ESA)

ESA는 1987년 MAFF가 주관하여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의 빼어난 경관, 야생 동식물, 역사적인 특성 보전과 효율적 경작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농가나 토지 관리자가 중앙정부와 10년 계약(5년 후 재조정)을 맺도록 되어 있다.

20) 제1축 : 농림업의 경쟁력 향상, 제2축 : 전원공간 및 환경개선, 제3축 :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촌경제의 다원화 추진, 제4축 : 고용과 다원화를 위한 지역적 역량 배양(LEADER 프로그램 운영 포함)

21) Natural England는 기존의 English Nature, Countryside Agency가 통합된 기구임

지역 지정기준의 필수적 전제조건²²⁾은 각 지역은 국가적으로 환경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야하며, 특수한 경관방식의 적용, 관리, 확장에 의해서 토지경관을 보전해야 한다. 또한 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의 경작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각 지역은 환경적 관심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단위를 대표하여야 한다.

ESA가 제공하는 활동내용은 보상금의 제공뿐만 아니라 농장의 자연환경 평가, 환경을 고려한 농업실천을 위한 조언과 기술지도 등을 포함한다.

지정 지역 내 농가나 토지 관리자들은 중앙정부와 10년간의 관리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5년 후 계약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계약에 의해 지정 지역에 포함된 토지면적당 연간 보상비용을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정 이후 매 3년마다 보상비용(payment)의 표준율을 재검토한다. 보상비용의 액수는 EU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각 ESA의 목표와 성과지표는 현지의 주요 자원에 근거를 두어 5년 안에 달성할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와 성과지표²³⁾가 설정된다.

- 전반적인 참여목표 : 일반적으로 계약 대상이 되는 토지의 비율로 표시 (예 : 거친 땅의 75%는 1단계 계약에 속한다)
- 계약 토지와 관련된 목표(예 : 보존계획에 따라 가축보호용이 아닌 벽과 울타리의 10%를 복구한다)
- 다양한 종류의 토지에 ESA 관리계약을 적용한 결과의 환경영향 지표 (예 : 거친 땅에만 자라는 식물은 퇴화되지 않는다)

22) 그러나 이 기준이 단일조건은 아니며 기타의 고려요인이 적용된다.

23) 1992-1997년도용으로 설정된 West Penwith ESA의 환경목표 및 결과 사례

(표 4-1) ESA의 목표와 성과지표(West Penwith ESA)

구분	성과지표
목표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의 소규모 field에서 역사적 가치와 자연경관 특성을 유지한다. 2. '깨끗한' 땅의 75%는 1단계 계약에 속한다. 3. 벽과 울타리의 총길이는 줄이지 않는다.
목표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친' 땅의 야생시골과 자연경관 특성을 유지한다. 2. '거친' 땅의 75%는 1단계 계약에 속한다. 3. '거친' 땅에 적합한 식물은 악화되지 않는다
목표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징이 되는 요소들을 관리함으로써 자연경관과 특성을 유지, 향상시킨다. 2.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농가는 없어지지 않는다. 3. 계약의 50%는 보존계획에 속한다. 4.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농가의 10%는 보존계획에 따라 수리한다. 5. 가축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벽과 울타리는 보존계획에 따라 수리한다
목표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고학적 특징과 역사적 특징을 유지, 향상시킨다. 2. 기록된 고고학적/역사적 특징은 없어지지 않는다. 3. 농사로 인해 이들 특징에 손상이갈 위험성도 증가되지 않는다. 4. 보존활동의 10%는 고고학적/역사적 특징의 관리에 할당한다

ESA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²⁴⁾를 보면 자연경관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ESA내의 토지지표물의 유형, 선형특성, 점형특성 등 경관요소들에 대한 관찰결과 프로그램 실시 4년만에 대상지역의 93%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야생동물 및 자연경관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야생동물이 잘 보존되고 있었으며 양치류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가축보호용 울타리가 개선되어 경관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결국 농민들의 인식 제고로 경관의 관리상태가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4) ADSS(1996), Environmental monitoring in the West Penwith ESA 1987 - 1995(Summery report) 등 4개의 보고서

(2) 전원관리인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 CSS)

CSS는 전원지역위원회(Countryside Commission)에 의하여 시범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MAFF로 인계되어 추진되었다. 역시 10년간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관리에 대한 보상비용은 매년 지급되며, 자본비용(capital payment)은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한다.

CSS의 목적은 환경민감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 및 농촌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경관을 복구·재창출하여 친환경적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협약방식은 국가가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시행지침을 정하고 지역주민이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와 농가간 협약방식이다.

CSS가 요구하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종작물 재배관리 : 전통종자, 초지전환, 논두렁보호, 야생초과종 등
- 토지경계 시설 : 생울타리 설치 및 돌담복원 등
- 역사적 유적지 : 전통주택, 공원, 가옥 등 복원
- 강, 호수관리 : 습지, 갈대밭, 잡목숲 관리 등

지원기준은 경관유형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는데 전통가옥 및 건물복원은 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협약기간은 5년이며 연간 지원단가 상한(EU규정, 1EUR:1,400원)은 단년작물의 경우 840천원/ha/년, 영년작물은 1,260천원/ha, 기타 토지이용은 630천원/ha, 멸종위기 가축품종 보호는 171천원/UGB, 산림 내 방화지대 유지는 56천원/ha(하한) ~ 168천원/ha(상한)이다.

(표 4-2) 전원보전사업(CSS; Country side Stewardship) 지원 기준

구 분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경종작물	경종작물재배지의 초지전환	£ 280/ha
	전통종자공급	£ 250/ha
	기존 휴경지의 유지(높은 환경가치)	£ 50/ha
	야생초종자파종	£ 510/ha
	경지의 보호두렁조성	£ 90/ha
	화초식부	£ 510/ha
토지경계물	울타리 쌓기, 가지치기/심기	£ 3/m
	울타리조성을 위한 부가적 보조	
	- 기존담의 제거	£ 0.5/m
	- 울타리설치사전작업	£ 1/m
	- 매듭과 말뚝	£ 1/m
- 주변 흙 복원	£ 0.5/m	
	돌담복원	£ 12/m
역사적 유물 및 유적지	역사공원의 조성	계획에 따라 가변적
	저택의 정원수	
	- 일반정원수 식수	£ 6/tree
	- 저택 및 공원 정원수 식수	£ 30/guard
	전통적인 물품의 복원	£ 225/m
	전통가옥 및 건물의 복원	총 비용의 약 50%
강 및 호수	습지	£ 100/ha
	갈대밭	£ 100/ha
	수변상승에 대한 추가보조금	£ 60/ha
	기타 잡목숲	
	- 통나무	£ 40/holt
- 목재용나무(chamber)	£ 125/ho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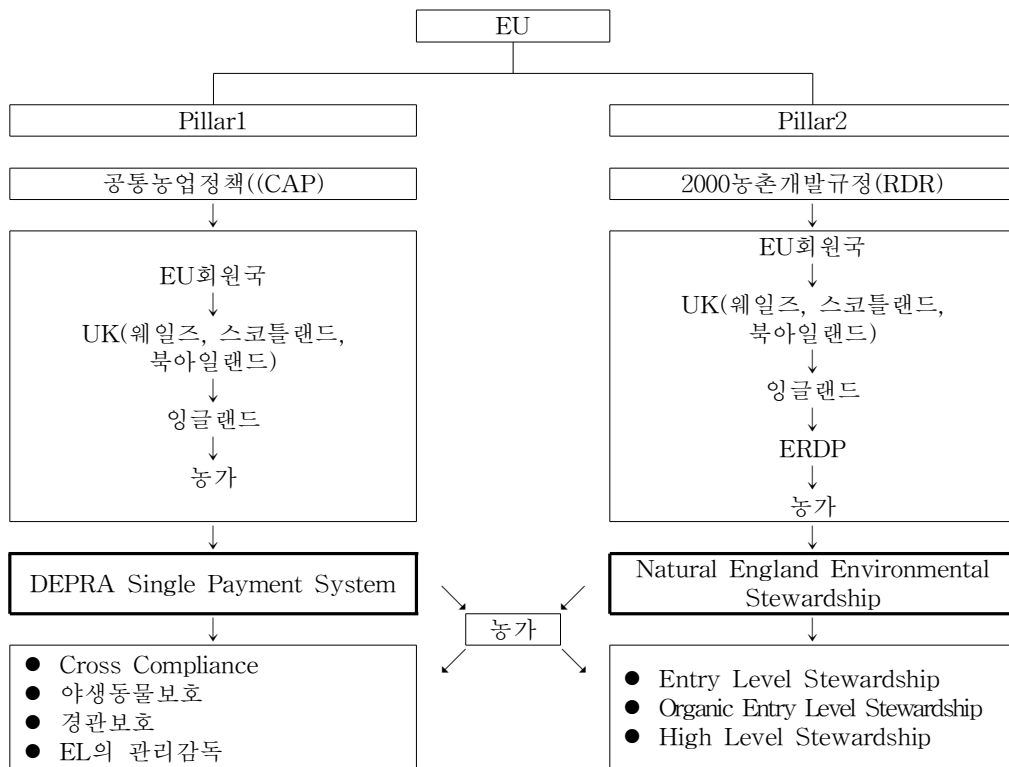
2. 영국의 현행 경관관련 정책체계와 주요 정책

가. 경관관련 체계

영국의 농촌경관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은 Pillar1과 Pillar2의 두 가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Pillar1은 EU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도로서 공동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시행 프로그램인 통합지불제(SPS : Single Paymen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Pillar2는 2000년 농촌개발규정(RDP : Rural Development Regulation)에 따라 도입된 영국 자체 정책으로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잉글랜드농촌개발프로그램(ERDP)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ES를 시행하고 있다.



주) DEFRA와 ERDP 두 기관 사이에는 정책조정이 이루어짐

<그림 4-2> 영국의 농촌경관 관련 정책체계

나. 주요정책

(1) 통합지불제(SPS ; Single Payment System)

Pillar1의 통합지불제는 EU규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역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농촌발전과 농촌 환경 및 경관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다.

SPS는 생산과 분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농업활동을 하는 모든 농민에게 적용되며 지원을 받는 농민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 SPS 외에도 다른 제도에 대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SPS 시책 내용 중 환경 및 경관과 관련된 내용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농업활동에 의한 중요한 경관요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야생동물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2) 환경관리제(ES ; Environmental Stewardship)

PillarII의 환경관리제(ES)는 영국 자체에서 수립한 농촌발전 정책인 ERDP의 주요 실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농촌환경과 경관을 통합적 체계 속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이 그 대상으로 농촌 경관의 자연미, 역사·문화, 야생 동·식물, 고요성(tranquillity)을 보전하고 농촌 레크레이션 및 농촌 고유의 매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환경관리제(ES)의 도입배경 및 기본방향

(1) 도입배경과 시행주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국의 농촌경관보전 및 관리에 대한 근간 정책은 1987년 친환경적 농촌보전 및 관리제도로써 Countryside Agency에서 시행한 전원보존프로그램인 ESA(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와 그 외 지역에 대해 1991년 시행된 CSS(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두 가지이다.

환경계약인 ESA와 CSS제도는 농부들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친환경적인

경작방식의 유지 등 특수한 방식으로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으로 이들 계약은 자발성에 근거하며 표준화된 계약을 통하여 공정한 보상수준이 적용 공급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 환경적 선택의 결정이 매우 중앙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며, 가능한 옵션의 범위가 강제적인 계약사항으로 요구조건이 명기되어 제약이 강하다.
- 둘째,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따라서 계약 만료된 이후에 농경지의 보전관리를 지속케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그동안의 시행 및 평가결과 기존의 ESA나 CSS가 농지의 환경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특정 지역 농민들에게 너무 높은 환경관리기준을 설정해왔다고 지적되었고 좀더 완화된 기준을 보다 넓은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경보전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후속관리 차원에서 EU의 계획에 따라 전국적 차원에서 적용하는 보조금 지원제도인 SPS에 대한 보완과 후속으로 지역적 경관 특성을 살려 다양한 경관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인 환경관리제(ES)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S의 도입주체는 DEFRA이지만 실질적으로 RDS(Rural Development Service)가 시행하였으며 2007년에 'Natural England'라는 통합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2) 기본방향

ES는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농촌경관의 보전·관리를 이루고자 하는 주된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ES의 기본방향의 주된 목적은 경관의 질 및 특성의 유지·강화, 역사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호,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보전, 농촌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에 대한 이해, 자연자원의 보호이며 유전적(genetic) 보전, 홍수 관리를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 환경관리제(ES)의 주요 내용

(1) 개요

ES는 농경지의 성격 및 자격요건에 따라 기초수준관리시책,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 상위수준관리지원시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조건에 대한 시책내용을 적용한다.

- ELS(Entry Level Stewardship) : 모든 농지 및 토지 소유자에게 개방, 시행이 간편, 효율적 토지관리 요구한다.
- OELS(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 ELS의 지원조건에 덧붙여 유기적 경영 및 관리를 요구²⁵⁾한다.
- HLS(Higher Level Stewardship) : 친환경적인 관리를 목표로 ELS나 OELS 조건을 만족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지역의 중요한 환경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기초수준관리시책(ELS)

ELS는 영국 전 지역의 모든 농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농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개방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지침서에 제시된 60가지의 토지경작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ha당 30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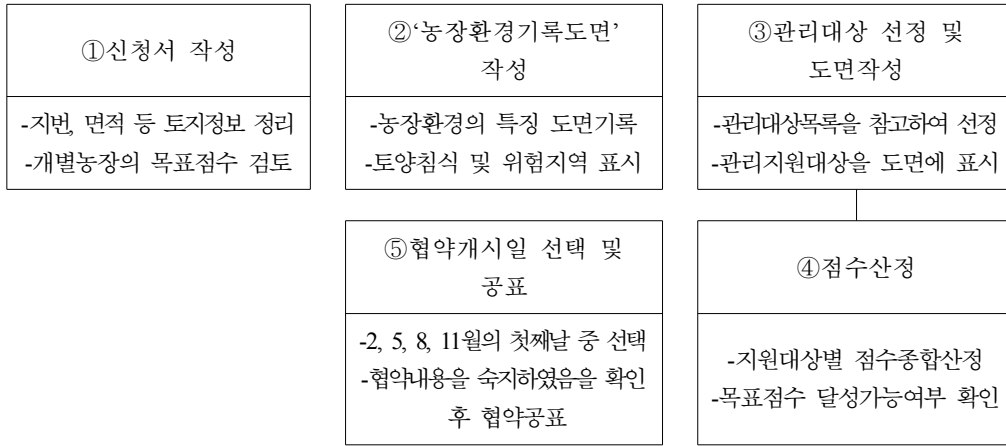
협약기간은 최소 5년이며 보조금은 ha당 연간 £30를 지급받지만 만약 소유 토지 중에 15ha 이상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금은 연간 £8로 감소한다. 보조금 지급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데 6개월 마다 1년치 계약 금액의 1/2을 지급하고, 협약안의 시행에 따른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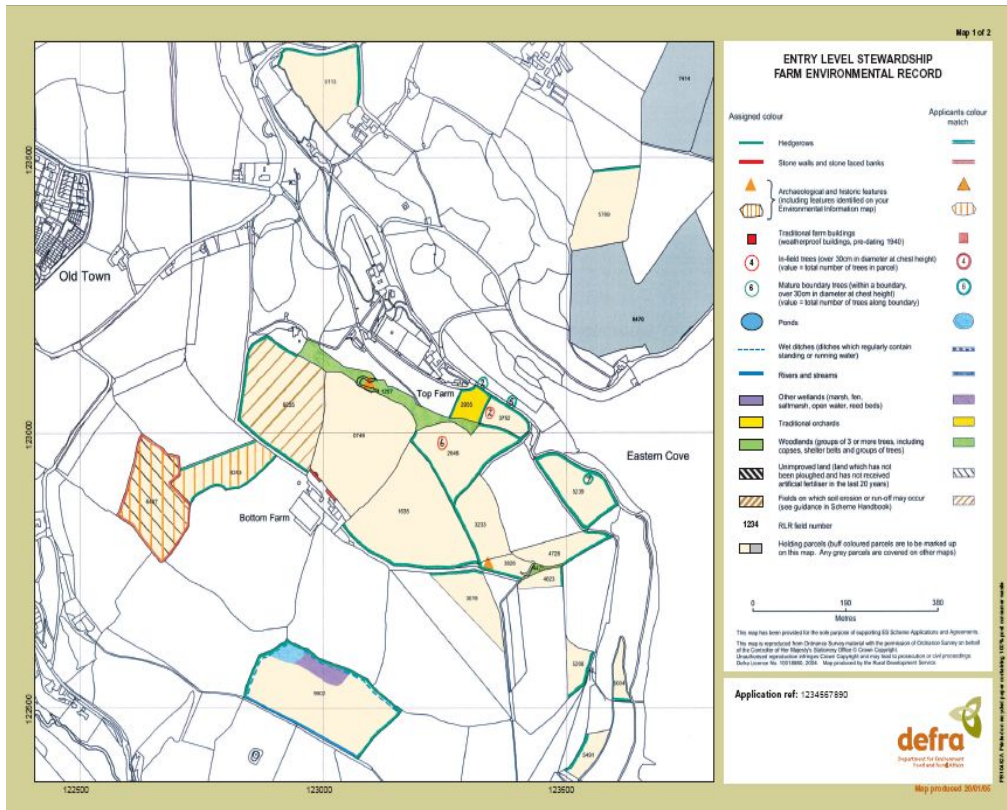
- ① ELS 토지와 OELS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해서 목표점을 설정
- ② 목표점 달성을 위해 협약항목 중에서 자신의 토지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
- ③ 신청서 제출 : 도면²⁶⁾(현황도면, 협약도면)

25) ELS와 OELS는 환경적 여건에 수준 차이가 없어 시책내용이 유사함

26)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ha당 3점을 추가



<그림 4-3> 기초수준관리시책(ELS) 신청 및 협약절차



<그림 4-4> ELS 신청에 따른 농장환경기록 도면 예시

(3)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OELS)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OELS)은 기존의 유기농지원시책(OFS)을 대체하는 것으로 유기농법을 채택하고 있거나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적용하는 시책이다. 이 경우 소유토지가 유기적 혹은 전통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ha당 60점을 충족해야한다. 유기적 토지인 경우 기본 3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5년으로 보조금은 연간 £60/ha이다. 전통적 농장경영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전환된 토지가 개량된 토지인 경우 2년 동안 £175/ha, 유실수원인 경우 3년 동안 £600/ha를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1년 단위로 6개월 마다 1년치 계약 금액의 1/2 지급하되 협약안의 시행에 따른 경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OELS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해서 목표점을 설정
- ② 목표점 달성을 위해 협약항목 중에서 자신의 토지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
- ③ 신청서 제출 : 도면²⁷⁾(현황도면, 협약도면), 유기적 토지 등록증명, 수행 일정

(4) 상위수준관리지원시책(Higher Level Stewardship : HLS)

상위수준관리시책(HLS)는 기존의 환경민감지역시책(ESA)에 적용되는 것처럼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환경적 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시책으로 ELS나 OELS에 가입된 토지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은 자유이지만 각 지역의 HLS미래상을 바탕으로 환경적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농장환경관리계획(Farm Environmental Plan)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농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토지의 환경적 가치 등에 따라 상이한데 면적이 6ha 이하인 경우 연간 총 £395를 지급하는 것부터 3,000ha 이상인 경우 연간 £3,350까지 기본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농민 각자의 협약에 따라 다르며 6개월 마다 지급한다.

협약기간은 10년으로 5년째에 해지가 가능하며 협약은 분기별로 하며 8.1, 11.1, 2.1, 5.1에 각각 협약이 개시된다.

HLS의 지원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HLS관리를 통한 토지의 긍정적 특성을 발휘 수 있는 농장환경계획(Farm Environment Plan : FEP)²⁸⁾을 수립하여 신청서 및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
- ② 농촌개발청 지도사의 상담 → RDS의 주요 평가 → 지도사가 방문하여 향후 10년간의 협약에 대한 구체적 동의 → FEP에서 수립한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항목에 대해 협의 → 협약서 서명
지원마감 : 등급에 관계없이 5.31, 7.31, 9.30, 12.31

27)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ha당 3점을 추가

28) FEP는 조사자나 용역사를 통하여 작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 환경관리제(ES) 경관관리지침

(1) 기초수준관리시책(ELS)과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ELS)의 경관관리 대상

ELS와 OELS의 농촌경관의 다양한 특성을 보전할 수 있는 10가지를 관리 대상²⁹⁾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4-3) ELS/OELS 관리대상 및 세부항목

구분	관리대상	세부항목 예
1	경계부 특성	생울타리 관리, 돌담유지, 도랑관리
2	수목과 산림	경작지, 초지, 휴경지내 수목
3	역사 경관 특성	경작물 외의 역사적 유적지 선정
4	선형완충지·가장자리	경작지와 휴경지의 2~4m 완충지
5	경작지	가울나기, 그루터기, 벌레서식 제방
6	곡류 잔존	초지에 씨앗과 화분, 화밀 등 잔존
7	토양 보호	침식위험의 경작지 관리 및 저감방안
8	LEF 외 저지대초지	관리되지 않는 토지의 모서리 부분
9	고지대:조건불지지역	황무지와 거친 초목지
10	관리계획	토양관리, 영양관리, 비료관리 등

29) 농민들이 신청서(경관관리 계획표)를 작성할 때 이 항목 중에서도 각 농장의 실정에 맞는 관리대상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점수계산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리대상의 세부항목에 대한 실행력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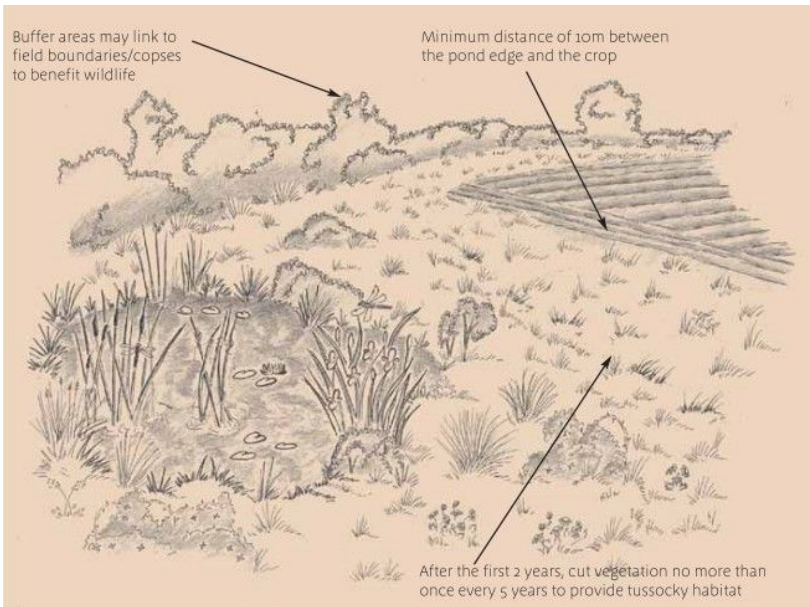
(표 4-4) ELS의 관리지침_생울타리

관리항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75 427 528 465">EB1</td> <td data-bbox="528 427 1002 465">생울타리 관리(양쪽면)</td> <td data-bbox="1002 427 1225 465">22점/100m</td> </tr> <tr> <td data-bbox="375 472 528 510">EB2</td> <td data-bbox="528 472 1002 510">생울타리 관리(한쪽면)</td> <td data-bbox="1002 472 1225 510">11점/100m</td> </tr> </table>	EB1	생울타리 관리(양쪽면)	22점/100m	EB2	생울타리 관리(한쪽면)	11점/100m
EB1	생울타리 관리(양쪽면)	22점/100m					
EB2	생울타리 관리(한쪽면)	11점/100m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관례적 높이(1.5m 이상), 높이와 폭이 불규칙한 것은 오히려 서식처로서 최상의 공간을 제공함 · 협약체결시는 1.5m이하여도 가능하나 추후 1.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산울타리 중심으로 2m 범위에서는 비료, 거름, 살충제 살포 금지 ·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같은 해에 모든 생울타리를 자르면 안됨, 생울타리 제방은 지역 고유방식으로 유지해야함 · 조류산란기인 3월 ~ 7월은 전정금지 · 생울타리 조성, 정기벌채는 3월 이전에 완료, 예외적인 부대작업은 3월말까지 가능(단, 4월1일은 조류 등지가 없는지 확인 조사하는 시기임) · 이미 수목이 조성된 곳은 수목사이로 생울타리가 자랄 수 있도록 어린 묘목을 남겨두어야 함(예: 지역경관 특성에 적합하게 수목간격을 200m이상 임의로 간격을 둠) <div data-bbox="411 1211 1193 1597" style="text-align: center;"> <p>Cut each hedge no more than once every two calendar years. Avoid cutting all hedges in the same year</p> <p>Hedge left uncut between 1 March and 31 August to protect nesting birds</p> <p>2m 2m</p> <p>Uncultivated land extending to 2m from the centre line of the hedge</p> </div>						


(표 4-5) ELS의 관리지침_돌담

관리항목	EB4	돌담 관리(양쪽면)	16점/100m
	EB5	돌담 관리(한쪽면)	8점/100m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중에는 돌담 훼손이나 수선으로 인해 원래 상태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야함 · 돌담길 통로/담은 기계나 가축이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함. 가축때문에 손상을 입은 경우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가축 통과를 방지해야 함 · 돌담에 있는 어떠한 돌도 원래 위치에서 옮겨서는 안됨 ·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서 돌담 위에 수목이 자라는 곳은 생울타리 선택조건 EB1, EB2 또는 EB3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음 · 조건으로 지정된 돌담 높이는 독의 꼭대기부터 측정함 · 모든 수선과 유지작업은 지역 경관 특성에 따라 원래 돌담 축조시 사용되었던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수로 준설물을 돌담에 던져서는 안됨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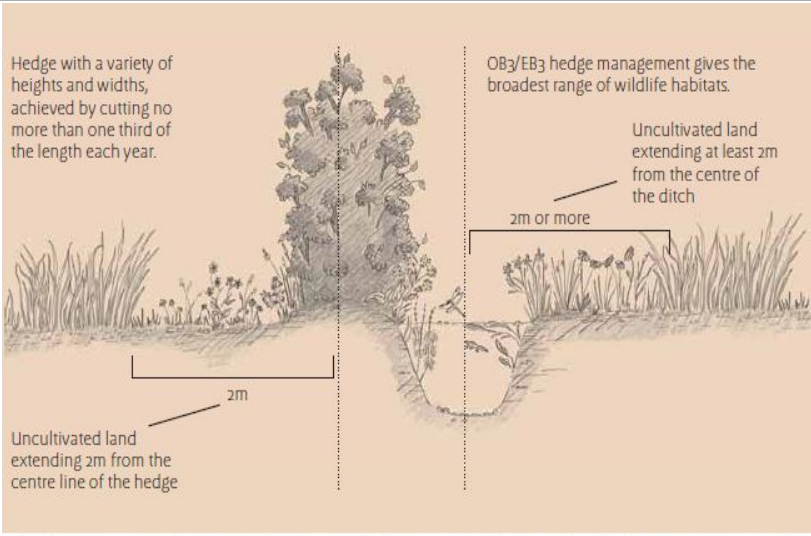
(표 4-6) ELS의 관리지침_완충연못

관리항목	EE7	개선된 영구초지내 완충연못	400점/ha
	EE8	개선된 경지내 완충연못	400점/ha
	OE7	유기적 초지내 완충연못	500점/ha
	OE8	윤작지내 완충연못	500점/ha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치(patch) 크기가 0.5ha 이상이 넘지 않아야 함 · 각 연못마다 폭은 최소 10m · 잡목지대의 개발을 허용하되 가장자리 폭의 절반 이하만 가능 · 비료나 거름 살포 금지 · 자연재생과 파종에 의한 완충지 조성 · 조성 후 1년에 5회 이상 벌초 금지 · 국소적인 제초제 사용 가능 		
			



(표 4-7) ELS의 관리지침_수로관리(Ditch management)

관리항목	EB6	수로관리(Ditch management)	240점/100m
관리지침			

(표 4-8) ELS의 관리지침_생울타리와 수로 관리

관리항목	EB8	생울타리와 수로 관리	38점/100m(EB1 울타리연장 선택권과 병합)
	EB9		26점/100m(EB2 울타리연장 선택권과 병합)
	EB10		56점/100m(EB2 울타리연장 강화 선택권과 병합)
관리지침			

(표 4-9) ELS의 관리지침_프리미엄 생울타리 관리 (울타리 양쪽)

관리항목	EB3	프리미엄 생울타리 관리(울타리 양쪽)	42점/100m
관리지침			
			

(표 4-10) ELS의 관리지침_돌담 보호와 유지관리

관리항목	EB11	돌담 보호와 유지관리	15점/100m
관리지침			

(2) 상위수준관리지원시책(Higher Level Stewardship : HLS)의
경관관리 대상

상위수준인 HLS는 기초수준관리시책(ELS)와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ELS)의 관리대상을 포함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HLS는 대상지의 지역환경 특성이 중시되므로 지형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14가지의 관리대상과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표 4-11) HLS 관리대상 및 세부항목

구분	관리대상	세부항목 예
1	생울타리	환경가치가 높은 생울타리 유지
2	수목림, 잡목지대	경지 및 집약초지 내 오래된 큰 나무
3	과수원	가치가 높은 전통과수원 유지·복원창조
4	역사적 환경	자연적 재생을 통한 경작지 복귀
5	경작지	주변 여유지를 초화류가 자라는 초지로 개선
6	자원보호	초지 비용사료 금지로 경작지 복귀
7	초지	준자연 초지의 우점종(優占種) 유지·복원창조
8	황무지, 고지대	황무지의 유지·복원창조
9	접근성	누구에게나 개방
10	저지대 heathland	저지대 히스가 자라는 지대 유지·복원
11	간조(Inter tidal) 연안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 유지·복원
12	습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연못 유지
13	추가사항	침입수종의 조절을 위한 추가
14	나머지 ELS, OELS 항목을 HLS에 포함	

HLS는 지원대상의 환경특성에 따라 승인 및 협의가 필요한 기관이 있으며 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농민이 실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기타 환경영향평가(비경작지와 준자연지역) 표준 2001과 환경영향평가(산림지역) 표준 1999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농가의 특성을 파악한다.

(표 4-12) HLS 협약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기관

환경적 특성	관련 기관
특별과학적 관심지역	Local English Nature
시대적 기념물	English Heritage의 기념물 관리부서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청이나 Internal Drainage Board
수목/ 산울타리 관련 작업	지방청의 Tree Office나 산림위원회
목록에 상정된 건물	지방청의 Conservation Office
보전지역	지역계획청
계획허가	지역계획청
국립공원	국립공원청

바. 영국 환경관리제(ES)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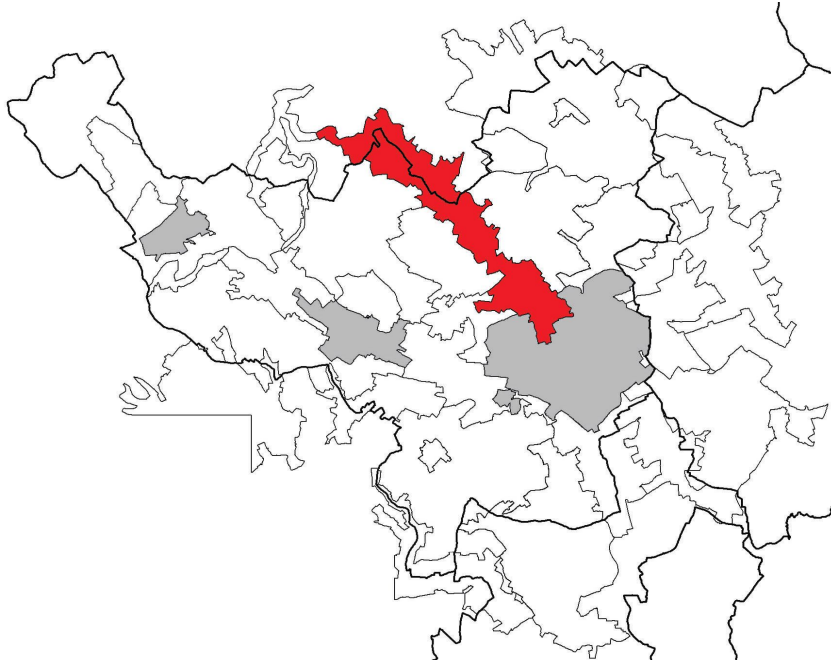
(1) 문제점 : 협약 농가의 의견

ESA나 CSS를 개선하여 ES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농민들은 신청절차 및 서식이 복잡하고 도면작성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10년간 신청한 협약내용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2) 시사점

영국은 농촌경관보전 및 형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의 체계적 근거를 구축하고 단계별 실질적 관리수법(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³⁰⁾ → The Character of England → Joint Character Assessment)을 제시하고 있다.

30) LCA에는 위치, 경관특성, 핵심 특성, 변별적 특징, 물리적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림 4-5> LCA의 경관특성구역도 예시(Dacorum Borough)

영국 ES는 농촌경관에 대한 종합적 - 다면적 접근방식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관보전직불제는 아직 단편적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S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역사문화 및 관광적 가치를 가진 다양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다양한 농촌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관직불제도 작물의 범위를 넘는 다양한 농촌경관자원에 대한 보존-발전-창출로 이어지는 경관관리계획을 추진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한 교육, 농촌관광 등 농촌발전계획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가 ES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관특성도는 작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상세경관에 대한 자료구축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농촌개발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농촌경관계획 및 농촌개발계획의 연계 Data Base로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도나 지침이 선언적 내용을 담은 추상적 준수사항보다는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 명시

적인 사항을 담아 참여농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관자원의 보존에 기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제3절 일본의 농촌경관 보전 정책

일본의 농촌경관 보전정책은 경작포기지 발생을 억제하고 다면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를 중심으로 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과 이 제도의 구체적 사업인 '자연환경보전재생 pilot사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

가. 도입배경

일본의 중산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지 등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경작 포기지가 증가하여 다면적 기능의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산간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년내에 2,000여개 마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중산간지역의 자원전체의 관리주체가 사라지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며 WTO 체제에 의해 글로벌화와 새로운 자유경쟁 단계로 들어섰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도 이제는 이러한 체제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 중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농정을 이제는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농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나. 도입경위

식료·농업·농촌 기본문제 조사회답신	98. 9월	제도 도입의 제언
↓		
농정개혁대강	98. 12	대상지역 등 제도의 틀 마련
↓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제도 검토회 보고	99. 8월	관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교부금 교부	2000	제도실시

다. 제도의 개요

(1) 목적

경작포기지 증가 등에 의해 다면적 기능의 저하가 특히 염려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 등에 대응하고 농가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 생산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해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지불(직접 지불교부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평성 17년도부터는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계속적인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체제 정비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대상지역과 농지

직접 지불 교부금의 교부 대상농용지는 1의 지역 진흥 입법중 2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 생산 조건이 불리하고, 경작포기지의 발생 염려가 큰 농진 농용지 구역(농업 진흥 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2항 제 1호에 정하는 농용지 구역) 내의 1 ha 이상의 면적을 가진 일단의 농지³¹⁾여야 한다.

31) • 일단의 농용지 : 농용지 면적이 1ha이상의 단지또는 영농상의 일체성을 가진 복수의 단지의 합계면적이 1ha이상일 것

(가) 대상지역 :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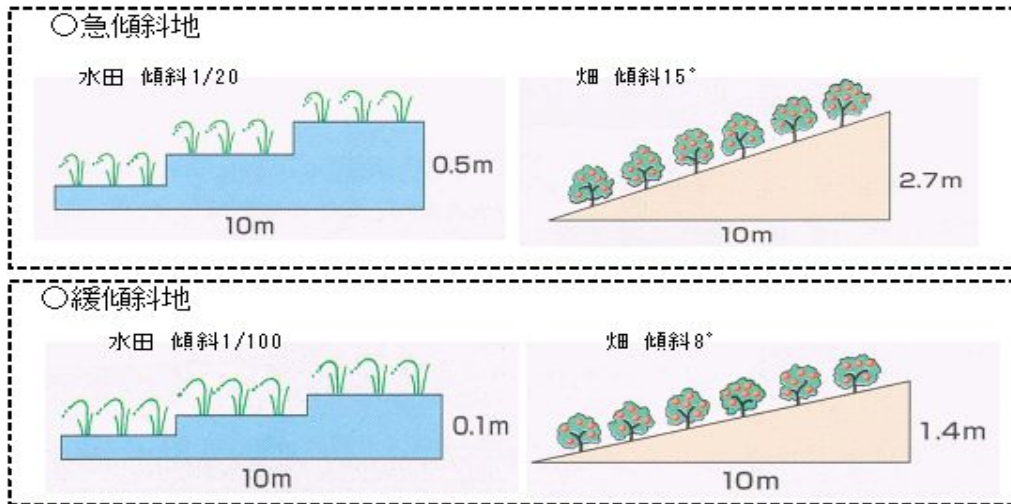
- ① 特定農山村法、山村振興法、過疎法、半島振興法、離島振興法 등의 地域振興立法에 의해 지정된 지역
- ② 지역실정에 따라 都道府縣知事が 지정한 조건불리지역(特認地域)

(나) 대상농지 (농업생산조건이 열악한 농지) 32)

- ① 급경사55지(논은20분의 1 이상, 밭 초원 채조방목지는 15도 이상)
- ② 자연조건에 의해 소구획·부정형인 논(대부분이 30a 미만으로 평균 20a 이하)
- ③ 초지비율이 높은(70% 이상) 지역의 초지
- ④ 시정촌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경우
 - 환경사농용지 : 논은 100분의 1 이상, 밭·초원·채초 방목지는 8도 이상
 - 고령화율(40% 이상)·경작포기율(논은 8% 이상, 밭은 15% 이상)이 높은 농지
- ⑤ 위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都道府縣知事が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特認基準農用地)

-
- 단지 : 하나의 농용지나 그 장소가 직접 또는 농도나 논두렁을 경계로서 인접하는 복수의 농용지의 것
 - 영농상의 일체성 : 단지간에 경작자 등이 중복하고 모든 경작자에 의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나 동일 생산조직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수로나 농도 등이 구성원 전원에게 의해 관리되어 있는 경우 등

32) 대상농용지의 기준은 급경사지는 논 : 경사 1/20이상, 밭 : 경사15도 이상, 환경사지는 논 : 경사1/100이상, 밭 : 경사 8도 이상, 그 외 소구획·부정형한 논이나 적산기운이 낮고 들 비율이 높은 들이다.



<그림 4-6> 중산간직불제 대상농용지 기준도

(3) 신청 및 결정 절차³³⁾

(촌락) ³⁴⁾		(행정)
협정내용의 교섭	←제시	행정의 기본방침의 책정
촌락협정의 체결	←지도	
촌락협정의 실천	신청→	협정체결의 지도
교부금의 수령	←인정	
공동대처활동으로의 충당	←확인	대상행위의 확인
협정참가자들에게의 배분	←교부	교부금의 교부

라. 협정의 내용

중산간지역등 직접지불제도는 대상농업용지에서 계속적인 농업생산을 행하는 농업자 등에 대해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제도로 협정에는 촌락협정과 개인협정이 있다.

33) 기본적으로 인정·확인 등은 각 행정기관과 촌락 사이에 이루어진다.

34) 여기서 말하는 '촌락'은 '일단의 농용지에 있어서 협정참가자의 합의하에 농업생산활동 등을 협력해서 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1) 촌락협정

촌락협정은 직접지불의 대상이 되는 농업용지에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행하는 복수의 농업자 등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농용지(상기를 참조)를 경작 하고 있는 농업자나 생산 조직 등이 협력하여 촌락의 미래상을 명확히 한 다음 적정한 농업 생산 활동 등 (농업 생산 활동, 수로나 농도의 유지·관리 활동, 경관 작물의 재배 등의 다면적 기능의 증진으로 연결되는 활동을 담당하는 농업자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체제 정비 등 지속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활동 등 (아래 표의 기준을 참조)을 5년간 계속해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 협정(시정촌장의 승인이 필요)이다.

취락 협정 활동으로 이행하여야 할 농업 생산 활동 등에 관한 기준

- ① 메뉴1(촌락의 미래상을 명확화하고 5년간 최저한의 농업생산활동을 이행하는 협정)

(표 4-13) 기초단가가 교부되는 조치: 필수요건(모든 협정에서 필수)

농업생산활동 등(필수사항)	
다면적기능을 증진하는 활동 (선택적필수사항)	
필수사항	1. 촌락마스터플랜 ³⁵⁾ 의 작성
	2. 경작포기방지 등의 활동
	3. 수로·농도 등의 관리활동
선택적 필수사항 (1이상을 선택)	1. 국토보전기능을 높이는 대처
	2. 보건휴양기능을 높이는 대처
	3. 자연생태계의보전에 도움되는 대처

35) 10~15년 후의 촌락의 미래상을 명확화해서 그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촌락의 조치 활동내용이나 스케줄을 협정참가자의 합의하에 평가하는 것이다.

- ② 메뉴2 (메뉴1의에 내용에 추가하여 협정기간 내에 자립적 또는 계속적인 농업생산활동체제 정비의 강화를 이행하는 협정)

(표 4-14) 체제정비단가가 교부되는 조치 : 선택요건(체제정비단가요건)

메뉴1의 내용에 추가하여
장래를 위한 농업생산활동 체제 정비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조치

필수 요건	1. 농업용지 등 보전 지도 ³⁶⁾ 의 작성		
	2. 농업용지 등 보전지도 활동의 실천 ³⁷⁾		
선택적 필수 요건 (A 또는 B를 선택)	A (2이상 선택)	[1] 생산상 수익향상 (1이상 선택)	1. 기계·농작업의공동화 2. 고부가가치형농업의 실천 3. 고장산농산물등의가공·판매
		[2] 책임자의 육성 (1이상 선택)	1. 신규지농자의 확보
			2. 인정농업자의 육성
			3. 책임자에게의 농지집적
			4. 책임자에게의 농작업의 의탁
		[3] 다면적 기능발휘 (1이상 선택)	1. 보건휴양기능을 살란 도시주민 등의 교류
	2.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등의 제휴		
3.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향한 비농가·다른 촌락			
B (1선택)	1. 촌락을 기초로 한 영농조직의 육성		
	2. 책임자의 집적화		

36)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말한다.

- 농지의 제방, 수로, 농도 등의 보수·개량이 필요한 범위, 또는 위치
- 조수해방지대책이 필요한 위치
- 기경작포기지의 복구또는 임지화를 실시하는 범위
- 농작업의 공동화, 또는 수위탁등이 필요한 범위
- 그외 장래에 걸쳐서 적정하게 협정농용지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범위

37) 농지의 제방, 수로, 농도 등의 보수, 개량, 조수해방지 대책, 기경작포기지의 복구 또는 임지화 등 활동

③ 메뉴3 (보다 적극적인 대치를 행한 협정)

(표 4-15) 가산조치와 관련된 조치 : 선택요건(가산조치)

메뉴1 또는 2에 추가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	
선택사항 (대치 내용에 따라 가산)	1. 규모 확대 가산 (계속실시) 책임자가 새롭게 이용권 등을 설정한 농지를 5년간 이상 계속하여 경작
	2. 토지이용조정가산 책임자에 대해서 새롭게 협정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에 이용권 등을 설정
	3. 경작포기지 복구가산 새롭게 협정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경작포기지를 복구
	4. 법인설립 가산 새롭게 특정농업법인 또는 협정농용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상으로 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

주1. 규모확대가산과 토지이용 조정가산은 중복해서 수급하지 못한다.

주2. 동일 농용지의 대상으로 특정농업법인에 관계되는 가산과 농업생산법인의 관계되는 가산을 중복해서 수급하지 못한다.

(2) 개별협정

개별협정이란 인정 농업자, 인정 농업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정촌장이 인정한 사람, 제3섹터, 특정 농업 법인, 농협 및 생산 조직 등이 이용권 설정이나 농사일수위탁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대상 농지를 맡아 농업 생산 활동 등을 5년간 계속해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 협정을 말한다.

(3) 4협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대상자

촌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따라 5년간 이상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농업생산 활동 등이 협정의 대상 활동이 되며 촌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따라 5년간 이상 계속해서 이행하는 농업자, 제3섹터, 생산조직 등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을 가진다.

마. 교부단가

교부단가는 협정을 기초로 한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즉, 메뉴1만 실시하는 경우는 기초단가가, 메뉴1+메뉴2를 실시하는 경우는 체제정비단가가, 메뉴3을 실시하는 경우는 위의 두 가지에 더해져 가산단가가 교부된다.

교부단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4-16) 교부단가1 (10a당)

지목	구분	기초단가	체제정비단가
논	급경사	16,80엔	21,000엔
	완경사	6,400엔	8,000엔
밭	급경사	9,200엔	11,500엔
	완경사	2,800엔	3,500엔
들판	급경사	8,400엔	10,500엔
	완경사	2,400엔	3,000엔
	들의 비율이 높은 들	1,200엔	1,500엔
재초방목지	급경사	800엔	1,000엔
	완경사	240엔	300엔

(표 4-17) 교부단가2 (10a당)

규모확대가산	논	1,500엔
	밭	500엔
	들판	500엔
토지이용조정가산	논	500엔
※요건을 채우는 협정전체의 농지에 가산	밭	500엔
경작포기복구가산	논	1,500엔
	밭	500엔
	들판	500엔
법인설립가산	논	1,000엔
(특정농업법인)	밭	750엔
※1법인100천엔/년을 상한으로서, 협정의 대해서 교부	들판	750엔
법인설립가산	논	600엔
(농업생산법인)	밭	500엔
※1법인60천엔/년을 상한으로서, 협정의 대해서 교부	들판	500엔
	재초방목지	500엔

교부단가에 대한 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초단가’는 5년간 이상 계속해서 적정한 농업생산활동 등에 전념한 경우의 단가를 말한다.
- ‘체제정비단가’는, 적정한 농업생산활동 등에 추가해서 기계/ 농작업의 공동화 등의 농업생산활동 등을 계속 유지한 경우의 단가를 말한다.
- ‘규모확대가산’은 책임자가 새롭게 이용권 등을 설정한 농용지를 5년간 이상 경작할 경우의 가산조치를 말한다.
- ‘토지이용조정가산’은 책임자에 대해 협정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서 새롭게 이용권 등을 설정할 경우의 가산조치를 말한다.
- ‘경작포기복구가산’은 협정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서 경작포기지를 복구할 경우의 가산조치를 말한다.
- ‘법인설립가산’은 새롭게 특정농업법인 또는 협정농용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대상으로 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할 경우의 가산조치를 말한다.

또한 중복수급의 제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소구획·부정형한 논, 고령화율·경작포기율이 높은 농지에 대해서는 환경사의 단가와 같은 가격을 적용
- 농업자당 교부상한은 100만엔이며 다만 생산조직, 제3섹타 등은 적용 제외
- 규모확대가산과 토지이용 조정가산은 중복해서 수급하지 못함
- 동일 농지를 대상으로 특정농업법인에 관계되는 가산과 농업생산법인에 관계되는 가산을 중복해서 수급하지 못함

바. 역할 분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정촌은 대상농지 지정, 촌락협정과 개별협정의 인정, 교부금의 교부 등 사무를 맡고 도도부현 및 정부는 중립적인 심사기관설치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사. 기간

실시기간은 평성 17년(2005)부터 평성 21년(2009)까지 5년간 한시 사업이지만 중산간지역 농업을 둘러싼 제 정세의 변화, 협정에 의한 목표 달성을 향한 노력을 반영한 농용지의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실시 상황 등을 근거로 해 제도 전체의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시 기간중이라도 농업 수익의 향상 등에 의해 대상 지역에서의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부금 교부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 촌락에 대해서는 담당 농업자가 취락의 핵심으로 정착하는 것 등에 의해 교부금의 교부가 없어도 취락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 활동의 지속이 가능해져 경작 포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별 농업자에 대해서는 농업 소득이 도시지역 근로자(동일 도도부현 내)의 평균소득을 웃도는 경우

자.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제도의 실시상황(평성20년)³⁸⁾

2008년도 기준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 교부금을 교부한 행정구역마을은 전국에서 1,028마을, 北陸 지방에서는 67마을(니이가타현 22, 토야마현 12, 이시카와현 16, 후쿠이현 17)이다.

이것은 대상 농용지를 가진 전국 1,116 마을의 92.1%, 北陸에서는 68 마을 중 98.6% 로 되어있고 전국 평균보다도 7% point가 높다.

(표 4-18) 실시 행정구역마을수

		평성 19년도	평성20년도	증감(비율)
교부시정촌수(1)	전국	1,038	1,028	△10(△1.0%)
	北陸	70	67	△3(4.3%)
대상시정촌수(2)	전국	1,128	1,116	△12(△1.1%)
	北陸	71	68	△3(△4.2%)
1/2	전국	92.0%	92.1%	0.1 point
	北陸	98.6%	98.6%	0.0 point

주: 평성20년도의 행정구역수는 H(평성) 21년3월말 현재

주: 평성19년도의 '교부 행정마을수'는 19년도에 교부한 행정구역마을로써 도도부현에서 보고가 있었던 행정마을수로 H(평성)20년3월 말 현재

주: 평성19년도의 '대상 마을수'는, 19년도에 교부대상이 되는 농용지를 가진 마을로써 도도부현에서 보고가 있었던 마을수로, 평성20년 3월 말 현재

협정수를 보면 2008년 말 현재 촌락협정³⁹⁾수는 2007년보다 46협정 증가한 28,299협정이며 개별협정수는3협정 증가한 458협정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교부금이 교부된 면적은 66만4천ha, 北陸에서는 2만7천ha(니이가타현 16,319ha, 토야마현 4,611ha, 이시카와현 3,458ha, 후쿠이현 2,290ha)이다. 교부면적율(대상농업지면적에 대한 교부금교부면적의 비율)은 전국 82.1%, 北陸 79.1%이며 전국평균에 3% point 낮지만 도도부현의 평균보다 4% point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8) 2008년도 기준, 자료 : 호쿠리쿠(北陸) 농정국(평성 21년 6월 16일)

39) 교부금 교부면적 중 기초단가가 교부된 면적은 13만7천ha, 체제정비단가가 교부된 면적은 52만8천ha이며 또, 교부금교부면적에 대한 체제정비단가의 교부면적의 비율은 전국이 79.4%, 北陸은 73.5%로 나타났다.

중산간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기경작포기지의 관리상황을 보면 전국 166ha, 北陸 11ha(니이가타현 7ha, 토야마현 2ha, 이시카와현 1ha 후쿠이현 2ha)의 기경작포기지에 대한 복구가 계획되어 2008년까지 전국에서 84ha, 北陸에서는 7ha가 복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실제로 자연재해를 받고 있는 농용지의 복구는 전국 786ha, 北陸 528ha (니이가타현 479ha, 토야마현 23ha, 이시카와현 16ha, 후쿠이현 9ha)의 복구가 계획되어 2008년도까지 전국에서 720ha, 北陸에서는 489ha(니이가타현 479ha, 토야마현 2ha, 후쿠이현 8ha)이 복구되었다. 기경작포기지 및 한계적 농지의 임지화를 보면 전국 53ha, 北陸 4ha(니이가타현2ha, 후쿠이현 2ha)의 임지화 계획중 2008년도까지 전국에서 19ha, 北陸에서 1ha이 임지화되는 실적을 거두었다.

차. 시사점

중산간직불제는 단순한 보상적 차원의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경작포기지의 복구 등 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경작포기지 복구(전국에서 84ha, 北陸 7ha)
- 자연재해 농지 복구(전국 720ha, 北陸 489ha)
- 기경작포기지 및 한계적 농지의 임지화(전국 19ha, 北陸 1ha)

北陸 지방의 촌락협정 내용을 보면 제도의 실시 목적 중의 하나인 농지의 다면적 기능을 증진하는 활동 협약 내용 중에는 주변 임지의 풀베기(65.0%) 등 비교적 단순한 활동 위주로 되어 있으며 경관작물의 재배는 36.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기간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으로 정하였지만 중산간 지역 농업 환경의 변화와 목표 달성도 등 농지의 유지·관리 전체적인 실시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시정촌이 대상농지 지정, 촌락협정과 개별협정의 인정, 교부금의 교부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도도부현 및 정부는 중립적인 심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2.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

가. 배경과 목적

일본은平成18(2006)년 4월, 「21세기 신농정2006」에 의한 「일어서는 농산어촌」 유식자회의 제안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향한 활동의 참가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농산어촌의 경관이나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기르고, 지역 독자적인 창의 연구 활동에 의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합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경관 자연환경의 보전 형성 등을 향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또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관련 사업을 통합해서平成19(2007)년도부터 새롭게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나. 사업내용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중점 내용으로 한다.

- 농촌자연환경의 보전 재생 : 양호한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 재생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추진상의 과제에 대해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해결방책의 검토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 농촌경관이나 자연환경과 같은 지역 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공간으로 살려 농촌의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력에 있는 전원공간으로서의 요건의 검토, 활성화에 의욕이 있는 지구의 등록, 전국의 선진지구의 사례를 살린 가꾼 식견을 살린 가이드의 작성이나 보급·계몽 활동을 한다.
- 농촌경관형성, 자연재생활동은 하는 조직에 대한 직접지원 : 농촌경관의 보전 형성, 자연환경의 재생을 향한 조사연구, 보전활동 등을 하는 NPO 등의 활동조직에 대해 직접지원하며, 공모방식에 의한 NPO 등 직접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다. 사업실시주체 등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은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통촌환경과·농지자원과에서 주관하며 민간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된다.

지원금 보조율은 정액으로 사업의 1/2 이내로 하고 사업실시 기간은 평성19년도 ~ 평성21(2009)년도까지이며 평성21년도의 예산규모는 개산결정액(평성20년도 예산액)으로 151,578(183,300)천엔이다.

3.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 중 농촌경관 ‘자연환경보전재생 pilot사업’

가. 배경과 목적

농촌지역 경관·자연환경의 보전 형성 등을 위한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단식 논이나 농업용수로의 보전 등을 위한 경관형성, 동식물의 조사나 습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 재생 기여활동을 하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평성10년 법률 제7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등에 대해 직접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나. 대상활동

이 사업의 대상활동은 농촌특유의 양호한 경관형성의 촉진 및 농촌의 자연환경의 보전·재생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구체적 활동내용은 신청단체가 제출한 응모신청서를 심사해서 결정한다.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는 파이럿사업 공모세칙에 공지하고 있다.

Pilot사업 대상

- 농촌 특유의 양호한 경관 형성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활동
- 농촌의 풍부한 자연 환경의 보전·재생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활동으로서 구체적 인 사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라도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대상이 됨

다. 대상지역

이 사업의 주된 대상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소화44년 법률 제 58호) 제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한 농촌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 (1) 경관법 (평성16년 법률 제110호) 제5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한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구역
- (2) 전원환경정비 마스터플랜(「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농업농촌정비사업 등 기본요강」(평성14년2월14일부 13농진 제2512호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통지) 제1에 규정하는 전원환경정비 마스터플랜을 한다.)에 의거해서 설정된 환경창조구역 또는 환경배려구역

라. 대상단체

이 사업이 신청 및 지원대상은 NPO법인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이고, 지방농정국장(홋카이도 : 농림수산상 농촌진흥국장, 오키나와현 : 내각부 오키나와총합사무국장. 이하 같음)이 심사기준에 따라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재무상황,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해서, 사업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 조성금액과 회계

사업 조성금은 150만엔 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된 조성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다만 조성대상 경비는 1로 결정된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조성대상 단체의 통상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성대상 활동에 필요한 무상노무비를 조성대상 경비의 조성대상 단체 부담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A < B/2$ 의 경우는, $B/2$ 의 금액
- (2) $B/2 \leq A \leq B$ 의 경우는, A 의 금액
- (3) $B < A$ 의 경우는, B 의 금액

- A. 무상노무비(최저임금법:소화34년 법률 제137호) 제16조에 의거해서 정해진 지역별 최저임금액에 활동에 사용한 무상노무 총시간 인수를 곱한 금액)
- B. 조성대상경비에서 무상노무비를 뺀 금액

6) 응모방법과 심사 등 절차

응모신청단체의 대표자는 공모세칙에 첨부된 응모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공모세칙에서 정한 기일까지 사단법인 농촌환경정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는 사전심사 - 본심사이 단계를 거쳐 대상자에게 통지된다. 사전심사는 응모신청자가 제출한 응모신청서에 대해서는 센터가 사전심사를 실시 또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응모신청자에 대해서 전자메일, 전화 등에 의한 문의를 할 수 있다. 본 심사는 지방농정국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응모신청서를 심사. 이 심사결과에 입각해서 사업채택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7) 기타

사업기간은 단 년도 사업으로 조성대상자는 지방농정국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공모세칙에 정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실시상황에 대해서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농촌경관직불제 실태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점에서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의 경관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농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한 결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마을경관 개선, 마을주민화합, 방문객 증가, 소득 증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관보전직불제가 마을 경관형성을 통한 농촌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어 방문객 증가와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증대 등 관련 파급효과에 기여함으로써 농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농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관작물 재배방식이 개인별 재배·관리보다는 마을 공동작업을 통해 재배·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재배관리 방식으로 인해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통해 농촌마을 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주된 참여이유가 대부분 경관직불제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유와 요청, 친환경농작물 사용과 사료조달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가 당초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는 일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과 방향,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민이 협약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을경관보전협약서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및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응답 농민 및 담당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금액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경관

보전직불제의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와 노동비를 지원 금액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물별 지원 금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경관작물의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경관의 효과가 큰 작물의 생산비는 평균 178,580원으로 산출되었고, 그 중에서 유채가 227,218원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관작물 2의 생산비 산출결과는 평균 111,517원으로 산출되었고, 그 중에서 호밀이 16,022원으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참여여부를 질문한 결과 절대 다수가 '다시 참여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에는 불만족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참여 농가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밖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파악한 결과, 마을경관협약 이행상황 및 마을활동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 행정업무절차에 대한 시행지침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홍보 및 사업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경관보전직불제 우수지역 방문과 재배교육 등의 연수를 통해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경관보전직불금으로 면적의 5%이내에서 마을 내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끝으로 마을 현장조사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협약일자 미기재, 사인 누락 등 협약서 작성 및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AgriX의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담당공무원의 활용능력에도 문제가 있어 AgriX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외국사례조사 결과

영국과 일본의 경우, 작물 위주가 아니라 개울, 생울타리, 돌담 등 다양한 농촌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농촌경관을 유지, 보전해나가고 있다.

영국은 생울타리 기준 초지면적, 적정시기, 간격 등 세부적인 관리항목과 지침 등을 통해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도 보조금 사용

가능항목 및 인력 조달 등 참여 농가가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 안내서인 가이드북을 통해 제도를 소개하고 계약에 따른 지침서 및 관리 메뉴얼로서 핸드북을 상시 활용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ES는 경관작물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라기 보다는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관리제도이며 일본의 경우도 중산간직불제와 별도로 농촌경관보전을 위한 마을 공동활동 노력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농업부문에 대한 경관관리 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경관보전 직불제 관련 정책은 단계적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영국의 ES는 쉽고 적은 보조금(ELS)에서 복잡하고 많은 보조금(HLS)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농경지의 성격 및 자격요건에 따라 기초수준관리시책,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 상위수준관리지원시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ELS(Entry Level Stewardship) : 모든 농지 및 토지 소유자에게 개방, 시행이 간편, 효율적 토지관리 요구한다.
- OELS(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 ELS의 지원조건에 덧붙여 유기적 경영 및 관리를 요구한다.
- HLS(Higher Level Stewardship) : 친환경적인 관리를 목표로 ELS나 OELS 조건을 만족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지역의 중요한 환경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들은 농촌환경과 경관을 통합적 체계속에서 관리한다. 일본의 농촌경관관리정책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경관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산간지역직불제 협정체결 등이 있으며, 농촌경관 자연환경의 보전 형성 등을 위한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관련 사업을 통합해서 '경관·자연환경보전 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경관·자연환경의 보전 형성 등을 위한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단식 논이나 농업용수로의 보전 등에 위한 경관형성, 동식물의 조사나 습지의 조성 등에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 재생 기여활동을 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등을 지원하는 '자연환경보전재생 pilot사업'이 있다.

제2절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개선사항

1.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검토

농촌경관직불제는 농업경관(경작지경관, 농업생산시설경관), 자연경관(자연도입경관, 자연생태경관), 생활경관(건축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및 농어촌경관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조사결과 현재 경관보전직불제를 작물대체 경관작물에 대한 소득보전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관보전직불금은 WTO농업협정상 허용범위를 지켜야 하고, 현실적으로 경관보전시책 추진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경관보전직불제는 WTO농업협정상 허용보조(Green Box)로서 환경계획에 따른 직불에 해당되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을 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또한 지불금액은 정부의 계획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경관작물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작물이 경관보전 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재배목적이 불확실할 경우 주관적 판단으로 제외할 경우 농가의 불만 야기가 우려된다. 또한 기존에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여 지원받던 농가가 탈락할 경우 행정 신뢰도 저하 등 문제 소지가 있다.

현재 경관작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청보리를 비롯한 밀, 호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초화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관작물의 범위와 분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농촌경관 증진을 위한 활동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검토

2009년부터는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해 ha당 30만원씩 지급되는데 현지 확인결과 이 비용지급의 대상이 되는 활동과 사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해석이 분분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마을 활동비 용도의 다양화 측면에서 활동비의 30% 범위내에서 경관작물 재배 소요 인건비, 전문가 컨설팅비, 체험활동 보험료·공과금 등으로 활용을 확대하되 다만, 현행과 같이 위원회 인건비, 마을 여행경비 등으로의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을경관활동비 집행은 위원회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 시·군에서 항목별로 직접 집행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구별로 경관자원의 형성 및 유지, 개발 내용이 다양하다. 특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 지구에 포함된 마을은 그 지역의 독특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원두막, 마을 전통쉼터, 마을숲 정비, 마을경관 정비, 전통돌담정비, 전망대 설치, 마을유래비, 사과공원 조성, 전래놀이 체험공원, 제방 산책로, 솔숲 휴게공간 등의 다양한 경관자원을 개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는 지역마다 유지·보수해야 할 경관자원이 차이가 있으므로 직불제 신청 전에 마을경관 자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향후 모니터링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농림부 2008년 11월 경관보전직불제 홍보 및 사업설명회 자료집에서 예시된 ‘경관보전활동 유형별 범위(예시)’처럼 마을경관보전활동비의 대상 활동 및 사용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표 5-1) 경관보전활동 유형별 범위(예시)

협약방식	활동구분	활동내용	활동범위 등
마을경관 보전계획 (S/W)	개인 활동	경관작물재배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 따라 경관작물 재배관리
	마을 공동 활동	수로변경관관리	마을 및 경관작물 재배지 주변 용배수로 정비관리(퇴적토제거, 수초제거, 사면보호)
		마을팻말설치	마을안내판 및 체험, 관광에 필요한 표지
		하천주변경관	홍수위 이상 부지를 활용한 경관수 및 화초 재배관리, 하천내 오물내 오물제거 및 정화활동
		마을숲정리	공원 및 숲의 전정, 병충해방제, 경관수식재 등
		향토문화재관리	마을의 역사성 있는 장승, 성황당, 고목, 전망대,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재료구입 등
시설경관 (H/W)	개인 활동	농촌주택경관	전체적인 리모델링, 지붕교체 미춘색, 벽면교체 및 도색, 대문교체 및 도색 등
		창고관리	리모델링, 지붕교체 및 도색, 벽면 교체 및 도색, 차폐수목 식재 등
		축사관리	리모델링, 지붕교체 및 도색, 벽면 교체 및 도색, 차폐수목 식재 등
	마을 공동 활동	커뮤니티시설	회관, 노인정의 리모델링 및 지붕, 벽면 교체 및 도색 등
		공동체험시설	마을공동 체험 또는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및 지붕벽면 교체, 도색 등
		담장경관	기존담을 헐고 생울타리 조성이나, 전통담장(돌담, 흙담)의 설치 또는 보수 등

출처: 농림부, 2008.

3. 경관작물의 재분류와 지원금 형평성 유지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휴경지를 활용한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관직불제 참여농가에 대한 인터뷰와 마을 조사결과, 축산을 겸업하거나 사료작물로 판매를 통하여 소득증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경관작물로서의 사료작물 재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관보전직불제는 WTO농업협정상 허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경관보전을 실현해야 하므로 경관작물로서의 사료작물의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수 경관작물의 경우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단가의 차등화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분류방식인 동계, 하계의 구분보다는 꽃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다른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작물을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단가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있다.

4.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이 예산배정과 사업시행지침 하달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시도, 시군, 읍면 공무원들이 지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상이하여 지역별로 적용기준 등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새로운 경관작물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공무원이나 참여농가가 작물재배 및 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매년 경관작물 재배 신청 전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난해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침해설 및 신규 경관작물 재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식정보의 습득과 정보교류를 통해 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거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실사 결과, 참여농가나 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경관작물에 대한 재배, 관리 등 전반에 걸친 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기존 경관작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경관작물과 경관작물로서 도입이 가능한 작물군에 대하여도 매뉴얼을 추가

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경관직불제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콘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경관직불제 참여 농가의 참여동기를 유발하여 농촌경관보전활동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활동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농촌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오는 홍보 기회로 활용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5.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정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

영국 ES이 경우, 관련 선택사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좋은 농장 실천의 기준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신청서 양식이나 계획과 관련한 다른 문서에 주어진 정보에 거짓이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불된 지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허위 등으로 기재할 경우 계약효력 상실, 지원된 모든 보조금의 회수 그리고 특정 농촌 개발 프로그램(ERDP)에서의 배제 등의 페널티가 향후 2년간 적용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감액기준으로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감액, 생육 및 개화불량 면적이 30%를 초과할 경우 10%감액, 필지규모가 0.5ha 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10%감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실사 결과 필지별 배수로 문제는 농업기술상의 문제로 별도 감액 규정 없이도 전체 경관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토지 상황에 적합하게 농가가 설치할 것이고 굳이 필지별 배수로는 필요 없는 경우는 토지상 규모에 맞추어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맡겨두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정, 부당수급의 경우 2 ~ 5년간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상호 서명으로 협약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사업에 의한 농지임대의 경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임차인의 책임이 없고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⁴⁰⁾ 또는

40) 수해, 풍해, 설해, 냉해, 우박, 해일, 산사태 등으로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거나 농작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농가별 농작물피해 조사대장에 임차농지의 필지별 피해율이 30%에서 80%인 경우는 임차료를 감면하여 주고 80%이상인 경우 100%감면하여 주고 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차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위의 경우처럼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농촌경관 자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계한 사업지구 선정

효과적인 농촌경관의 형성과 이를 통한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농촌 경관요소와 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조사된 경관 자원 목록과 도면은 평가를 거쳐 경관보전직불제 지구 선정에서 우선 순위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다.

경관사업 대상지구 선정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관법 시행령(2008)에서와 비슷하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항목으로 1)자연적 여건, 2)인문·사회적 여건, 3)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사업지구 필지도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국의 ELS신청서처럼 대상 토지에 대한 경관요소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도면에 표시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어메니티자원도’, 농촌경관맵’ 등 지역별 농촌경관 특성을 반영한 도면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도면들간의 위계나 내용적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실제 이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국과 같이 경관특성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촌경관 관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경관법·경관조례 등을 통한 협치(Governance)형 농촌경관보전 추진

경관보전직불제는 일본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농촌경관보전과 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협치형, 상향식 농촌경관보전활동 정립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는 물론 경관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립된 경관계획 자체도 가로경관,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주로 도시경관에 한정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특정경관계획인 농촌경관계획에 대한 수립과 이에 기반한 연관 계획으로서 경관보전직불제가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농촌경관 요소와 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주민의 실질적 참여방안에 대한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관·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처럼 마을경관조사, 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주민조직 참여, 지역NGO 등과 연계한 농촌경관보전활동 추진 등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촌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참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8.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강화를 위해, 영국의 경우와 같이 협약지원 절차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지속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협약시기는 분기별로 이루어지지만, 지원마감 및 협약시작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원마감 시기는 동계의 경우는 8월 31일에 하계의 경우는 1월 31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모니터링 및 평가 시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영국의 ES에서 사업 신청서에 대상지 경관상세도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처럼, 해당 지구의 경관보전활동 계획을 다양한 색과 코드화를 통해 신청대상지 주변의 지적도에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경관상세도 작성은 농민에게 다소 어려운 작업과정일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작성이 가능한 매뉴얼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관자원 조사와 상세도 작성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마을경관활동비 등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결과의 적용방안

1. 단가 적용 방안-4개의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참여농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의 생산비 조사결과의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지급단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1안 :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보전 지원 단가(생산비 기준)

- 개념 : WTO규정에 부합되는 경관작물재배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단가
- 산출기준 : 추가적 비용은 자가노동 기회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생산비개념으로 접근하여 산출, 생산비는 수확, 포장, 운반, 판매비용등을 제외한 주산물 비 판매시의 생산비로 산출(농지임차료는 생산비에서 제외)
- 지급단가: 경관작물 유형1 ⇒ 170만원/ha, 경관작물 유형2 ⇒ 100만원/ha

나. 2안 :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지원 단가(경영비 기준)

- 개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중 마을경관보전활동비용에서 마을주민의 직접인건비성 경비는 지원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기준하여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경영비 개념으로 지원 단가를 산출
- 산출기준 : 경관작물별 생산비 중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경영비를 보전, 농지임차료는 제외
- 지급단가 : 경관작물 유형1 ⇒ 150만원/ha, 경관작물 유형2 ⇒ 95만원/ha

다. 3안 : 농지임차료를 포함한 지원 단가

- 개념 : 대부분의 경관작물재배 농가는 자기 소유농지를 이용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재재농가 소유농지의 기회비용도 보전하여 주는 개념으로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준 : 생산비에 농지임차료를 포함하여 산정
- 지급단가 : 경관작물 유형1 \Rightarrow 250만원/ha, 경관작물 유형2 \Rightarrow 200만원/ha

라. 4안 : 소득 발생작물에 대한 지원 단가

- 개념 : 현행 경관작물 중에는 농가판매 작물과 비판매작물이 혼재되어 재배되고 있으므로 소득을 기준하여 판매에 의한 소득 발생 작물과 비판매에 의한 비소득작물로 구분하여 지원단가를 산정
- 산출기준 : (경영비+자가노력비) - 소득 = 지원단가
- 대상 소득 작물 : 청보리, 유채, 메밀, 밀, 보리, 호밀
- 지급단가 : 소득작물 \Rightarrow 80만원/ha
- * $(180,401\text{원}+43,059\text{원})- 144,020\text{원} = 79,440\text{원}/10a,$

2. 정책상 적용방안

이 연구에서 수행한 농가, 담당공무원 인터뷰 및 마을 조사, 경관작물 생산비 조사 및 국외 사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농촌경관직불제에 발전적으로 적용키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사업시행 지침상의 적용방안

구분	지침서 내용	평가실태	발전방안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목적은 경관작물재배와 마을 경관보전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농가가 농촌경관을 위한 목적보다는 소득증대 및 사료작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을 “농촌경관의 정비와 증진, 자연자원 보호,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이해와 접근성 증진, 홍수관리”로 전환. - 위와 같이 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가 단순히 작물재배가 아닌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있음을 인식. - WTO규범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정.
개념 및 지원 조건	경관보전직불제 개념 및 지원조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적용, 또한 마을경관활동에 대한 개념의 다양한 적용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관보전직불제 개념 및 지원 조건에 관한 다양한 해석 존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과약 미흡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침 미흡 예1) 경관보전직불제 개념 인지가 미흡 예2) 지역별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지원 혼란 예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한 해석 다양. 예4) 집단화의 조건을 개별 0.5ha 이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여 적용함. 예5) 일부 지구에서는 꽃길 조성, 종자 및 묘목구입 또는 마을활동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 시기: 매년 동계경관작물 재배 신청전 · 대상: 시도, 시군담당자 · 방법: 집합교육 · 교육내용: 사업시행지침 해설, 신규 경관작물 소개, 의견수렴 · 교육효과 : 개념 및 지원조건의 명확화 , 통일된 사업시행 가능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핸드북 및 메뉴얼 보급
지급 단가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30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단가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소득작물(청보리, 연등)과 비소득작물(자운영, 코스모스)의 형평성 · 주산물 판매농가와 주산물 비판매농가의 형평성 · 마을면적 단위의 경관보전활동비 지급의 형평성 문제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농업협상 환경계획에 따른 Green Box에 해당 되도록) 사료작물 제외 고려 - 경관효과에 따른 작물별 차등 지급 - 3년마다 보조금 지원금액 평가 및 재조정

사업 신청서 작성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확인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작성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많은 서류 예)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마다 신청자들과 추진위원장의 도장 날인. 1인인당 서명이 3회 중복됨.	- 신청서류의 간소화 - 간소화를 위한 서식 제시.
대상 지역 (마을) 선정 요건	시장·군수는 대상마을의 선정의 객관성·공정성·도농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추진하게 되어 있음. 평가항목은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 계획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평가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대상지역 선정시 평가기준 미확보 - 지자체별 농촌경관계획 수립 및 평가항목에 대한 미확보로 가이드라인 제시 미흡. 예1) 대상지 선정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지구)이 아닌 사람위주로 되어 있어 경관작물 식재가 산재되어 경관효과가 미흡하며, 마을주민의 참여도 미흡	- 대상지역 선정요건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자체별 전문가에서 지자체 경관 담당자로 변경.
마을 경관 보전 추진 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 경관보전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5명 이내 -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대상 마을주민 3명 이내 -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 전문가 2명 이내	- 추진위원 구성의 어려움 및 활동미비 예1) 대부분 지구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신청대상자로만 구성되어 있음. 예2) 농촌에 농어촌경관 또는 도농교류 전문가를 찾기 어려움.	- 추진위원회 구성 · 전문가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농지의 적격 여부 및 신청 자격 확인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사업신청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 및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지형도)를 첨부	-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미흡 - AgriX상의 자료입력 미흡. 예1) 대상농지의 집단화 조건이 일부 부적격 예2) 협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의 서류가 일부 미확보 예3) 대상농지가 사람위주로 선정되어 한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곳에 산재	- 무작위 샘플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부적격 대상지의 시도, 시군단위에 페널티 부여 예)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면적 축소.

<p>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p>	<p>시장·군수는 사업대상 확정결과를 읍면장, 추진위원장, 농지소유자에게 일괄 통보.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은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다만,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우수한 경우, 협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되,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시군 전체 시행면적으로 1/3을 초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공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 1년의 단기 협약기간에 불만 제기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절차 일부 미흡 - 시장·군수의 협약체결 미흡 및 형식적 예1) 매년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로 인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예2) 추진위원장 및 농지소유자가 사업대상지 확정결과를 모름. 예3) 협약서의 시장·군수의 사인이 없거나, 표준형 샘플에 날짜 입력 및 서명만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기간 · 1년단위 → 3년 단위 · 단, 모니터링 평가에 의해 기간 조정 - 협약 체결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항목 설정.
<p>보조금 지급요건</p>	<p>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의 보조금 지급요건 불명확 예)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배관리가 불성실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선거기간중에는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의 보조금 지급요건 마련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 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로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이 경우 재배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p>지자체 지원 및 이중 지원</p>	<p>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의 경우 중복지원 금지, 그러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예1) 어느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지원을 하는가 하면, 어느 지자체는 추가 지원하는 것이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으로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예2) 일부 지자체는 WTO 농업협정에 위배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 작물 위주에서 마을경관관리 활동으로 경관보전 직불제의 방향전환.
<p>이행여부 점검</p>	<p>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책임 하에 실시. 점검시기: 마을별 2회(파종, 개화,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황파악) 점검방법: 협약내용에 따라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여부 점검 미흡 및 파악의 어려움. 예1) 지적도상의 위치 파악이 어려움. 예2) 일부 지자체는 재배현황 전수조사가 미흡. - AgriX상에 입력내용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실시 및 성과측정 강화 · 대상: 전년도 시행지역(10%로 무작위 샘플조사)

성과 측정	평가지표:지역 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 계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 를 지표로 선정	- 사업성과 측정 미흡 예)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 이 사업지침서상의 평 가지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 우가 있음.	- 사업성과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경관보전직불 제 목적달성도 평가를 위한 지표 · 개발시기: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이전 · 개발방법: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
----------	---	--	--

제4절 연구의 한계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관리를 고유 목적으로 삼는 사업으로, 농촌 주민의 자율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농촌경관관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촌경관 관리지원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일반적인 농촌의 경관관리 지원 및 정책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및 재배작물에 대한 단가조사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조사한 것이 아니다.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구는 전국에서 411지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지구의 10% 정도를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상지구 및 대상 주민들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량적인 측정도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아직까지는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에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 현장조사와 생산비 조사를 추가하여 객관적 검증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관보전직불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대한 달성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오상, & 윤태연. (2004). 논농업의 경관가치평가, *농업경제연구*, 45(2), 235-261.
-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 (200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심리적·경제적 가치와 환경정책*.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상범. (2005). 농촌경관조사와 경관요소. *농촌자원과 생활*. 여름호. 3~8.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김종철. (2007).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농촌자원과 생활*, 봄호. 68-77.
- 김주석, 엄대호, 박윤희, 김지성, 성주인, & 박주영, et al, (2007).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기법 및 지원방안 연구*. 안산: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05a). 농촌경관 전문가 Workshop 자료집.
- 농림수산식품부. (2005b). 농림사업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6). 농림사업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7a). 농림사업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7b).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매뉴얼-유채, 메밀, 자운영.
- 농림부. (2007).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가꾸기. 표준교재.
- 농림수산식품부. (2008a).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추진방안 세미나.
- 농림수산식품부. (2008b). 농어촌경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 농림수산식품부. (2008c). 농림사업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림사업지침서.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2002). 논농업의 환경보전 및 경관가치평가.
- 농촌진흥청. (2003).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농업경영비 절감기술.
- 박경철. (2007). 우리나라 경관농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고창군 경관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관광학회*, 2007 세미나 자료집

-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 박경철. (2004).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연구*.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200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관리실태와 정책방안*.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박주영. (2007). *농촌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연구*.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박경철. (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 28(3), 121-137.
- 안동만. (2005). *어메니티 창조를 위한 농촌경관 관리. 농촌자원과 생활. 특집: 지역개발과 어메니티 자원*, 65-71.
- 안동만, 신수안, 채혜성, 이지영, 이관용, & 최옥현, et al. (2008). *농촌경관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관리기준 및 운용에 대한 연구: 경관보전직불제 대상확대를 중심으로*. 수원:농촌진흥청.
- 안명준. (2008). 농촌 어메니티 경관의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008, 14(2), 77-84.
- 엄대호. (2006). *경관보전직불제의 현황과 과제*. 강원농수산포럼
- 엄대호 심완보, 윤진옥, 이충선, 홍찬선, & 유상오. (2004).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시범 사업 시행방안 연구*. 안산: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엄대호 윤진옥, 양선주, 임승빈, 이동근, & 주신하. (2006).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방안 연구*, 안산: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엄대호, 한경수, 고진영, 주혜진, 김주석, & 김광용. (2007). *농촌경관지표, 농촌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의 현장 적용성 연구*. 안산: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윤진옥, 홍찬선, 엄대호, 박윤희, 최분규, & 정기호, et al. (2005).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안산: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이동근, 옥주희, 홍찬선, 윤소원, 박창석, & 유현석. (2005).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1(2), 21-34.

- 이상영, 신용광, & 김영. (2004).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수원: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이상영, 김영, & 김은자. (2004). *농촌경관의 경제적 가치평가*.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임형백, & 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경관 기능 유지에 대한 가치평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3), 25-48.
- 윤진옥, 홍찬선, 엄대호, 박윤희, 최분규, & 정기호 et al.(2005).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안산: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장효선·김은순·엄대호. (2007).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시행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봉화군, 청원군,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3(4). 69-77.
- 정철모. (2005). 경관농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3). 191-210.
- 주신하, & 임승빈. (2008).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 연구. *농촌계획*. 14(4). 69-76.
- 주신하. (2008).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 *농촌계획*. 14(4). 77-86.
- 최현상. (1998).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농촌경관 선호예측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채혜성, & 김혜민. (2005). 농업생산공간 경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관구성요소 분류에 관한 기초연구. *농촌계획* 11(3). 1-9.
- 채혜성, 신수안, 이지영, 이관용, 최옥현, & 조정윤, et al.(2006).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농촌계획* 12(4). 115-123.
- 채혜성, & 안동만. (2008).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연구: 영국의 환경관리제(Environmental Stewardship)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4(2). 65-75.
- 채혜성, & 안동만. (2008). 전통담, 전통지붕 관리실태 및 경관보전직불제 적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 *농촌계획*. 14(4). 57-67.
- 채혜성, 신수안, 이지영, 이관용, 최옥현, & 조정윤, et al. (2006).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농촌계획* 12(4). 115-123.

- 한경수, 서우석, 강대구, 정진수, 김절용, & 김재호, et al. (2006). 농업·농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중등학교 교과내용 개발 연구. 안산: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홍찬선. (2004). 경관가치 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연구. *농공기술* 9월호. 20-21.
- 홍찬선, 임상봉, 이동근, 박창석, 유현석, & 이정은, et al. (2004).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가치의 평가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II). 안산: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農林水産省(2009), 景観・自然環境保全形成支援事業のうち農村景観・自然環境保全再生パイロット事業公募要領.
- Dobbs, T. L., & Pretty J. N. (2004). Agri-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s and Multifunctionality,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26(2). 220-237.
- Natural England. (2008). *Natural England framework for Science, Research and Evidence*, Natural England Research Report 011
- Natural England. (2009a). *Evaluation of management plan options in Environmental Stewardship*. Natural England Commissioned Report 007.
- Natural England. (2009b). *Look after your uplands with Environmental Stewardship*.
- Natural England. (2008). *Entry Level Stewardship Handbook*. Second edition-October 2008.

<부록 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촌경관 관리지원 방안 연구』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 조사

■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역 파급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경관보전직불제가 지역소득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미흡 ⑤ 아주 미흡

문1-1)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2) 경관보전직불제가 귀 지역의 인구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미흡 ⑤ 아주 미흡

문3) 경관보전직불제가 귀 지역의 방문객 유치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미흡 ⑤ 아주 미흡

문4) 경관보전직불제가 귀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미흡 ⑤ 아주 미흡

■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계획대비 추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잘 추진 ② 잘 추진 ③ 보통 ④ 미흡 ⑤ 아주 미흡(로)

문5-1) ③④⑤응답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거나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앙정부 지원 미흡 ② 행정서류 등 절차 복잡 ③ 지자체 행정기관 인력부족
④ 단체장의 추진력 미흡 ⑤ 주민 참여도 부족 ⑥예산 부족
⑦ 기타()

문6) 귀하의 지자체에서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① 없다(14번 질문으로)
- ② 있다(13-1번 질문으로)

문6-1) ②번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직불금액 지원
- ② 농기계 지원
- ③ 종자대 지원
- ④ 퇴비 지원
- ⑤ 비닐 피복비 지원
- ⑥ 수확 및 포장작업 지원
- ⑦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⑧ 축제 지원
- ⑨ 기타 ()

문7)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십니까?

- ① 교육 실시 안함
- ② 교육 실시함.

문7-1) ②응답의 경우, 1년에 몇 회 정도 주민교육을 실시하십니까?

- ① 년 1회
- ② 년 2회
- ③ 년 3회
- ④ 년 4회
- ⑤ 년 5회 이상

문7-2) ②응답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교육을 실시하십니까?

()

■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8)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문8-1) ④⑤응답의 경우, 불만족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작물별 지원금액의 형평성 문제
- ② 기타 ()

문8-2) ④⑤응답의 경우, 지원 예산 규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그 이유는? ()

문9) 경관마을보전활동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문9-1) ④⑤응답의 경우, 경관마을보전활동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그 이유는? ()

■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일반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10)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성공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지원 ② 단체장의 추진의지 ③ 적극적인 주민참여
- ④ 자문 및 컨설팅 등의 전문가 그룹의 활동 미흡 ⑤ 담당공직자의 열의와 자세
- ⑥ 기타()

문11) 귀하는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하여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원 필요 ② 지원 불필요

문12) 귀하는 경관마을보전활동비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문13) 귀하는 향후에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관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13-1) ②응답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14) 귀하는 2008년도 동계작물 협약체결을 몇 월에 하셨습니까?

()월

문15) 귀하는 2009년도 하계작물 협약체결을 몇 월에 하셨습니까?

()월

■ 마지막으로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성명		• 연락처	
• 담당부서	()과	()팀	

※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위해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형식에 대한
 구애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시한 의견은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건 서

* 마을경관협약 이행상황 및 마을 활동비 집행현황 관련해서	
* 임차인의 보조금 지급절차 확인 관련하여	
* 대상면적 및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집행액, 미집행 액, 미집행사유)	
* 조사료생산기반사업과 경관직불제와의 연계문제 관련하여	
* 지원대상 작물(초화류) 범위에 대한 지자체 의견	
* 청보리 등 동계작물 지원단가에 대한 여론 및 의 견 (상향, 하향, 모름 등)	
*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개선사항	
* 기타 사업집행상 수행절차의 문제점, 애로 및 건 의사항	
* 직불금 이외의 경관사업을 하는 이유(이미지 개선, 소득효과 등)	

♣ 인터뷰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촌경관 관리지원 방안 연구』
주민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주한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농촌경관 관리지원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지역정비팀 연구실 : 031) 400-1778
연구책임자 : 김 미 영

■ 다음은 귀하의 경관보전직불제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여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참여기간	동계	하계	동계	하계	동계	하계	동계	하계	동계	하계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 경관작물 (혼파의 경우 비율 포함)										
경관작물 재배면적										
지원 받은 금액										
경관작물 재배면적을 포함한 총 재배면적										

문1) 귀하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언제부터 참여하셨습니까?

()년부터 참여함

문2) 귀하는 2008년까지 경관보전직불제에 동계/하계 기간중 몇 회나 참여하십니까?

총 ()회 참여함.

문3) 귀하께서 2008년도에 재배하는 경관 작물명은 무엇입니까?
()

문4) 귀하는 2008년도에 동계/하계 기간중 어느 기간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동계기간 ② 하계기간 ③ 동계와 하계기간 모두

문5) 귀하의 최근 경관작물 재배면적 및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경관작물 재배면적 : 총 ()ha or ()
지원 받은 금액 : ()원

문6) 귀하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시기 전에 경관작물 대신 어떤 작물을 심으셨습니까?
① 휴경지 ② 자운영 ③ 청보리 ④ 보리 ⑤ 기타()

문7) 귀하께서 계속해서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참여 -그 이유 ()
② 비참여 -그 이유 ()

■ 다음은 귀하의 경관보전직불제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십니까?
① 개인이 직접
② 경관보전직불제 참가자로만 이루어진 공동 운영방식
③ 개인 + 참가자 공동운영 방식
④ 기타()

문9)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부분에 직접 참여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논밭갈기(로타리 포함)
② 종자 구입
③ 파종
④ 시비 및 제초 관리
⑤ 배수로 설치 및 관리
⑥ 탐방로 설치 및 관리
⑦ 주변환경 관리
⑧ 수확
⑨ 건조 및 포장 등의 활동
⑩ 기타 ()

문10) 귀하는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마을공동 활동(회의, 축제, 공동재배 작업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참여한 적이 있음.(10-1번 질문으로) ② 참여한 적이 없음.(11번 질문으로)

문10-1) ① 참여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마을공동활동 내역 중 어느 부분에 참여 하셨습니까?

- ① 경관작물 파종 및 식재
- ② 작물재배, 시비, 제초, 방제작업 등의 관리
- ③ 배수로 관리 등의 재배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 작업
- ④ 마을 진입로, 안길, 공터 등 마을경관 가꾸기 활동 및 소품구입
- ⑤ 수확·건조·포장 등의 활동
- ⑥ 기타()

문11) 귀하는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① 예(11-1번 질문으로)
- ② 아니오(12번 질문으로)

문11-1) ①번 “예”로 응답하신 경우, 귀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서” 내용이 무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2) 귀하께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가볍다
- ② 대체로 가벼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무거운 편이다
- ⑤ 매우 무겁다

문13) 귀하는 재배된 경관작물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 ① 사료로 판매
- ② 비료로 사용
- ③ 종자 판매
- ④ 가공제품 원료로 활용.
- ⑤ 기타()

문13-1) 귀하는 재배된 경관작물을 어떻게 판매하셨습니까?

- ① 마을축제를 통해 판매
- ② 방문객에게 직접 판매
- ③ 마을공동으로 관련 기관·업체에 판매
- ④ 기타()

문14) 귀하의 시군에서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① 없다(15번 질문으로)
- ② 있다(14-1번 질문으로)

문14-1) ②번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직불금액 지원
- ② 농기계 지원
- ③ 종자대 지원
- ④ 퇴비 지원
- ⑤ 비닐 피복비 지원
- ⑥ 수확 및 포장작업 지원
- ⑦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⑧ 축제 지원
- ⑨ 기타 ()

■ 다음은 귀하의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15)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1ha당 동계 170만원/ 하계 10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대체로 작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대체로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15-1) 지원금액이 작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기계 사용비 등)
②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③ 다음 농사에 지장을 주어서(지력 약화 등)
④ 기타()

문16) 경관마을보전활동비로 2009년 올해부터 1ha당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⑤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⑥ 잘 모르겠음

문17) 귀하는 경관마을보전활동비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문18) 귀하는 향후에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9)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귀하의 마을 경관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기여하였다 ② 대체로 기여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기여하지 않았다 ⑤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문20)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귀하의 마을주민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기여하였다 ② 대체로 기여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기여하지 않았다 ⑤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문21)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귀하의 마을 방문객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기여하였다 ② 대체로 기여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기여하지 않았다 ⑤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문22)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귀하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기여하였다 ② 대체로 기여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기여하지 않았다 ⑤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문22-1) 귀하의 경관보전직불제가 귀하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면,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얻은 귀하의 소득액(개인 인건비 제외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22-2) 음식 판매를 통한 소득액	()원
문22-3) 경관작물 외의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액	()원
문22-4) 숙박을 통한 소득액	()원
총 소득액	()원

■ 마지막으로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성명		• H. P.	
• 나이	(만 세)	• 성별	①남성 ②여성
• 귀하의 연 소득액은? 총 ()	①농업 소득 ()	②농업외 소득()	
• 귀하의 농사 경력은?	()년		
• 귀하는 현 경작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의 현 경작지의 운영형태는?	① 자경 ② 임차 ③ 위탁영농		
• 귀하의 현 거주지는?	()시도 ()시군 ()읍면동 ()리		
• 귀하의 현 경작지는?	()시도 ()시군 ()읍면동 ()리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위해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형식에 대한 구애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시한 의견은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 지급 단가 관련해서	
*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하여	
* 경관작물 다양화 관련하여	
* 마을경관 향상과 관련하여	
* 경관보전활동으로 하고 싶은 일 및 바라는 점	
* 기타 사업전반	

<부록 3>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지구(마을) 현황조사
(2008~2009년도 현황)

○ 경관사업지구(마을)명 : ___도 ___시군 ___읍면동 (지구명:___)

담당 부서명	담당자 직함	담당자 성명			
		성명	유선	휴대폰	전자우편

1. 마을 개요

■ 인구구성

연도	가구 수 (호)			인구 수 (명)	전출 인구	전입 인구	15세 미만 인구	65세 이상 인구
	계	농가	비농가	계				
2008								
2009								

■ 참여 농가 현황

연도		참여 호수(가구수)	면적(ha)
2008년	동계	호	ha
	하계	호	ha
2009년	동계	호	ha
	하계	호	ha

2. 해당 지자체의 경관관련 주요 사업 및 시책 현황

경관관련 시책	군 단위	읍면 단위	지원 내용(지원년도)
꽃길조성 등 조경사업			
간판 정비			
경관 주택 유도			
경관 심의			
경관위해 요소관리			
경관 조례			
기타 ()			

3. 마을내 기타 사업현황

기타 사업명		해당항목에 ○표	지원처	지원내용 (연도)	지원금액
경관보전직불금 외 추가지원	직불금액 추가지원				
	종자대 지원				
	퇴비 지원				
	비닐 피복비 지원				
	비료 지원				
	기타()				
타 직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농업직불제				
	기타()				
도 및 시군 지자체 지원	축제 비용 지원				
	운영 인력 지원				
	프로그램 기획				
	시설 설치 지원				
	기타()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마을 가꾸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농촌체험마을				
	농촌생활환경정비				
	거점면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				
	정보화마을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오지종합개발				
	문화역사마을				
	산촌생태마을				
기타()					

4.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현황

사업명	참여년도	동계 하계	재배 작물		집행된 사업비 내역 (백만원)	
			작물명	재배면적	국비	지방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2005	동계				
		하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2006	동계				
		하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2007	동계				
		하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2008	동계				
		하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2009	동계				
		하계				

5. AgriX 관련사항

주요 내용	2008년 하계작물	2008년 동계작물	2009년 하계작물
* 입력 유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입력 시기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입력 내용			
* 입력하지 않은 이유			

6. 마을경관협약서 1부 첨부.

7. 사업 운영시 제도적 측면에서의 어려운 점 및 기타 건의사항

* 지급 단가 관련해서	
*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하여	
* 경관작물 다양화 관련하여	
* 마을경관 향상과 관련하여	
* 경관보전활동으로 하고 싶은 일 및 바라는 점	
* 기타 사업전반의 행정처리 관련하여	

<부록 4>

2008 경관작물 소득조사표 (1)

- 농가번호()
- 조 사 작 목 : _____
- 조 사 지 역 : _____ 도 _____ 시 · 군
- 조사 담당자 성명 _____ (서명)

- 조 사 내 역
 - 일반현황

농가명	전화번호	주 소			주재배 품종명	재배면적
		면	리	번지		
						m ²

- 재배방법

일반재배	친 환 경 재 배					재배기간	수확기간
	계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평	평	평	평	평	평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소

조 사 항 목		수 량	단가(원)
조 수	1. 주산물		주산물평가액 (생산량×농가수취가격)
	가. 생산량	일반재배 <input type="text"/> kg,개 친환경재배 <input type="text"/> kg,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입	2. 부산물 가. ()	<input type="text"/> kg	부산물 평가액 <input type="text"/>
【생 산 비】			
3. 종 자 종 묘		<input type="text"/> kg, ℓ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	<input type="text"/>
4. 무기질비료	비료명		
가. 요 소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나. 유 안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다. 용성인비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라. 염화칼리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마. 황산칼리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바. 붕 소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사. 농용석회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아. 복합비료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자. 규 산 질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차. 기 타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유기질비료	비료명		
가. 퇴 구 비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나. 생 질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다. 액 비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라. 기타()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조 사 항 목	수 량	단가(원)
6. 영 양 제 가. 액 제 나. 수 화 제	영양제명 () <input type="text"/> ℓ () <input type="text"/> 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친환경경제재 가. 목초액 나. 키토산 다. 미생물제재 라. 기타()	친환경경제재명 () <input type="text"/> ml () <input type="text"/> ml () <input type="text"/> ml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 농 약 비 가. 살 충 제 ○ 유 제 ○ 분 제 ○ 입 제 ○ 수 화 제	농약명 -살충제명 () <input type="text"/> ml () <input type="text"/> g () <input type="text"/> kg () <input type="text"/> 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나. 살 균 제 ○ 유 제 ○ 분 제 ○ 입 제 ○ 수 화 제	-살균제명 () <input type="text"/> ml () <input type="text"/> g () <input type="text"/> kg () <input type="text"/> 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다. 제 초 제 ○ 유 제 ○ 입 제	-제초제명 () <input type="text"/> ml ()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라.친환경경제재 ○ 천 적 ○ 성 폐로몬 ○ 병방제용제재 ○ 해충방제용제재 ○ 기 타	<input type="text"/> 팩 <input type="text"/> g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g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마. 기 타()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ml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조사 항목	수 량	단가(원)
9. 광열동력비		
가. 전 기	<input type="text"/> kw	<input type="text"/>
나. 경 유	<input type="text"/> l	<input type="text"/>
다. 등 유	<input type="text"/> l	<input type="text"/>
라. 중 유	<input type="text"/> l	<input type="text"/>
마. 휘 발 유	<input type="text"/> l	<input type="text"/>
바. 가 스	<input type="text"/> l	<input type="text"/>
사. 연 탄	<input type="text"/> 장	<input type="text"/>
아. 기 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 수 리 비(水利費)		<input type="text"/>
11. 제 재 료 비		
가. 비 닐	<input type="text"/> m	<input type="text"/>
나. 할 죽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다. 풋 트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라. 비 닐 끈	<input type="text"/> 타	<input type="text"/>
마. 짚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바. 왕 겨	<input type="text"/> kg	<input type="text"/>
사. 포 장 상 자 (P. P마대)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아. 망사 및 갑바	<input type="text"/> m	<input type="text"/>
자. 기 타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차. 기 타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카. 기 타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타. 기 타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파. 기 타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조사항목	수 량	단가 (원)
12. 소 농 구 비 (호미, 낫 등)		<input type="text"/>
13. 수 선 비 가. 대 농 기 구 나. 영 농 시 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4. 임 차 료 가. 대농기구 임차료 나. 영농시설 임차료 다. 토 지 임 차 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5. 기 타 요 금		<input type="text"/>

16. 작업별 농기계 이용률 및 사용료

작업구분		종류별 (마력등)	이용회수 (회)	참여인원 (명)	1일 작업량 (평)	농기계 이용률 (%)	농기계 사용료 (원/평)
경 운	경운기						
	트랙터						
정 지	경운기						
	트랙터						
이 앙	보 행						
	승 용						
방 제							
급 수	관 정						
	양 수						
배 수							
수 확	인력						
	콤바인						
건 조	인 력						
	건조기						
계							

17. 작업단계별 투입노동력 (시간)

Code No.	작업단계별	총 투입인력			자가노력		고용노력		위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01	종자준비및소독								
02	묘판준비및설치								
03	과 중								
04	묘 판 관 리								
05	숙 아 내 기								
06	경 운 정 지								
07	퇴비및밑거름주기								
08	비닐피복 및 흙덮기								
09	아 주 심 기								
10	제 초 제 살 포								
11	웃 거 림 주 기								
12	병 충 해 방 제								
13	김 매 기								
14	물 관 리								
15	수 확								
16	건 조								
17	탈 곡								
18	선 별 및 포 장								
19	운 반 및 저 장								
20	기 타								
계									

18. 고용노임

노 임 (1시간 기준)	구 분	현금지급액(원)	급식물평가액(원)	합 계(원)
	남 자			
	여 자			

주) 조사작목에 투입된 고용노임단가를 조사기입 (1시간기준 평균노임)

19. 자가노임

노 임 (1시간 기준)	구 분	현금지급액(원)	급식물평가액(원)	합 계(원)
	남 자			
	여 자			

주) 조사작목에 투입된 자가노임은 작물재배기간 동안의 그 지역 평균노임 기록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담당자 이외는 볼 수 없음

<부록 5>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13년까지 88% 달성 목표)
 -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축제, 경관작물관련 축제,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등 연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 지역활성화프로그램 연계정도(%)	84	-	81.7	95.5	2008.11	시행마을/연계마을×100

4. 용어의 정의

- 초화류 : 꽃이 피는 초본식물을 말 함
- 동계경관작물 : 작물별 적정 과종시기를 기준으로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11~2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하계경관작물 :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 다년생 작물의 경우 과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2년차부터는 동계작물로 분류
-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진입로·안길·공터 등 경관 가꾸기,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 발전,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기반(원두막, 쉼터 등), 교육·홍보활동 등
- 집단화 : 농경지가 필지끼리 연결하여 있는 경우를 말 함. 다만, 농로, 수로, 제방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
- 농업인등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농업법인 포함)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268180	1,680	1,408	3,758	13,750	247,584
보 조187726	1,200	1,000	2,646	9,640	173,240
용 자					
지방비80,454	480	408	1,112	4,110	74,344
자부담					

II.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마을별로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 체결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나.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목본류는 제외)
 -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협약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 비용 지원
 - 단, 마을경관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접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금지
- 지급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30만원/ha
 -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다. 2009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계		13,750	13,750	9,640	-	4,110	-
○ 경관보전직불제	10,000ha	13,700	13,700	9,590	-	4,110	-
- 경관작물재배	10,000	10,700	10,700	7,490		3,210	
- 마을경관보전활동	(10,000)	3,000	3,000	2,100		900	
○ 행정 경비	1식	50	50	5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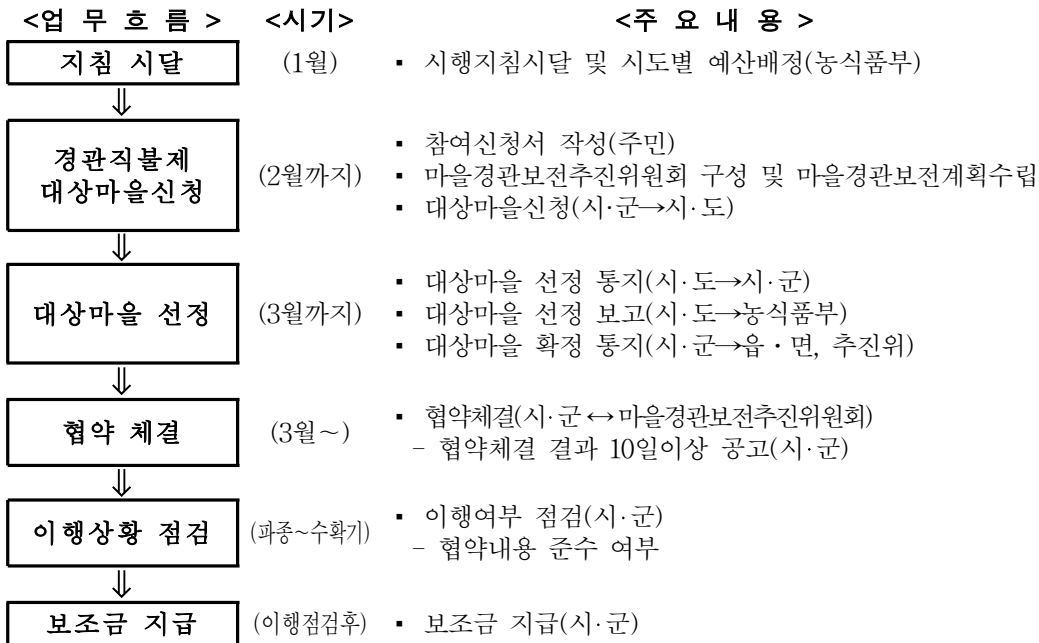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전화 02-500-1823)
- 시·도 : 농정과, 농산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다.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도에 따라 지자체별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3. 사업 대상마을 선정

가. 대상지역 선정 요건

- 읍·면의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되는 농지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ha 이상 되어야 함
 - 철도 및 지방도급 이상 도로변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적극 유도
- * 조건불리지역, 논농업직불 대상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포함 가능

※ 제외 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경관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나. 대상마을 선정절차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함.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5명 이내
 -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대상 마을주민 3명 이내
 -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2명 이내
- ※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인 추진위원 중에서 호선함
-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2)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토하고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세부추진계획에는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

(3) 사업신청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
-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시 활용하도록 협조

(4) 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농업인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임대차 적법여부, 실경작확인서 등으로 대조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신청농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

(5) 대상마을 선정

○ 사업대상 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대상마을의 선정의 객관성·공정성·도농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
- ※ 평가항목은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계획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마을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사업대상 마을선정 및 통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다. 사업 대상마을 확정결과 통지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마을 및 대상농지, 대상자 확정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농지소유자에게 일괄 통보

라.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별지 제8호 서식]
- 다만, 최근 3개년 연속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마을중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성과가 우수하고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되,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시군 전체 시행면적으로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계 시관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마을에서는 협약서에 명시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경관작물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시비 및 제초작업 실시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농지를 정비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유희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 가능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경관 협약시 제시한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이행
- 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씨앗, 종묘, 기구 구입 등)
-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및 재료비
-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 기타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여행성 경비를 제외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마을경관보전관리 활동

(2)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구)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마을별 2회(파종 및 개화상태,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황 확인)
- 점검방법 : 협약내용에 따라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경관작물 파종 및 개화 상태 확인
 -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관리 상태 확인
 -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이행상황 등
 -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 등 증빙서류 확보)
 -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현황)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1)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추진위원회 계좌를 통해 각각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 관리
- 보조금 산정기준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은 협약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경관작물 재배 : 동계작물 m²당 100원, 하계작물 m²당 17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경관작물재배 협약면적에 비례 하여 m²당 30원
 - * 산출결과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경관작물재배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처리
 - 파종 및 개화상태를 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개화시 지급금 50%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마을경관보전협약내용을 확인하고 추진위원회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 관리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활동 보조금 중 50%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2)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과중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관리부실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마을경관 보전활동	협약내용 이행여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 기준(예산지원 계획 기준)
 -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감 10%
 - 생육 및 개화가 되지 않은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 할때 : 감 10%
 -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때 : 감 10%
- 마을경관보전활동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증감처리

4.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 변경

-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농가→추진위원장(경유)→읍·면장→시장·군수(검토 및 변경 결정)
-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자의 신청 자격 확인 [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서식]
- 변경된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나. 성과측정단계

-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지표 :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 (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 평가일정 :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다.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성과 극대화에 노력
- 평가내용 :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

<환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연도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 등

라. 보 고

-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Ⅲ.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31)
 - * 신청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마을주민
-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경관보전지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m ²)				⑤경작시기 (과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p>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지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지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수수료	
1. 참여신청서 ○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신청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p>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 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p> <p>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p> <p>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p> <p>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p> <p>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과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p> <p>(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p>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 경관작물재배			1. 2.
- 묘목구입비			1. 2.
- 체험·관광분야			1. 2.
- 역사문화분야			1. 2.
- 교육홍보분야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실 경작 확인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농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m ²)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 위원 (인)

※ 이 확인서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농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마을경관협약추진위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마을 리·동	주소 (번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 면적 (㎡)	확인면적(㎡)					지급 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마을명		추진위원장	
-----	--	-------	--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대상면적(㎡)					보조금 예상액(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협약(안)

마을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약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대상면적	총 m ² (논 , 밭 , 기타)

협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추진위원회에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주민 그리고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⑥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 나.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 다.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 라.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시비 및 제조작업
- 마.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 바.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가. 유희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 나.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4.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한 경관보전관리 활동(공동활동)

- 가.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 나.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 다.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 라. 국내 우수사례 지역 방문 견학 실시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지급은 제외 다만, 기술적 지원을 위해 필요 인건비를 제외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③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 “갑”은 “을”의 구성원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②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경관작물재배관리

- 가.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 나.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다.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2. 마을경관보전활동관리

가.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아니한때 : 감액 또는 회수

나.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감액 또는 회수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직불제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 관 작물	대상 면적(m ²)				
		시군	읍면	리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 주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명을 기재
2.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3. 작성은 A4횡으로 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엑셀로 작성)


<부록 6>

<부록> 신청서 및 협약서 실제 사본

Entry Level Stewardship Application Form



**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



This form should be used if you wish to apply for Entry Level Stewardship (ELS). If you wish to apply for any other combination of ELS, OELS or HLS options please contact your local Defra RDS office for the relevant form.

Important: before you start to complete this form, please read the accompanying ELS Handbook carefully.

Before making your application you must ensure that the land parcels recorded on the field data sheet at Annex 2 of this application form are eligible for the scheme, by studying the eligibility criteria in Sections 1 and 4 of the ELS Handbook.

If you find that some of your eligible land parcels have not been included in Annex 2 you must contact your Defra RDS office for a new application form and maps. You must not add any field parcels to your pre-filled details at Annex 2 yourself.

If there is insufficient space to answer any questions or to complete the tables, photocopy the blank tables and attach them securely to the form. Where you have used a continuation sheet, please indicate this on the relevant table/question and cross-reference them clearly.

Please use BLOCK letters and black ink throughout and ensure that any alterations are initialled by you - do not use correcting fluid.

Please send your completed form together with maps and other supporting documentation to your local Defra RDS office.

Data Protection Act 1998/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Defra may make the information we receive as part of your Application generally available. (See ELS Handbook for further information).

ERDP/ELS 11

1. ELS 신청서

3. Vendor number
This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Defra to make payments. If you do not already have a vendor number you must obtain one from the RPA and enter it into the box below (see ELS Handbook)

Vendor number

4. Legal trading status of applicant (tick one box)

• Sole trader	<input type="checkbox"/>	• Public Limited Company	<input type="checkbox"/>
• Cooperative	<input type="checkbox"/>	• Public sector organisation	<input type="checkbox"/>
•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 Other	<input type="checkbox"/>
• Private Limited Company	<input type="checkbox"/>		

5. Authorisation for an agent to make an ELS application (please see the ELS Handbook).
I am an agent and I am submitting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others Yes No
If 'NO', please go to question 6.
If 'YES' the other individual(s) on whose behalf you are applying must complete an agent authorisation form and you must submit it with this completed application form.
Please tick to confirm that the agent authorisation form is attached

■ Section 2. Application/agreement details

6. Agreement title (e.g. name of farm)

7. Preferred agreement start date
Please confirm your preferred agreement start date (see ELS Handbook for information on start dates).
Your application must reach us before the deadline for your chosen agreement start date.

• Next available start date	<input type="checkbox"/>	• 1 August	<input type="checkbox"/>
• 1 February	<input type="checkbox"/>	• 1 November	<input type="checkbox"/>
• 1 May	<input type="checkbox"/>		

8. Land ownership and control

<p>Are you the freehold owner, tenant or contractual licensee of all the land covered by this applicat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Will you have management control over the land for the entire length of the agreement (5 years) so that you can meet the Declaration and Undertakings in Section 4 of this form?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If 'YES' go to question 9. If 'NO' you must make a countersigned application with a person who can take over your responsibilities if you cease to have control over part/all of the land. This person will need to complete (a), (b) and (c) below and read and sign the Declaration and Undertaking that follows.</p> <p>For further information on land ownership and control, please see the ELS Handbook.</p>
--	---

(a) Title (e.g. Mr/Ms/Miss/Ms) Initials

Forename Surname

ERDF/ELF 1 3

8. Land ownership and control (continued)

(b) Business name

(c) Main correspondence address

Town _____
County _____

Postcode

Telephone number (incl. national dialling code)

Fax number (if applicable)

E-mail address (if applicable)

Land Ownership and Control Declaration

- In applying for Environmental Stewardship I/we confirm that I/we are over 18 years of age.
- I/we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Entry Level Stewardship Handbook and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 named at section 1 on this form and the attached maps.

Tick one box only

- I am/we are the freehold owner of part/all of the land in this application
- I am/we are the tenant of part/all of the land in this application and my/our tenancy is for a minimum period of 5 years from the start date of any agreement that may result from this application
- In the event that the applicant named in Section 1 ceases to have control over the relevant land (the land over which I/we can undertake management control), I/we will have control over the relevant land for the remainder of the 5 year agreement.

Undertaking

- I/we undertake that if the applicant named in section 1 ceases to have control over the relevant land (the land over which I/we can undertake management control) in this application at any time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full 5 year term of any agreement resulting from this application, I/we will from the date of such cessation ensure that all the obligations under any agreement over the relevant land will be properly fulfilled until the expiry date of that agreement.

Signature

Date

Name (BLOCK LETTERS)

Capacity of signatory (e.g. tenant, landlord)

9. Common land

If your application includes common land you will need to have completed and attached an ELS common land supplementary application form. Please read the ELS Handbook regarding eligibility rules for common land.

- Please tick if this application includes common land and the appropriate form is attached



Section 1. Applicant details

1. (a) Application reference [redacted]

(b) Title (e.g. Mr/Ms/Miss/Ms) [redacted] Initials [redacted]

Forename [redacted] Surname [redacted]

(c) Business name [redacted]

(d) Main correspondence address [redacted]

Town [redacted]

County [redacted]

Postcode [redacted]

(e) Telephone number (incl. national dialling code) [redacted] Fax number [redacted]

Mobile telephone [redacted]

E-mail address [redacted]

(f) Please indicate your preferred method of contact: • telephone • fax • mobile • e-mail • letter

2. Other agreement contact details
Main contact details if different from 1 above

(a) Title (e.g. Mr/Ms/Miss/Ms) [redacted] Initials [redacted]

Forename [redacted] Surname [redacted]

(b) Business name [redacted]

(c) Full postal address [redacted]

Town [redacted]

County [redacted]

Postcode [redacted]



10. Farm Environment Record

As a condition of Environmental Stewardship, you must identify, map and retain important environmental features and areas as part of the application process for ELS. You will be awarded 3 points per hectare for recording this information on your Farm Environment Record Map. The FER map key sets out what features should be recorded, and the ELS Handbook explains how these features should be marked on your FER map.

11. Identifying fields that may be at risk from soil erosion or run-off

The ELS Handbook provides guidance on how to identify fields which may be at risk.

- Is any of your land at risk from soil erosion or run-off? Yes No
- If 'YES', have you marked these fields on your Farm Environment Record map? Yes No
- Have you also completed column headed 'Soil Erosion/run-off risk' on the Field Data Sheet at Annex 2 to show which fields are at risk? Yes No

If more than 10% of your fields are at risk from soil erosion or run-off you should consider preparing a Soil Management Plan (EM1) to help reduce the problem. See ELS Handbook.



Section 3. Your ELS points target and choice of scheme options

Guidance on completing this section can be found in the ELS Handbook.

Please check that all of your RLR field parcels that are eligible for ELS are listed on the Field Data Sheet at Annex 2. Please also check that the area figures in table A below are the same as the figures in the boxes labelled 1 and 2 at the bottom of the column headed 'RLR field size' on the Field Data Sheet(s) at Annex 2.

Table A

Your target	Points per unit	Area (ha)	POINTS TARGET
Total area and points target of land excluding LFA land in parcels of 15 ha or more, and land parcels which are not eligible.	30 per hectare (ha)		
Total area and points target of LFA land in parcels of 15 ha or more, excluding land parcels which are not eligible.	8 per hectare (ha)		
Total points target on your land			

You must record the individual options you have chosen by completing Annex 1 and Annex 2 and record your total points in Table B below:

Table B

ELS Options Summary	Points
Total points for Annex 1	
Total points for Annex 2	
Total points (Your total points must be equal to or more than your points target above)	

■ Checklist

Before returning your completed application form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please make sure that you have:

- completed your farm environment record map
- completed your ELS options map
- completed your record of ELS boundary, rotational and management plan options (Annex 1)
- completed your record of ELS non-rotational options within fields (Annex 2 Field Data Sheet)
- completed your ELS points target and option summary tables (Section 3 tables A and B)
- attached a ELS commons form for all applications including common land
- attached an agent authorisation form if you are an agent
- attached any continuation sheets that you have used to complete your application

Please write your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on each sheet and enter in the box opposite the number of sheets you have attached



■ Section 4. Declaration and undertakings

Before applying to enter this 5 year ELS commitment you must ensure that you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ELS Handbook and in particular the section called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you must agree to'. There are many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that Handbook that are incorporated into the ELS agreement by reference - in other words binding on you but not repeated in the body of the agreement that Defra will eventually send to you should your application be successful. If there is anything which you do not understand, contact Defra before signing these declarations and undertakings.

Declarations

I/We declare that I/we have read, understood and agree to abide by the requirements contained in the ELS Handbook for the duration of any ELS agreement.

Undertakings

In signing this form I/we undertake that, if admitted to Environmental Stewardship, I/we will:

- fulfil the obligations required of me/us as a result of my/our participation in ELS, as specified in this application and attached maps and as set out in the ELS Handbook, for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 allow access to any land and any relevant records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to any authorised person for the carrying out of an inspection in

order to verify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provided to the Department and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undertaking;

- agree to disclose all information relevant to this application,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as maybe required by the Department and co-operate with or take part in any economic, environmental or othe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Scheme (including any research and development studie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r by anyone appointed by it for that purpose;
- repay on demand, with interest, any aid paid where the Department has good reason to believe there has been a breach of agreement (e.g. by not complying with relevant option prescriptions or by breaching the standards of Good Farming Practice) or where it is reasonably believed that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has been given in this application form or in subsequent correspondence relating to this Scheme.

Warning: If you knowingly or recklessly make a false statement to obtain payment of aid to yourself or anyone else, you also risk prosecution,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the loss of all aid paid to you under this Scheme and exclusion from certain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 schemes for up to two years.

I hereby apply for (please tick):

- an ELS agreement

Applicant's signature

Date

Name (BLOCK LETTERS)


Capacity of person signing

(e.g. sole trader, partner, director, agent)

- **Annex 1.** Please record your choice of ELS boundary, rotational and management plan options on the table below. (Completion of the Farm Environment Record map and selection of option EA1 is compulsory.)

Code	Description	Points available	Measurement	Your points
EA1	Compulsory Farm Environment Record	3 per ha	ha	
EB1	Hedgerow management (both sides of hedge)	22 per 100m	m	
EB2	Hedgerow management (one side of hedge)	11 per 100m	m	
EB3	Enhanced hedgerow management (both sides of hedge)	42 per 100m	m	
EB4	Stone faced hedge bank management on both sides	16 per 100m	m	
EB5	Stone faced hedge bank management on one side	8 per 100m	m	
EB6	Ditch management	24 per 100m	m	
EB7	Half ditch management	8 per 100m	m	
EB8	Combined hedge and ditch management (Incorporating EB1 hedge management)	38 per 100m	m	
EB9	Combined hedge and ditch management (Incorporating EB2 hedge management)	26 per 100m	m	
EB10	Combined hedge and ditch management (Incorporating EB3 hedge management)	56 per 100m	m	
EB11	Stone wall protection and maintenance	15 per 100m	m	
EC3	Maintenance of woodland fences	4 per 100m	m	
EF6	Over wintered stubbles	120 per ha	ha	
EF8	Skyllark plots	5 per plot	plots	
EF9	Conservation headlands in cereal fields	100 per ha	ha	
EF10	Conservation headlands in cereal fields with no fertiliser or manure	330 per ha	ha	
EG4	Cereals for whole crop silage followed by over-wintered stubbles	230 per ha	ha	
EG5	Brassica fodder crops followed by over-wintered stubbles	90 per ha	ha	
EJ2	Management of maize crops to reduce soil erosion	18 per ha	ha	
EG1	Under sown spring cereals	200 per ha	ha	
EM1	Soil management plan	3 per ha	ha	
EM2	Nutrient management plan	2 per ha	ha	
EM3	Manure management plan	2 per ha	ha	
EM4	Crop protection management plan	2 per ha	ha	
Total points for Annex 1 (Please enter this total in the box at section 3 table B of this application form)				

2. ELS 협약서



Our Reference [REDACTED]
Date [REDACTED]

Dear [REDACTED]

Environmental Stewardship
Entry Level Stewardship Agreement

Agreement no. [REDACTED] (Please quote in future correspondence.)

I am pleased to confirm that your application for Entry Level Stewardship (ELS) has been successful. Please find attached your ELS Agreement. This contains confirmation of the important requirements which you have already agreed to comply with by applying for Entry Level Stewardship. These requirements will be effective from [REDACTED]. The agreement is made up of 2 parts as follows:


Part 1: Annual payment for each year of the agreement
Part 2: Summary of ELS options and points

Under this Agreement, Defra undertakes to pay to you the amounts set out in Part 1 of your Agreement, for each of the next fiv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contained within the ELS Scheme Handbook. Payments will be made on a six monthly basis.

In return, you have agreed to enter into a legal commitment to carry out the management options listed in Part 2 of your Agreement and described in your ELS Scheme Handbook. You must also fulfil the general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all agreements as set out in your ELS Scheme Handbook.

You must read each part of this agreement carefully in conjunction with the ELS Scheme Handbook and in particular the section called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you must agree to' in order to ensure that you are fully aware of the commitments that you have undertaken during this period.

It is important that you follow the rules outlined in the ELS Scheme Handbook otherwise, if, on inspection, you are found not to be complying with specific requirements you will be treated as being in breach of your agreement and will be



likely to have some or all of your annual payment withheld or recovered. In cases of serious breach you may also have to return ELS monies previously received by you.

If there is anything in your agreement which you think is incorrect or which you do not fully understand, or if for any reason you do not wish to carry on with this Agreement, you must contact this office within 14 working days of receiving this letter.

Please retain this letter together with the ELS Scheme Handbook and Field Data Sheets since they form part of your Agreement. You should also be aware that the ELS Options Map and the Farm Environment Record Map which you submitted and we returned to you (marked 'received'), also form an integral part of your agreement and must also be retained.

May I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agreeing to take part in this very important environmental scheme. A sustainable and thriving rural economy is a major priority for the Government and increased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is a vital part of this. Your active participation in schemes such as Environmental Stewardship will help to secure this objective. I am sure you will find being in the Scheme both an interesting and rewarding experience and that you will value your role in sustaining a countryside which will be appreciated by generations to come.

Yours sincerely



ENTRY LEVEL STEWARDSHIP AGREEMENT

Agreement no [REDACTED]

This Agreement is between [REDACTED]
of

[REDACTED]

and the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of

[REDACTED]

This Agreement covers all of the land parcels listed on the Field Data Sheet at Part 2.

This Agreement will run from [REDACTED]

Defra agrees to pay you annually according to the schedules in Part 1 and Part 2.

This Agreement comprises 2 parts as follows:-

- Part 1: Annual payment for each year of the agreement
- Part 2: Summary of ELS options and payments

[REDACTED]

ENTRY LEVEL STEWARDSHIP AGREEMENT

PART1
ANNUAL PAYMENT

Your annual payment for ELS is as follows:

Land Description	Payment	Area (Ha)	Target
Area of land in agreement, excluding LFA land in parcels of 15ha or more	████████	████	████████
Area of LFA land in parcels of 15ha or more			
Total Target Points			████

Annual Payment ██████████

████████

IV ‘Environmental Stewardship’ forms(ES 양식의 종류)

Closed schemes forms are also available.

Form 양식	Scheme* 계획유형	Use 용도
Agent authorisation 대리인 인증	All	Applicants/ Agreement holders, to authorise an agent to act on their behalf.
British native-origin seed form 영국토종종자 양식	HLS	Agreement holders, to support the HLS claim. Used to register the source of seed used on the HLS agreement.
Common land supplementary application 공유지 보완신청서	ELS	Applicants, if the application for ELS includes common land.
Common land supplementary application	HLS	Applicants, if the application for HLS includes common land.
Derogation notice 감손(減損) 통지	ELS, OELS	Agreement holders, to notify Natural England of a derogation.
Derogation request 감손(減損) 통지	HLS	Agreement holders, to request a derogation.
Farm educational visit evaluation form 농업교육방문 평가서	ES	Agreement holder and visit organiser. Must be submitted with claim form.
Group visits summary sheet 단체방문 집계표	ES	Agreement holder, to publicise educational access sites.
Field parcel reconciliation 토지구획조정	OELS	Applicants, to reconcile IACS/OS field parcels on the Organi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o RLR parcels in the OELS pre-application .
Historic buildings information form 역사적 건축물 정보 양식	HLS	Applicants, to apply for restoration of historic buildings.
Supplementary land ownership and control form 추가적 토지소유권과 양식	ES	Applicants, if they do not have management control over all/part of the land for the entire agreement term.
VAT Declaration 부가세 신고	HLS	Agreement holders who are not VAT registered and are therefore unable to reclaim the VAT element on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Capital elements only).
(closed schemes forms) 폐지된 관리계약요구 Claim for management agreements	ESA	Agreement holders, to claim the annual management payment.

* 범례

ELS - Entry Level Stewardship
ES - Environmental Stewardship

HLS - Higher Level Stewardship

OELS - 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ESA -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부록 7>

실제 협정 사례

1) 개별협정 신청서

(참고양식 제7호)

중산간 지역 등 직접 지불 교부금 관련 개별 협정의 인정신청서

년 월 귀하

주소

성명

(인)

이 사항에 대하여 복사본을 별첨의 계약에 의거하여 당해 농용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중산간 지역 등 직접 지불 교부금 실시요령의 운용(2000년 4월 1일자 12구개B 제74호 구조개선국장 통지) 제7의 4의 (2)에 의거 아래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아 래 -

1. 경영규모,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별지1)
2. 협정농용지의 개요(별지2)
 - 주1)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대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는 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한 허가서 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한 농용지 이용 집적계획의 시정촌 공고의 복사본을 첨부할 것.
 - 2) 농작업 수위탁의 경우는 별첨 계약서 양식례를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복사본을 첨부할 것.
 - 3)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정촌 이외에 있는 농용지에 대하여 이용권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당해 농용지가 존재하는 시정촌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할 것.

(별지1)

경영규모 및 농업소득조사

1 경영규모

(단위: a)

지목	자기소유지	차입면적	합계
논			
밭			
초지			
계			
채초방목지			

주)차입면적에는 수탁면적(기간3 작업)을 포함한다.

2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

(단위: 엔)

농업소득①	농업종사자②	① / ②
논		

주1.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확정신고에 의거한 농업소득 + 전문종사자급여액 - 부채의 상환액) / 농업종사자수

당해 농업자가 생산조직, 농업생산법인 등의 구성원이고, 당해 생산조직, 농업생산법인 등으로부터 급여액 또는 임원보수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상기 농업소득에 당해 급여액 또는 임원보수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1) 부채 상환액은 실시요령의 운용 제6의 1의 (1)의 나의 (가)에 따른다.
- (2) 농업종사자수는 실시요령의 운용 제6의 1의 (1)의 나의 (나)에 따라 환산한다.

주2. 농업소득조사에는 농업소득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별지2)

협정농용지의 개요

【시정촌(市町村)명: 】

교부대상자의 성명, 명칭	자	지번	지목	경사도	면적	10a당 단가	교부액	설정권리 등	농용지의 관리		설정권리자 등의 이름(제공자)	개시 시기	종료 시기	계약 연월일	교부금 사용방법	
									농용지 현황	구체적 활동 내용						

- 주1) 일단의 농용지 전부를 경작하는 경우 및 별지1의 경영규모의 A가 도후현(都府県)에 해당하면 3ha 이상, 홋카이도(北海道)에 해당하면 30ha 이상(초지에서는 100ha 이상)의 경영 규모를 지닐 경우는 자작지도 기입한다. 단,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이 동일 도도부(都道府) 현(県) 내의 도시부의 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을 웃도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2) 주1의 농업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은 별지1의 2의 주석에 따라 산출한다.
- 주3) 주1의 단서기술에 해당하는 자는 인수분의 농용지만을 기입.
- 주4) 사용방법에는 수탁자(개별협정 신청자)의 수취액 및 수취비율을 기입할 것.

농작업 수위탁 계약서(양식례)

수탁자 및 위탁자는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업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수탁자 및 위탁자가 각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수탁자(이하, “갑”이라 칭함)
(주소)

(성명)

위탁자(이하, “을”이라 칭함)
(주소)

(성명)

1. 농작업 수위탁의 내용

갑은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로부터 별표에 기재된 농작업을 수탁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을은 갑이 농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식재(植栽)에 충분한 배려를 한다.

2. 수탁료의 지불방법

을은 별표에 기재된 농작업에 대하여 동표에 기재된 금액의 수탁료를 동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갑에게 지불한다.

3. 계약의 변경

계약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이 계약서에 명기한다.

(별표)

자	지 번	지 목	면적 (㎡)	작물	작업종류	기간	수탁료 금액(엔)	지불 방법	통년/ 기간별
					작업명	개시시기 종료시기			
합계									

2) 촌락협정 실제 사례(사본)

(참고양식 제7호)

촌 락 협 정

() 촌락단지조합

인 정	2005년 9월 22일
변 경	2006년 7월 20일
변 경	2008년 7월 1일

제 1 목적

본 촌락협정서는 협정의 대상이 되는 농용지에 있어, 경작방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장래적으로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 촌락이 지니는 다면적 기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자가 일치협력하여 향후 5년간에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제 2 협정의 대상이 되는 농용지의 범위

1. 소재지 등

구분	내용						
위치							
협정 참가자 (단위: 사람, 조직)	농업자	생산조직	수리조합	농업 생산법인	특정 농업법인	비농업자	() 분교
	20인	1					1

2. 협정농용지(단위: m²)

일단의 농용지명	협정농용지 면적	논		밭		초지		채초방목지	
			경사 등		경사 등		경사 등		경사 등
** - 1 (논)	159,901	159,901							
** - 1 (논)	17,593	17,593							
** - 2 (논)	88,386	88,386							
** - 3 (논)	24,637	24,637							
** - 4(논)	21,951	21,951							
면적 계	312,468	312,468							

- 주1) 일단의 농용지 별로 기재한다.
- 주2) 일단의 농용지의 상세는 별지양식1에 따른다.

3. 교부단가

해당하는 교부단가구분에 ○을 기입

교부단가구분	(○) 보통 단가	() 80% 단가
가산조치를 받는 농용지면적	규모확대 가산: m ² (m ²) 토지이용 조정 가산: m ² (m ²) 경작방기지 복구 가산: m ² (m ²) 법인설립 가산: m ² (m ²)	
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농용지면적	논: 312,468m ² , 밭: m ² , 초지: m ² 채초방목지: m ²	

- 주1) 교부단가구분에 있어서 보통 단가란, 실시요령 제 6의 3의 (2)의 가의 표의 ① 및 ②의 교부금의 교부단가이며, 80% 단가란 보통 단가에 0.8을 곱한 단가이다 (이하 동일).

제 3 구성원의 역할 분담

1. 농용지의 관리방법

다음 항목 중 해당 항목에 ○을 기입

해당	내용
(1)농용지	
	① 경작자가 농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농업위원회의 알선을 받는다.
	② 농업공사가 수탁한다.
	③ 촌락 협정 참가자가 협정 내용에 따라 관리한다.
	④ 기타()

해당	내용
(2)수로·농도 등	
	① 협정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여 흙탕물 제거 및 제초 작업을 한다.
	② 촌락 합의사항에 따라 정기적인 제초 작업 등을 수행한다.
	③ 기타(별도 규약)

2. 촌락협정의 관리체제

직함 등	성명
대표자	
서기 담당	
회계 담당	
공동기계 담당	
토지개량시설 담당	
법면 점검 담당	
다면적 활동 담당	
부대표	

주1) 농업생산조직 등이 참가할 경우에는 규약, 조직체제표를 첨부한다.

주2) 촌락협정 참가자 및 대표자 등은 별지양식 3에 기재한다.

3. 수로·농도 등의 관리나 촌락 내 취합 등 촌락 영농 상의 기간적 활동에 있어 핵심적 리더로서의 역할 담당자로 지명할 자

담당자로 지명할 자			
사토 ○○			

제 4 촌락 마스터 플랜(별지)

제 5 농업생산활동 등으로서 수행할 사항

1. 농용지에 관한 사항

다음 항목에서 선택(○을 기입).

해당	구체적인 활동 내용
<input type="radio"/>	① 경작방기 될 듯한 농용지에 대해서는 촌락 내외의 담당농가 및 제 3섹터 등에 따른 이용권 설정 등 및 농작업 위탁을 한다.
	② 기 경작방기지를 협정농용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경작방기지의 복구, 축산적 이용 또는 입지화(林地化)를 실시한다.
	③ 기 경작방기지를 협정농용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협정농용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초, 방충대책 등의 보전관리를 실시한다.
<input type="radio"/>	④ 농지법면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촌락 내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⑤ 협정농용지에 울타리, 네트 등을 설치하여 조수해(鳥獸害) 방지 대책을 세운다.
	⑥ 한계적 농지에 대해서는 입지화 등(그를 위한 매수를 포함)을 실시한다.
<input type="radio"/>	⑦ 작업도 설치, 배수개량 등 간이 기반을 정비한다.
	⑧ 기타(토지개량사업, 재해복구 및 지목변환(논에서 밭 등으로) 등)

2. 수로·농도 등의 관리방법(①②의 해당 활동에 ○을 기입(복수 선택 가능))

구체적인 활동 내용
① 수로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협력을 얻어, 매년 5월에 수로청소 및 7월에 제초 작업을 한다.
② 농도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간이보수, 7월과 9월에 제초 작업을 한다.
③ 기타 ()

3. 다면적 기능의 증진 활동으로서 다음 항목에서 1항목 이상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음 항목 중 해당항목에 ○을 기입한다.

해당	구체적인 활동 내용
	① 농지와 묶여 있는 주변 임지를 제초한다.
	② 계단식 논 오너 제도의 실시, 시민농원/체험농원을 개설/운영한다.
<input type="radio"/>	③ 경관작물을 심는다.
	④ 토양유출을 배려한 영농을 한다(등고선 재배, 뿌리를 내리는 식물을 고랑에 심는다).
	⑤ 체험 민숙을 실시한다(그린 투어리즘)
	⑥ 어류/곤충류를 보호한다(비오토프 확보).
	⑦ 겨울철 담수화(湛水化), 경작방기지에 물을 대는 등 조류의 먹이장 확보를 꾀한다.
	⑧ 조방적(粗放的) 축산을 한다.
	⑨ 퇴비 시비(施肥), 길항식물 이용, 아이가모/잉어 이용, 윤작의 철저화, 녹비작물 식재 등을 실시한다.
<input type="radio"/>	⑩ 기타 (폐기 플라스틱의 적정 처리 추진)

제6 농업생산활동 등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항(보통단가 교부 필수 요건 사항)

장래에 걸쳐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향후 5년
간에 수행해야 할 활동을 다음의 1 및 2에 규정하고 실시한다.

1. 농용지 등 보전체제 정비(필수요건)

(1) 장래에 걸쳐 적정하게 협정농용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시사항
(단, ①~③ 중에서 1개 이상은 정하도록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 도면을
협정연도에 작성한다.

해당	구체적으로 기재할 내용
○	① 농지법면, 수로/농도 등의 보수/개량을 필요로 하는 범위 또는 위치
	② 조수해 방지대책을 필요로 하는 위치
	③ 기 경작방기지의 복구 또는 임지화의 실시 범위
○	④ 농작업의 공동화 또는 수위탁 등을 필요로 하는 범위
	⑤ 기타 장래에 걸쳐 적정하게 협정농용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범위

농용지 등 보전 Map의 첨부
[예: 상기 항목을 명시한 Ortho 화상(1/2,500) 등의 도면을 첨부한다.]
(별첨 가능)

주) 교부금의 교부 대상 외 농용지를 협정 농용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위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입한다.

(2) 농용지 등 보전 Map 활용을 위한 활동으로서 다음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해당	항목	달성목표
○	① 농지법면, 수로/농도 등의 보수/개량	· 농지법면의 관리 · 수로 연장 6800m의 보수/개량 · 농도 연장 7500m의 보수/개량
	② 조수해 방지대책(방호 울타리 설치 등)	
	③ 기 경작방기지의 복구 또는 임지화	

2. 지역 실정에 입각한 농업생산활동 등의 계속을 위한 활동(선택적 필수항목)
다음의 (1) 또는 (2)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1) 다음의 ①~③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각각의 활동에 1개 이상의 항목을 정
한다.

① 생산성·수익향상 관련 활동

다음 활동 중 촌락이 수행할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현황 및 달성목표를 기재하고 실시한다. (선택요건)

해당	항목	
○	① 기계·농작업의 공동화	
	② 고부가가치형 농업의 실천	
	③ 지방산 농산물 등의 가공/판매	
활동항목	현황	달성목표
①	개인적으로 메밀 전작(轉作: 생산조정) 작업을 하고 있음.	메밀단지생산조합을 조직하고, 협정농용지의 10% 이상, 8.5ha를 경작하여, 파종작업을 공동화 한다.

주1) ②의 달성목표란에는 도입할 고부가가치형 농업의 재배방법, 신규 작물의 명칭 등을 기재한다.

주2) ③의 달성목표란에는 보유 가공시설의 개요, 농산물의 가공/판매 방법 등을 기재한다.

② 담당자 육성 관련 활동

다음 활동 중 촌락이 수행할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현황 및 달성목표를 기재하고 실시한다.

해당	항목	
	① 신규 취농자의 확보	
	② 협정 농업자의 육성	
	③ 담당자에 대한 농지 집적	
	④ 담당자에 대한 농작업 위탁	
활동항목	현황	달성목표

③ 다면적 기능 발휘 관련 활동

다음 활동 중 촌락이 수행할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현황 및 달성목표를 기재하고 실시한다.

해당	항목
	① 보건휴양 기능을 살린 도시주민 등과의 교류
○	②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③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위한 비농가/타 촌락 등과의 연계
활동항목	달성목표
②	○○○○ 분교와 협정을 체결하여 메밀 1아르(are)를 재배하며, 또한 그 외에 야채, 벼 등도 관찰, 수확을 체험하게 하며, 강이나 산에서 놀기도 한다. 수확제도 실시한다.

주1) ①의 달성목표란에는 운영 및 개설할 시설의 개요, 명칭, 운영규모 등을 기재한다.

주1) ②의 달성목표란에는 협정에 정하는 활동 내용, 협정을 체결할 상대 기관의 명칭, 구성원 및 개요 등을 기재한다.

주2) ③의 달성목표란에는 대상이 되는 비농가 등의 명수, 연계 촌락명, 활동내용 등을 기재한다.

(2) 촌락 영농 조직화 및 법인화 관련 활동

다음 활동 중 촌락이 수행할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현황 및 달성목표를 기재하고 실시한다.

해당	항목	
	① 촌락을 기초로 한 영농조직 육성	
	② 담당자 집적화	
활동항목	현황	달성목표

주) 협정 외 농용지를 포함시킬 경우는 별지양식1에 협정 외 농용지에 대해서도 기재할 것.

제7 가산조치 적용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다음 활동 중 촌락이 수행할 항목에 ○을 기입함과 동시에 현황 및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시한다.

해당	항목	현황	달성목표
	① 규모 확대 가산		
	② 토지 이용 조정 가산		
	③ 경작방기지 복구 가산		
	④ 법인 설립 가산 【특정농업법인】		
	⑤ 법인설립 가산 【농업생산법인】		

주) 현황 및 달성목표란에는 ①~⑤의 각 가산조치를 받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내용과 관련된 지목 별 농용지면적, 이용권 설정, 농작업 수위탁 계약, 설립 법인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8 식료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쌀/보리/대두/초지축산 등에 관한 생산 목표

해당 항목에 ○을 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당	내용
	(쌀 생산에 관한 목표를 기재) 재배 면적: 1,800a
	(보리 생산에 관한 목표를 기재) 재배 면적: a
	(대두 생산에 관한 목표를 기재) 재배 면적: 50a
	(초지축산(목초 및 사료작물)에 관한 목표를 기재) 재배 면적: 100a
	(기타 작물에 관한 목표) 재배 면적: 850a 메밀 전작(轉作: 생산조정)

제9 시정촌(市町村)의 기본방침에 따라 규정해야 할 사항

(시정촌(市町村)의 기본방침에 따라 촌락의 실정에 맞추어 촌락협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

1.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교부금”

제 5의 1의 ② 중 경작방기지 복구를 위해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교부금” 중 유희농지 활용 토지 조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촌락협정에 기술한다.

- (1) 사업실시의 목적
- (2) 사업의 실시 주체
- (3) 실시할 사업종목,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 (4) 사업 실시하는 곳에 포함되는 경작방기지의 지번, 면적 및 권리의 설정 등을 수령할 자의 성명

2. 토지개량사업(별지양식 5 참조)

- (1) 사업실시의 목적 (2) 사업의 실시 주체 (3) 실시할 사업종목,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3. 재해복구사업

- (1) 사업실시의 목적 (2) 사업의 실시 주체 (3) 실시할 사업종목,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4. 지목의 변경

- (1) 경작자(소유자)명 (2) 변경 전후의 지목 및 면적(예: 논 ○○m² → 밭 ○○m²)

5. 촌락 상호간의 연계

- (1) 담당자가 있는 인근 촌락 등과의 연계(당해 촌락명, 연계활동내용, 스케줄)
- (2) 농업공사, NPO법인, 농작업 수위탁 조직 등, 민간법인 등이 촌락협정에 참가하도록 연계
(당해 법인명, 연계활동내용, 참가내용, 스케줄)
- (3) 인근의 소규모 촌락 협정과의 통합/연계

제10 교부금 사용방법 등

1. 교부금은 촌락을 대표하여 ()가 사케가와무라(鮭川村)로부터 수령한다.
2.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항목	교부금사용내용(항목)	금액
공동수행활동	① 촌락의 각 담당자의 활동에 대한 경비	리더 활동비	
	② 농업생산활동 등의 체제정비를 위한 활동 등 촌락 마스터 플랜의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	임원회, 전체 집회, 총회 등의 회의비용	(950,000엔)
		연수회, 기술강습회 참가, 인재육성 경비	
		농업/농촌 전승문화 등 계승 경비	(300,000엔)
		공동 이용 기계 등 관계 경비	(9,000,000엔)
		기계, 농작업의 공동화 등 경비	(3,000,000엔)
		담당자에 대한 농지집적, 농작업의 위탁 경비	(2,000,000엔)
	펌프 수리	15,250,000엔	
	③ 다면적 기능의 발휘 및 증진 활동 경비	경관작물 등의 활동(꽃)	(500,000엔)
		주변 임지의 제조 작업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활동		(750,000엔)	
촌락 공동체와 연계한 활동			
④ 조수해 방지대책 및 수로/농도 등의 유지/관리 등 촌락의 공동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위해 비농가, 타 촌락과 연계한 활동		
	폐기 플라스틱의 적정 처리	(200,000엔) 1,450,000엔	
⑤ 촌락협정에 의거해 농용지의 유지 및 관리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경비	협정내농용지또는협정농용지이외와관련된수로,도로의유지관리활동	7,000,000엔	
	농지법면의정기적인점검활동	297,312엔	
⑥ 교부금의 적립/이월			
기타()			

주) ⑤의 교부금의 적립/이월은 적립계획, 사용계획을 기재한다.

3.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개인배분분	금액
	(배분비율: 20%) 6,561,828엔

주) 농작업 수위탁이 행해지고 있는 것 중, 전 작업 수위탁의 경우는 작업 수탁자에게 일괄 배분하고, 일부 작업만의 경우는 농용지 소유자와 작업수탁자가 협의하여 한 쪽으로 교부한 후 양자가 협의를 통해 배분한다.

제11 기타

(첨부자료)

별첨 촌락협정도(농용지등 보전 Map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응 가능)

1. 협정 대상이 되는 농용지.

별첨 【대상면 집적 집계표】와 같음.

2. 협정 외 농용지

지번	현황		농용지 관리		관리자
	지목	농용지 면적(m ²)	현황	구체적 활동 내용	

3. 협정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경작방기지의 관리

소재	사케가와무라대지			
지번	현황		관리방법	관리자
	지목	농용지 면적(m ²)		

주) 현황 지목은 경작방기지와 가장 가까운 지목으로 한다

(별지양식2)

협정대상시설의 관리방법

구분	시설	관리 작업자	관리방법 등	관리작업의 대표자
도로	제 1 ** 농도	****단지조합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1 ** 농도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	상동	“	“
	제 3 “	상동	“	“
수로	제 1 ** 수로	****단지조합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1 ** 수로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	상동	“	“
	제 3 “	상동	“	“
양수기	제 1 ** 펌프	****단지조합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 3 “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1 ** 펌프	상동	조합의 합의사항에 따름	“
	제 2~6 “	상동	“	“
	제 7~11 “	상동	“	“
	제 12 “	상동	“	“

경관 자연환경보전형성지원사업 중 농촌경관 자연환경보전재생 pilot사업공모요령

평성19년4월24일부 19농진 제187호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장 통지

제1 취지

국민이 여유, 평안, 마음의 풍부함 등의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되어있는 중에, 다면적 기능이 발휘되어, 풍부한 자연환경이나 아름다운 경관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개성적 특진적인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입각해서, 농촌지역에 있어서 경관 자연환경의 보전 형성 등을 향한 지역의 대처를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단식 논이나 농업용수로의 보전 등에 위한 경관형성, 동식물의 조사나 습지의 조성 등에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 재생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평성10년 법률 제7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하 「NPO법인」 라고 한다.) 등에 대해서 직접지원을 하는 농촌경관 자연환경보전재생 파이럿사업(이하 「본사업」 라고 한다.) 공모방식에 따라 실시하고, 조성대상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제2 조성대상활동 등

1 조성대상활동

본사업의 조성대상활동은 농촌특유의 양호한 경관형성의 촉진 및 농촌의 자연환경의 보전 재생의 추진에 이바지할 활동으로써,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하려는 단체(이하 「응모신청단체」 라고 한다.)에서 제출된 응모신청서를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또,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는 농촌경관 자연환경보전재생 파이럿사업 공모세칙(이하 「공모세칙」 라고 한다.)에서 알립니다.

2. 활동실시지역

본사업의 주한 활동실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소와44년 법률 제58호) 제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한 농촌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1) 경관법 (평성16년 법률 제110호) 제5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한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구역

(2) 전원환경정비 마스터플랜(「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농업농촌정비사업 등 기본요강」

(평성14년2월14일부 13농진 제2512호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통지) 제1에 규정하는 전원환경정비 마스터플랜을 한다.) 에 의거해서 설정된 환경창조구역 또는 환경배려구역

3. 조성대상단체

(1) NPO법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이고, 지방농정국장(홋카이도 : 농림수산상 농촌진흥국장, 오키나와현 : 내각부 오키나와총합사무국장. 이하 같음)이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재무상황,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해서, 사업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단체

4. 조성금액

본사업의 조성금은, 150만엔 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된 조성금의 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다만, 조성대상경비는, 1로 결정된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조성대상 단체의 통상의 관리 등의 드는 경비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조성대상 활동에 필요한 무상노무비를 조성대상경비의 조성대상 단체 부담분으로써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A < B/2$ 의 경우는, $B/2$ 의 금액

(2) $B/2 \leq A \leq B$ 의 경우는, A의 금액

(3) $B < A$ 의 경우는, B의 금액

이 방법의 있어서, A 및 B는,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나타낸다.

A 무상노무비(최저임금법(소와34년 법률 제137호) 제16조에 의거해서 정해진 지역별최저임금액에 활동에 사용한 무상노무 총시간 인수를 곱한 금액)

B 조성대상경비에서 무상노무비를 뺀 금액

5. 조성금의 회계경리

본사업의 조성대상경비의 경리는, 독립의 장부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따라, 다른 경리와 구별해서 한다.

6. 응모방법

응모신청단체의 대표자(이하 「응모신청자」라고 한다.)는 공모세칙에 첨부된 응모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공모세칙에서 정한 기일까지 사단법인 농촌환경정비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을 바랍니다.

제3 심사 등

1. 사전심사

응모신청자가 제출한 응모신청서에 대해서는, 센터가 사전심사를 실시합니다. 또, 사전심사에 있어서는, 필요함에 따라 응모신청자에 대해서 전자메일, 전화 등에 의한 문의를 합니다.

2. 심사

지방농정국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응모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이 심사결과에 입각해서, 사업채택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3. 사업채택의 통지

사업채택결정후 신속하게 지방농정국장으로부터 사업채택된 응모신청자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또, 채택되지 않았던 경우도, 결과를 통지합니다.

4. 그 외

그 외, 응모신청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모세칙으로 정한 것으로 합니다.

제4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단년도사업으로 합니다.

제5 사업의 실시보고

조성대상자는, 지방농정국장이 지시하는 기간까지 공모세칙에 정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6 실시상황의 확인

사업의 실시상황의 확인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제7 응모 및 문의처

1. 응모신청서의 제출처는 이하와 같습니다.

사단법인 농촌환경정비센터

주소: 도교도 추우오우구 니혼바시 오텐바초 11-8 후지스터 빌 2F

전화:03-5645-3671

Fax: 03-5645-3675

2. 본 사업에 관한 문의처는, 이하와 같습니다.

동북 농정국 지역정비과 전화(대) 022-263-1111(내선:4169)

관동 농정국 지역정비과 전화(대) 048-600-0600(내선:3543)

북육 농정국 지역정비과 전화(대) 076-263-2161(내선:3575)

동해 농정국 지역정비과 전화(대) 052-201-7271(내선:2664)

근기 농정국 지역정비과 전화(대) 075-451-9161(내선:2555)

중국사국농정국 지역정비과 전화(대) 086-224-4511(내선:2674)

구주 농정국 지역정비과 전화(대) 096-353-3561(내선:4675)

내각부오키나와총합사무국 토지개양과 전화(대)098-866-0031(내선:83348)

농림수산선농촌진흥국 농지자원과 전화(대)03-3502-8111(내선:5493)

농촌경관·자연환경보전재생 pilot 사업활동단체(일본 동북지방)

년도	활동단체명	경관	자연	농정국	활동지역	활동개요
평성18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쓰가루무데이시센가이	○	○	○	아오모리현 츠가루시	지역의 역사적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노후화된 신언수문 및 수로를 자연식으로 쌓아서 보수하는 것과 함께 주변을 자갈을 깔고 수로 옆에서 토사의 유출 방지. 또 시설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한다.
평성19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쓰가루무데이시센가이	○	○	○	아오모리현 츠가루시	고령화에 따라 풀메기나 흙을 올림 등이 곤란하게 되어있는 후꾸시마언수로를 자연석 쌓아서 보수함에 작업이 경감되어 농촌경관이 보전된다. 또 시설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한다.
평성20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쓰가루무데이시센가이	○	○	○	아오모리현 츠가루시	다이쇼 3년에 건설된 신언수로를 자연석으로 쌓는 공법으로 보수하고, 주위와 조화된 경관으로써 하는 것과 동시에 수로의 토사유출방지 풀메기 등의 유지관리 작업의 경감을 도모한다, 또 지역주민 참가의 [농촌경관 환경포럼]을 개최하고 농촌의 역사나 환경공공을 넓힌다.
평성18년도	아자와지역의 자연보호를 생각하는 모임	-	-	-	이와테현 하나마끼시	절망의 위구이와테현 레드 데이터A종) 제니타나고 생존환경보호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수지 생물조사와 흙을 올리고, 수원인 오모리아마 슈야베기나 풀베기를 실시하고, 저수지 주변에 마을에 경관보전과 수원지를 정비한다.
평성19년도	아자와지역의 자연보호를 생각하는 모임	-	-	-	이와테현 하나마끼시	절망의 위구종의 생존환경의 보호활동을 하는 것이고, 생존의 저수지에서의 산란환경정비, 저수지 주변에 풀베기 간벌 등 의 생존환경정비, 생물조사, 흙성분조사, 수질조사, 외래종 구제 외, 환경교육으로서 자연관찰 모임 등을 한다.
평성19년도	마쓰시마엔 관리운영협의회	○	○	○	이와테현 하나마끼시	촌락의 휴식의 장소, 기간수리시설로써가까이하는저수지주변의풀베기화단의식채등을부대시설의 청소 관리를 함에 따라 토지개량시설이 가진 다면적 기능과 환경보전활동 및 농업에 대해서 촌락주민 전체의 이해를 깊게 한다.
평성19년도	슈니초매독애호조합	○	○	○	이와테현 하나마끼시	쓰레기불법투기나농가의고령화등에따라관리가곤란하게되어있는수로주변에풀베기작업을함에 따라 토지개량시설이 가진 다면적 기능과 환경보전활동 및 농업의 대해서의 촌락주민 전체의 이해를 깊게 한다.
평성20년도	마쓰시마엔 관리운영협의회	○	○	○	이와테현 하나마끼시	기간수리시설이고, 촌락의 휴식의 장소로써 가까이 하고 있는 저수지 「마쓰시마엔」 주변의 풀베기, 화단의 식재, 외래물고기구제 등의 환경정비활동과 부대시설의 청소관리, 간판설치, 주민교류회 등을 함에 따라, 토지개량시설이 가진 다면적 기능과 환경보전활동 및 농업에 대한 촌락주민전체의 이해를 깊게 한다.
평성20년도	슈니초매독애호조합	○	○	○	이와테현 하나마끼시	쓰레기불법투기나 농가의 고령화 등에 따라 관리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수로 주변에 풀베기작업을 함에 따라 토지개량시설이 가진 다면적 기능과 환경보전활동 및 농업의 대한 촌락주민 전체의 이해를 깊게 한다.

년도	활동단체명	경관	자연	농정국	활동지역	활동개요
평성20년도	야마부끼다나다마이 생산조합	○	○	○	이와테현 이치노세끼기	야마부끼의 계단식 논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종합안내표식, 길 안내판을 설치하고, 과소화나 고령화에 따라 유지 관리에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계단식 논 및 주변에 청소와 풀베기 활동을 실시하고 계단식 논 의 관한 이해를 촉진한다.
평성18년도	시나이모쓰고교의 모임	-	-	-	미야기현 오오사끼시	감소가 확인된 제니타나고와 시나이모쓰고를 회복시키기 위해, 연못에 물을 빼고 원인을 조사한다. 또 물을 뺄 때는 바닥에 청소 및 노후화되어 있는 배수관을 개수한다. 또 부락버스 등의 외래종이 확인된 경우 구제를 한다.
평성18년도	메기의 학교	-	-	-	미야기현 쿠리하라시	우찌즈마에 상류부에 위치한 저수지에 부락버스의 구제를 실시한다. 또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낙차공을 물고기가 소상하기 쉬운 구조로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메기·붕어 등의 대형어를 대상으로한 수전어도의 구조를 검토한다.
평성19년도	메기의 학교	-	-	-	미야기현 쿠리하라시, 토메시	농촌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 이즈즈마·우찌즈마상류의 저수지에서 부락버스에 구제를 실시한다. 또, 수전어도 보급을 위한 소상조사(최적유량과 유속의 파악) 및 포장정비후의논의논두렁과배수로에생물조사를한다.
평성19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시나이모쓰고교에 모임	-	-	-	미야기현 오오사끼시	감소가 확인된 절망위구종을 회복하기 위해 저수지에 수질조사와 생물조사와 함께, 고장주민의 의식계발 위해 워크숍을 한다.
평성20년도	메기의 학교	-	-	-	미야기현 쿠리하라시, 토메시	농촌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 이즈즈마·우찌즈마상류부에 있 는저수지에서 오오구찌버스의 구제 실시, 제니타나고, 시나이모쓰고가 생식하기 위한 저수지의 보전활동의실시, 메기 등 대형어의 소상의 가능한 수전어도에 대해서 조사(최적유량과 유속의 파악) 및 포장정비후의 논의 논두렁과 배수로에 생물 조사를 한다
평성20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시나이모쓰고교에 모임	-	-	-	미야기현 오오사끼시	감소가 확인된 시나이모쓰도, 제니타나고 등의 절망위구종의 생식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고장주민과 협력해서, 저수지의 수질조사와 어류조사를 함께 마름의 재배를 한다. 또 고장주민의 의식계발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
평성20년도	오그라가와를 고조메에서 가장 깨끗한 강으로 만드는 모임	-	-	-	아끼타현 미나미아끼타군 교조오메마치	겐지보다르의 생식하는 수로의 풀베기 청소, 독에 「어살」 을 설치를 하고, 이들의 대처하는 것을 소개하는 간판의 설치, 패널전시, 반딧불감상 투어도 실시하고, 자연의 풍부함, 동식물의 보전과 농업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한다.
평성18년도	아사히의 숲을 지키는 숲의 모임	○	○	○	야마가타현 니시야마무라군 아사히마치	계단식 논의 수원이 되어 있는 저수지와 도수로의 풀베기, 계단식 논의 경관스포트에게 통하는 유보도의 정비, 히메사유리의 보호활동 및 농지 농업용시설 이 가진 다면적 기능이나 보전활동의 필요성 등을 계발·보급활동 등을 한다.
평성18년도	나까무라 습원을 지키는 모임	-	-	-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마무로가와조오	나까무라습원에 생식하는 희소한 동식물(합조통보야생란 등)의 난확을 방지하기 위해, 간벌재로 방호책을 정비한다. 또, 아이들을 위한 생물관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후화한 목도를 보수 정비한다.

년도	활동단체명	경관	자연	농정국	활동지역	활동개요
평성18년도	너도밤나무 열매 21	-	-	-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후나가타마치	합조통보, 아마고이루리통보, 도끼소오 등의 희소 동식물의 생태조사를 하고, 그들이 생식하는 포기한 논외의 보전관리활동을 한다.
평성18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SAGAE고	-	-	-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니도세끼 용수로에는, 활어·잉어 등의 어류가 생식하고 있지만, 매일 정기단수와 매년도 수로공사에 따라 장기간 단수된다. 그래서, 물고기의 생식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고기가 퇴피할 수 있도록 수로바닥에 쉼타를 설치한다.
평성18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이이테 좋은 주거만들기 연구소	○	○	○	야마가타현 니시오키타마군 이이테마치	유식자를 초청해서 가옥림의 발생경과나 그 의미 등에 대해서 학습, 가옥림의 손질에 대해서 학습회 및 실천 활동, 산거와 가옥림의 보존을 위한 계발활동 등을 한다.
평성19년도	나까무라 습원을 지키는 모임	-	-	-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마무로가와와조오	나까무라 습원에 생식하는 희소한 동식물을 보전하고, 아이들을 위한 생물관찰을 위해, 노후화한 목도를 보수 정비한다.
평성19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SAGAE고	-	-	-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니도세끼 용수로에는 어류가 생식하고 있지만, 매일 정기단수와 매년도의 수로공사에 따라 장기간 단수된다. 그래서, 물고기의 생식환경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고기가 퇴피할 수 있게 수로바닥에 쉼타를 설치한다.
평성19년도	너도밤나무 열매 21	-	-	-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후나가타마치	자연과 공생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재생구상으로 책정한 「지역 특산산채·어족자원재생구역」에서 재생활동의 실시 및 귀중한 동식물이 생식하는, 포기 논외의 보전관리활동 등을 한다.
평성19년도	가도가와 마을의 자연환경학교	-	-	-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토자와무라	산에 용수와 저수지, 수로, 계단식 논외의 환경을 양호하게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게 위해, 논외의 비오톱 만들기 나 생물조사, 산책도로 목도의 정비와 수확체험을 하는 외, 워크숍로 마을산에 농업환경외의 보전활동 비전을 책정한다.
평성19년도	특정비영리법인 아름다운 야마가타 산림활동지원센터	○	○	○	야마가타현 니시오키타마군 이이테마치	전국적으로 드문 초목담과 고민가가 있는 농촌경관의 보전을 위해, 초목담과 고민가 보전 워크숍이나 농촌작업 체험회 모임, 농촌경관재생을 위한 학습회나 계발 활동을 한다.
평성20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SAGAE고	○	○	○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지역 사람들의 휴식장소이고, 동식물생식의 장소인 저수지가 농업자의 고령화, 감소에 의해 관리가 곤란하게 되어 있음에 저수지의 제면의 풀베기작업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 목재블록외의 아시바를 설치하고, 동시에 경관작물 의식제도하고, 자연환경유지를 위한 의식을 향상하게 한다.
평성20년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SAGAE고	○	○	○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주변환경외 조화된 식물의 보전활동으로서 니도세끼 용수로에 따른 유보도에 식재한 사꾸라에 대해서, 흙을 막은 것을 이동, 올린 흙외의 실시외 따라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외의 풍부함을 이해를 바란다.

년도	활동단체명	경관	자연	농정국	활동지역	활동개요
평성20년도	너도밤나무 열매 21	-	-	-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후나가타마치	자연과 공생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자연환보전재생구상으로 책정한 「지역특산산채·어족자원재생구역」에서의 재생활동의 실시 및 귀중한 동식물이 생식하는 포기한 논외 보전관리활동 등을 한다.
평성20년도	나까무라 습원을 지키는 모임	-	-	-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마무로기외조오	나까무라 습원에 생식하는 희소한 동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또 아이들의 생물관찰을 위해, 노후화한 목도를 보수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나까무라 습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조성한다.
평성18년도	농촌넷·대나무토피아	○	○	○	후쿠시마현 수가가와시	황폐한 대나무 숲의 재생활동을 통해서 대나무 자원의 유효활용에 대처한다. 구부러진 대나무나 뿌리 등을 대나무 숯, 대나무 파우더, 대나무 식초액으로써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순환형 농업을 목표로 한다.
평성19년도	농촌넷·대나무토피아	○	○	○	후쿠시마현 수가가와시	황폐한 대나무숲의 재생과 농촌경관의 개선을 위해, 벌채한 대나무를 대나무숯, 대나무파우더, 대나무 식초액으로써 활용하고 순환형 농업을 목표로 대나무의 울타리, 대나무의벤치, 사육 등 지역경관과 조화가 된 건조물에 이용한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효율적 농어촌마을 경관관리 지원체계와 적용기법 연구	
발행일	2009. 12
발행인	박 해 성
발행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안로 391번지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